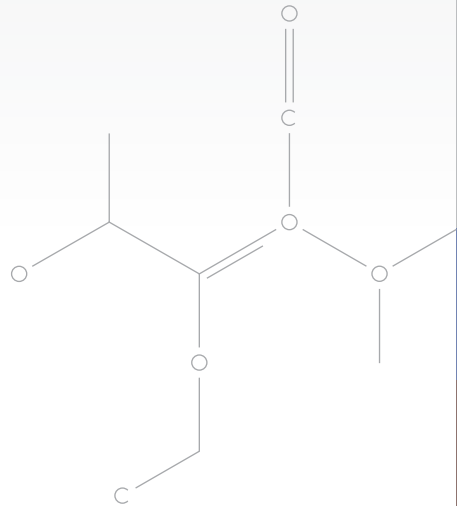




## 주의 사항

- 본 실무가이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존화학물질의 공동제출을 이행하는 공동등록 협의체의 업무와 책임을 개략적으로 다루고 있다.
- 본 실무가이드는 법적·강제적 효력을 갖지 않으며 공동제출을 이행하기 위한 협의체 운영 및 대표자의 업무에 대한 참고자료로서, 개별적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으나 책임은 법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에게 있다.
- 본 실무가이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예규 등이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활용되어야 한다.
- 관련 법령 및 상위 규칙에서 정하는 내용과 상이할 경우에는 법령과 상위 규칙이 우선 적용되어 해석하여야 한다.
- 본 실무가이드의 내용은 향후 법의 개정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수정·보완 등 갱신 될 수 있으므로, 가이드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관련 법 조항의 변경여부를 확인 할 것을 권고 함

# 공동등록 협의체 실무가이드





# 목차

공동등록 협의회 실무가이드

## 제1장 개요

1.1. 발간 목적 .....	8
1.2. 활용 방안 .....	9
1.3. 법적근거 .....	10
1.4. 용어정의 .....	13

## 제2장 협의회 구성 및 대표자 선정

2.1. 협의체의 구성 .....	16
2.2. 협의회 가입절차 .....	20
2.3. 대표자의 선정절차 .....	22

## 제3장 협의회 구성원의 역할 및 업무가이드

3.1. 공동등록을 위한 단계별 주요 내용 .....	30
3.2. 협의회 구성원의 역할 및 업무가이드 .....	56

## 제4장 협의회 구성원 업무 체크리스트

4.1. 공동등록 진행과정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	134
-----------------------------------	-----

# 표 목차

표 1_ 용어의 정의	13
표 2_ 활동방식에 따른 협의체 구성원 구분	18
표 3_ 협의체 구성	32
표 4_ 협약 체결	36
표 5_ 자료 확보/생산	50
표 6_ 비용 부담	52
표 7_ 등록신청	54
표 8_ 협의체 구성원의 세부 업무 절차	59
표 9_ 단계1. 협의체 가입	60
표 10_ 단계2. 조정자 선정	62
표 11_ 단계2. (대표자) 조정자 선정	63
표 12_ 단계2. (구성원) 조정자 선정	63
표 13_ 단계3. 대표자 선정	64
표 14_ 단계3. (대표자) 대표자 선정	65
표 15_ 단계3. (구성원) 대표자 선정	66
표 16_ 단계4. 비밀유지계약 체결	67
표 17_ 단계4. (대표자) 비밀유지계약 체결	68
표 18_ 단계4. (구성원) 비밀유지계약 체결	69
표 19_ 단계5. (대표자) 협의체 회의 개시	72
표 20_ 단계5. (구성원) 협의체 회의 개시	73
표 21_ 단계6. (대표자) 협약당사자 선정	74
표 22_ 단계6. (구성원) 협약당사자 선정	75
표 23_ 단계7. (대표자) 기초정보 조사	76
표 24_ 단계7. (구성원) 기초정보 조사	77
표 25_ 단계8. 공동 제출 범위 결정	79
표 26_ 단계8. (대표자) 공동 제출 범위 결정	80
표 27_ 단계8. (구성원) 공동 제출 범위 결정	80

표 28_ 단계9. 협의체 협약서(안) 내용	81
표 29_ 단계9. (대표자) 협의체 협약서(안) 제공 및 협약 체결	82
표 30_ 단계9. (구성원) 협의체 협약서(안) 검토 및 협약 체결	83
표 31_ 단계10. (대표자) 데이터갭(Data gap) 분석 절차	85
표 32_ 단계11. (대표자) 자료 확보 방안 안내 및 결정	91
표 33_ 단계11. (구성원) 자료 확보 방안 확인 및 결정	92
표 34_ 단계12. (대표자) 자료 구매 및 생산 결정	93
표 35_ 단계13. 용도 및 노출정보 조사	95
표 36_ 단계14. (대표자) 위해성 평가자료 작성을 위한 노출 DB조사	98
표 37_ 단계15. (대표자) 확보 자료 공유	102
표 38_ 단계16. 유해성 분류 및 표시 작성	103
표 39_ 단계16. (대표자) 분류 및 표시 결정 절차	105
표 40_ 단계17. (대표자)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작성	109
표 41_ 단계18. (대표자) 대표자 등록 서류 작성 및 제출	112
표 42_ 단계19. (대표자) 국립환경과학원 완전성 검토	115
표 43_ 단계20. (대표자) 보완 대응	116
표 44_ 단계21. (대표자) 대표자 등록통지서 발행	117
표 45_ 단계22. (구성원) 협의체 구성원 개별 서류 제출	119
표 46_ 단계23. (대표자) 등록 관련 서류 전달	123
표 47_ 단계23. (구성원) 등록 관련 서류 확인	124
표 48_ 단계24. 사후 관리	126

# 그림 목차

## 공동등록 협의체 실무가이드

그림 1_	협의체 구성 방법	16
그림 2_	기존화학물질 협의체 구성	19
그림 3_	공동등록협의체 가입 절차	20
그림 4_	공동등록협의체시스템 상 협의체 가입 절차	21
그림 5_	공동등록협의체시스템 상 대표자 신청 절차	22
그림 6_	(조정자) 공동등록협의체 대표자 투표 진행절차	23
그림 7_	(조정자) 공동등록협의체시스템 상 대표자 투표 개시 방법	24
그림 8_	공동등록협의체 대표자 투표 절차	26
그림 9_	공동등록협의체시스템 상 대표자 투표 절차	26
그림 10_	협의체 구성원 간 계약의 기본골격 및 요건	37
그림 11_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IT 시스템)의 운영 흐름도	55
그림 12_	협의체 운영 방향 및 구성	56
그림 13_	기초 정보 조사 서식	78
그림 14_	자료 확보 전략	90
그림 15_	확보 자료 공유 flow chart	101
그림 16_	화학물질등록통지서	118
그림 17_	대표자 승인시 '공동제출로 이동 버튼' 생성	120
그림 18_	협의체 구성원의 등록신청서 제출 화면	120
그림 19_	접수처리 확인	121
그림 20_	기존화학물질 일반 등록 결정 안내	122
그림 21_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129
그림 22_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130
그림 23_	유해성심사·위해성평가 자료제출명령서	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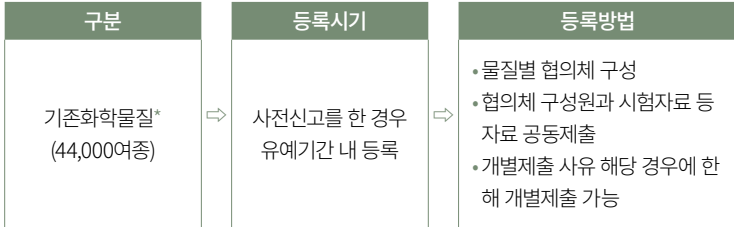


# 제1장 개요

- 1.1. 발간 목적
- 1.2. 활용 방안
- 1.3. 법적근거
- 1.4. 용어정의

# 1.1. 발간 목적

- > 공동등록 협의체를 통한 기존화학물질 등록 이행은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규정된 필수 의무사항



\* 기존화학물질: 1991년 2월 2일 전에 국내에서 상업용으로 유통된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화학물질, 1991년 2월 2일 이후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

-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은 사전신고를 완료한 물질에 한해 화학물질의 유해성 시험자료 등 등록신청자료를 협의체를 구성하여 등록유예기간 내에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함
- 이에, 협의체 운영을 위한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의 업무 및 역할과 관련한 절차를 규정하며, 공동등록 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이행 지원을 돕기 위하여 마련되었음
- > 산업계의 효율적인 등록의무 이행을 위해 협의체 구성원별 세부 업무지침 및 이행절차 제공
  -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 과정을 이행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과 관련한 규정 및 업무(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본 실무가이드는 공동등록 협의체 내 역할에 따른 업무를 구분하고, 공동등록 업무의 진행을 위한 제도의 이해를 목적으로 함
  - 또한, 각 업무에 따른 이행 주체의 책임 및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업무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1.2. 활용 방안

### 적용 대상

- > 본 실무가이드는 공동등록을 위하여 구성된 협의체의 주요 업무에 대한 기술로, 협의체 대표자를 포함한 협약 당사자가 공동등록 실무에 활용 가능함

### 적용 범위

- > 본 실무가이드는 법적 근거에 따라, 협의체 구성원이 필수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세부 업무 내용을 정리
- > 본 실무가이드는 기존화학물질의 공동제출을 위한 협의체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실무를 기술
- > 공동등록을 위한 기존화학물질의 협의체 뿐 아니라, 포괄적으로 공동등록 컨소시엄 운영에서도 일부 적용 가능함
- > 본 실무가이드는 협의체 유형 및 구조적 특성 등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각 협의체의 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활용 방법

- > 본 실무가이드는 공동등록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개별 구성원 업무별 구체적인 업무 수행 방법 및 절차를 설명
- > 또한, 각 협의체 구성원이 업무에 활용 가능한 표준 예시를 제공
- > 협의체 구성원별 업무의 일부 항목은 컨설턴트, 협의체 관리자, 컨소시엄 등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본 실무가이드의 절차에 따라 이행 가능
- > 협의체 업무로 기술된 부분은 통상적으로 원활한 공동등록 진행을 위한 시간적 순서로 작성되었으나, 반드시 순차적으로 수행할 필요는 없음

## 1.3. 법적 근거

- > 법 제15조에 따라 기존화학물질을 등록하려는 자는 대표자를 정하여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함

### 참고내용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19. 1. 1.]

제15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방법)

① 기존화학물질을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등록하려는 자는 제10조제6항에 따라 각자 등록을 신청하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는 대표자를 정하여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확인(이하 "개별제출확인"이라 한다)을 받고 개별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1. 기업의 영업비밀이 공개되어 상당한 상업적 손실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제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제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 중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제출에 필요한 정보를 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③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제출, 공동 제출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개별제출확인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20.>

- > 대표자는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공동 제출할 자료의 선택·생산에 관한 업무
- 공동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업무
- 그 밖의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작성 및 제출에 관한 업무

## 참고내용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2019. 1. 1.]

제17조(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방법과 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자들은 공동제출을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고 당사자 간 합의로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8.>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을 소비자가 사용하는 용도로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한 경우

2. 해당 화학물질이 고분자화합물로서 수평균분자량의 범위, 물에 녹는 정도 등의 특성이 명확히 달라 동일한 명칭 또는 식별정보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화학물질로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정보 또는 제출하여야 하는 등록신청자료가 다른 경우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을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된 사항 중 신고한 자의 연락처,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용도 등에 관한 정보를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8.>

환경부장관은 등록유예기간 만료일 1년 전까지 대표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화학물질의 등록에 차질이 우려되는 협의체에 대해서는 그 협의체의 구성원 중에서 기존화학물질의 제조량 또는 수입량이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한 자가 대표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화학물질의 제조량 또는 수입량이 그 다음으로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8. 1. 15., 2018. 12. 28.>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이 조에서 "대표자"라 한다)는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당사자들과의 합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 1. 15., 2018. 12. 28.>

1. 공동 제출할 자료의 선택·생산에 관한 업무
  2. 공동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업무
- ⑥ 대표자는 협의체의 구성원 간 합의 지연 등의 사유로 제5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어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1. 15., 2018. 12. 28.>
- ⑦ 제5항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별 기존화학물질 제조량 또는 수입량을 고려하여 분담한다. <개정 2018. 1. 15., 2018. 12. 28.>
- ⑧ 대표자는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자들이 각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제16조에 따른 등록신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5., 2018. 12. 28.>
- ⑨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당사자들의 합의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 8. 4., 2018. 1. 15., 2018. 12. 28.>
- ⑩ 대표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협의체의 구성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8. 12. 28.>

### 협의체의 의무 및 책임

- > 기존화학물질 등록을 이행하려는 당사자는 화평법 제10조에 명시된 사전신고 후 해당물질의 협의체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 > 협의체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임
  - 동일한 물질을 등록하려는 등록자간의 정보교환을 촉진하여 연구의 중복을 피하고,
  - 분류 및 표시에 동의를 얻기 위함
- > 이러한 공동제출에 관한 규정은 등록자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등록을 준비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함
- > 공동등록은 업무 효율성 상승, 등록비용과 시간의 절감 및 척추동물의 중복 시험 방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확보 및 등록 과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이자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들이 이행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도의적·법적 책임 임

## 1.4. 용어 정의

- > 법 제2조(정의) 등에 근거하여 이 실무 가이드에 주로 사용되는 용어들은 아래와 같음(<표1>)

표 1\_ 용어의 정의

용어	정의	법적근거
기존화학물질	가. '91.2.2 이전 유통된 화학물질 (37,088종) 나. 유해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물질 (7,390종)	법 제2조
협업체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기 위해 등록신청자들이 구성하는 자발적인 조직	법 제15조
협업체 가입	공동등록 이행을 위해 사전신고한 기존화학물질의 공동으로 등록신청자료를 작성하기 위해 협업체 회원으로 참여하는 절차	
협업체 활동	협업체 가입으로 공동등록 이행을 위한 구비서류 확보 및 기타 행정적 활동 수행을 의미	
협업체 운영·관리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IT)에 연동된 공동등록협업체 시스템을 통해 운영·관리 함	
협약당사자	화학물질 공동등록을 이행하기 위한 시험자료 생산, 비용분담 등의 사항에 대하여 협업체 내 구성원 간 협약을 체결한 자를 말함	
대표자	사전신고를 바탕으로 구성된 공동등록 협업체 시스템에서 투표를 통해 선정된 자	제15조제1항
공동제출 의무자	화평법에 따라 물질의 등록에 관한 자료를 등록유예기간에 관계없이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자로서 협약당사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등록신청자료	협약당사자들이 물질의 등록을 위하여 공동으로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제15조제1항
자료소유자	물질 정보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제3자에게 그 물질 정보에 대한 사용권 및 참조권을 적법하게 제공 할 수 있는 자	
사용권	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은 물론 다른 목적을 위해 아무런 제한 없이 물질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제15조제1항
참조권	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 및 서류의 기록·보존의 한정된 목적으로 물질 정보를 사용·열람할 수 있는 권한	제15조제1항 제44조제2호

공동등록 협의체  
실무가이드



## 제2장 협의체 구성 및 대표자 선정

- 2.1. 협의체의 구성
- 2.2. 협의체 가입절차
- 2.3. 대표자의 선정절차

## 2.1. 협의체의 구성

### 협의체 구성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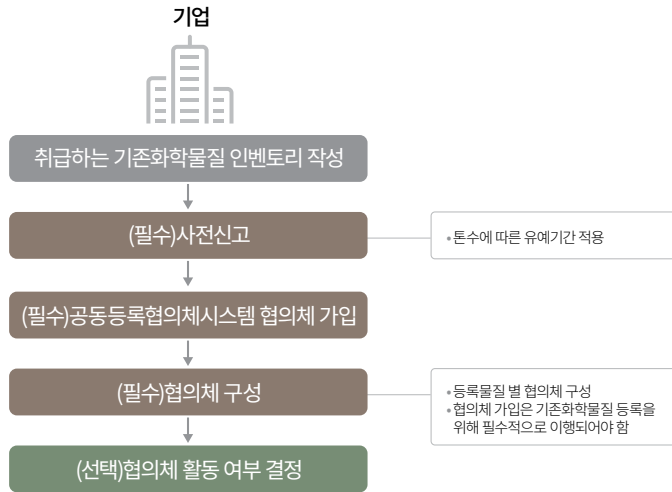


그림 1\_ 협의체 구성 방법

- >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은 취급하는 기존화학물질의 취급량 등을 확인하여 인벤토리를 작성
- > 등록이 필요한 기존화학물질이 확인되면 사전신고를 실시하여 취급량에 따른 등록유예기간을 받아야 함
  - ※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기존화학물질은 2030년까지 등록 완료 되어야 함
- > 사전신고 완료한 물질은 시스템을 통하여 등록물질별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추후 협의체 구성원으로 등록의무를 이행할 수 있음

## 협의회 구성 절차

절차	방법	비고
	↓	
사전신고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진행	비용발생 없음
	↓	
협의회 가입	공동등록협의회시스템을 통하여 가입	비용발생 없음
	↓	
협의회 구성	공동등록협의회시스템에서 해당 협의회 확인 가능	비용발생 없음
	↓	
대표자 선정	공동등록협의회시스템에서 진행	비용발생 없음
	↓	
협의회 활동 개시	협의회 구성원의 참여여부 결정 후 활동 개시	비용발생

- > 사전신고를 마친 기존화학물질은 공동등록협의회시스템(IT)를 통하여 해당 물질의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음
- > 협의회 가입, 구성 및 대표자 선정 과정은 기존화학물질을 등록하기 위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법령상의 절차이며,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 > 협의회 가입한다고 해당 협의회 활동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 협의회 활동이 개시되면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비용, 등록 이행에 필요한 자료 구매/생산 등과 같은 비용이 발생
- > 협의회 운영에 발생하는 비용 처리 및 분담은 각 협의회 내의 운영 원칙에 따름

## 협업체 구성원 구분

표 2\_

활동방식에 따른 협업체 구성원 구분

구분	활동 방식	비용 부담
대표자 (Leader)	협업체 운영과 전체 관리를 주도	협업체 비용 및 시험자료 비용을 초기에 부담
적극적 구성원 (Active member)	등록을 위하여 직접 관련 자료의 생산과 유통에 대부분 혹은 일부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경우	협업체 비용 및 시험자료 비용을 초기에 부담
소극적 구성원 (Passive member)	등록의사는 있으나, 직접 관련 자료의 생산과 유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경우	대표자 및 적극적 구성원의 선 지급비용 및 활동에 대한 보상비용 추가 부담

- > 협업체 가입한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협업체 활동방식에 따라 대표자(Leader), 적극적 구성원(Active member), 소극적 구성원(Passive member)로 구분
- > 협업체에 가입한 구성원들은 위의 세 가지 협업체 내 활동방식 중 어떤 대응을 할지 선택하고 서로 의사를 표명하여야 함
- > 이에 따라 협업체 조직을 구성하고 협업체의 운영과 자료 생산 및 유통을 위해 연결할 대상의 범위와 연락방식을 정하여 협업체 운영에 대하여 구체화하여야 함

- 등록하려는 물질의 구성원의 활동 구분에 따른 협의체 구성은 아래 그림2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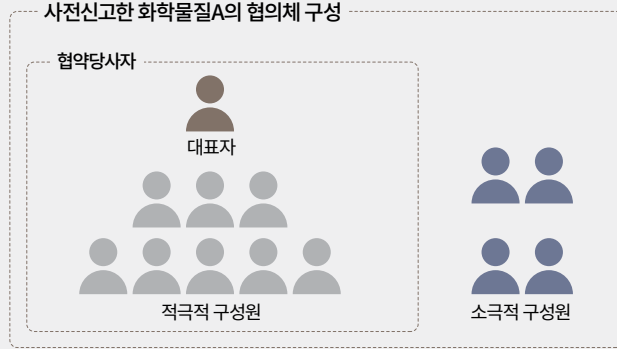


그림 2\_ 기존화학물질 협의체 구성

- 기업은 기존화학물질 등록을 위한 협의체 역할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대표자: 등록하고자 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식별정보 확인 업무, 구성원의 물질에 대한 식별정보 구별, 시험자료의 해석, 자료의 신뢰도 분석, 분류 및 표시 구분, 위해성 평가 등의 기술적 업무와 시험자료 거래에 관한 능력과 비용 분석에 관한 업무 능력도 있어야 함
  - 적극적 구성원: 대표자가 제안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료구매/생산, 분류 및 표시 제안, 자료의 신뢰도 평가, 비용산정 등에 관하여 기업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여야 함
  - 소극적 구성원: 대표자 또는 협약 당사자에 의해 결정된 사항에 의견을 제시할 수 없으며, 화학물질에 대한 식별정보 확인 등의 최소한의 권리만 내세울 수 있음

## 2.2. 협의체 가입 절차

### 공동등록시스템을 통한 협의체 가입절차

- > 등록하려는 물질의 협의체는 환경부에서 구축한 공동등록협의체 시스템을 통하여 가입할 수 있음
- > 협의체 대표자를 희망할 경우 협의체 가입 시점에 대표자 희망여부를 선택하여 가입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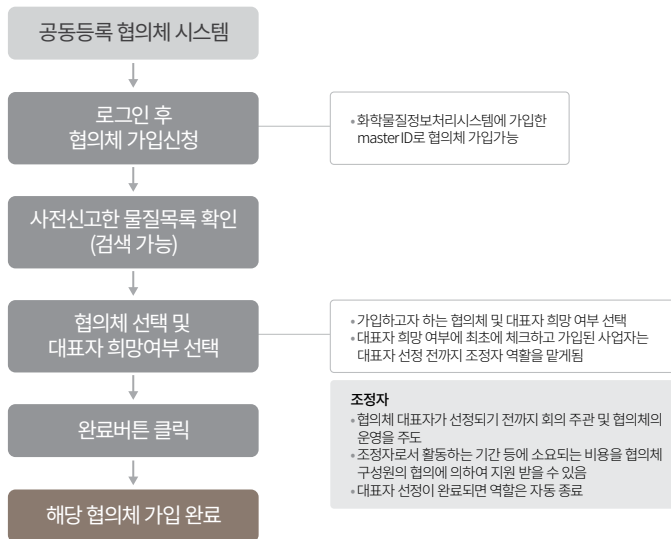


그림 3\_  
공동등록협의체 가입 절차

### 공동등록협업체시스템을 통한 협업체 가입절차

- 공동등록협업체시스템을 통한 협업체 가입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음
- 공동등록협업체시스템은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의 Master ID로 로그인 가능하며 로그인 후 사전신고한 물질목록을 모두 확인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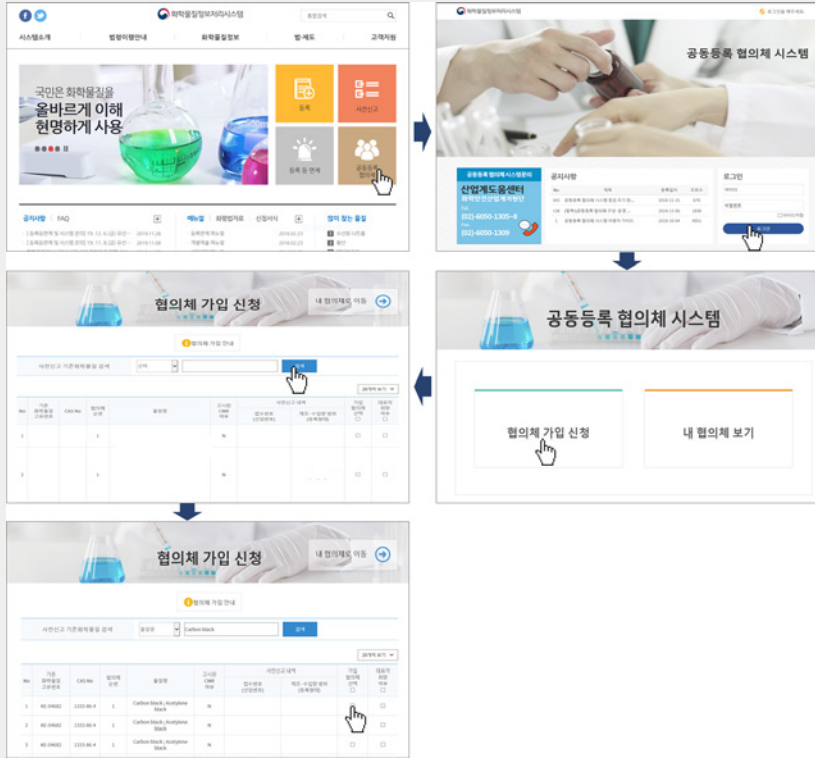


그림 4\_ 공동등록협업체시스템 상 협업체 가입 절차

## 2.3. 대표자 선정 절차

### 협의체 대표자(조정자)

- > 각 물질별 구성된 협의체는 공유한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제출하기 위해 대표 등록자를 지명하여야 함
- > 대표자의 등록신청자료가 제출된 후, 공동 등록 구성원들은 개인별 마감 시한에 따라 개별적으로 등록을 진행 함

### 참고내용

#### 공동등록협의체시스템을 통한 대표자 신청

- 협의체 대표자를 희망할 경우 협의체 가입 시점에 대표자 희망여부를 선택하여 가입하여야 함
- 대표자 희망여부에 최초로 체크하고 가입된 사업자는 대표자 선정 전까지 조정자 역할을 맡게 됨
- 이미 최초 대표 희망자가 조정자로 있는 경우에는, 대표 희망자로 표시되고, 추후 대표자 투표를 통하여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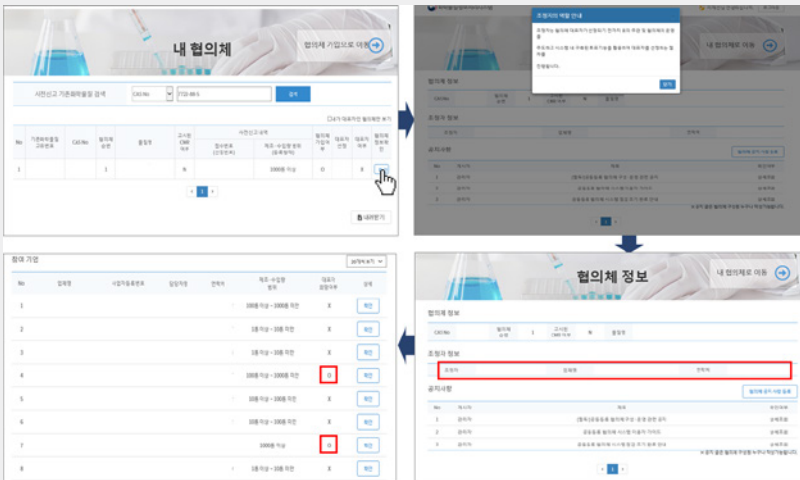


그림 5\_ 공동등록협의체시스템 상 대표자 신청 절차



## 협의회 대표자 투표 개시

- > 최초 대표자 희망자로 선정된 조정자 및 대표 희망자는 시스템을 통하여 투표 개시를 진행 할 수 있음
- > 대표자 선정을 위한 투표기능은 해당 협의회 가입자 발생 30일 경과 후에 가능함
- > 투표가 개시되면 각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구성원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메일이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을 통하여 자동 전송
- > 투표를 개시한 조정자는 협의회 구성원 모두에게 투표 시작일과 종료일을 주기적으로 별도 공지하여 투표에 참여 할 것을 독려
- > 시스템을 통한 대표 희망자 및 조정자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대표자 투표를 진행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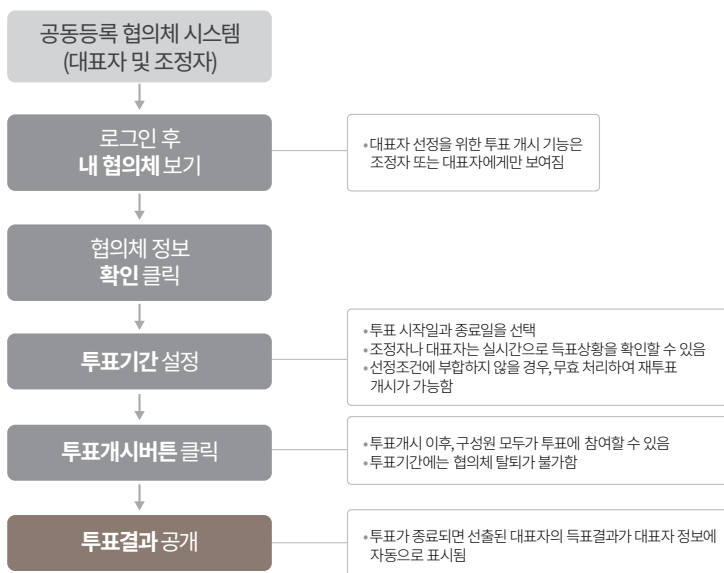


그림 6\_

(조정자) 공동등록협의회 대표자 투표 진행절차

### 공동등록협의체시스템을 통한 대표자 투표 개시

- 최초 대표 희망자로 가입되어 조정자로 설정된 협의체에서 대표자 선정 투표를 개시 할 수 있음
- 대표자 선정 투표 개시 전에 각 협의체 구성원에게 투표에 관한 사전 공지하는 것이 필요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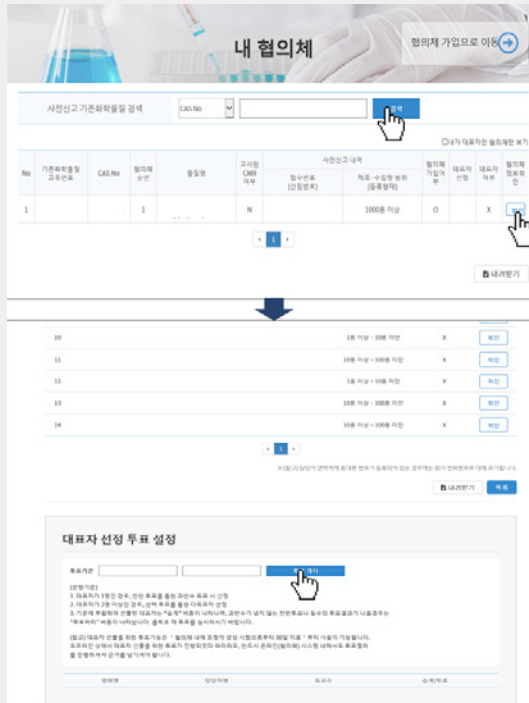


그림 7\_ (조정자) 공동등록협의체시스템 상 대표자 투표 개시 방법

### 대표 희망자를 신청한 기업의 숫자에 따라 선정방식 구분

- 대표 희망자가 1명 또는 그 이상인 경우에 따라 투표를 진행

단독신청	① 조정자는 협의체별로 회원에게 이메일 또는 유선 연락을 통하여 대표 희망자에 대한 의견 수렴 ② 단독 신청일 경우에 시스템 투표기능을 활용하여 찬/반 투표 진행 ③ 과반수 득표시 선정
복수신청	① 대표 희망자 각 기업의 업무 역량 평가를 위한 협의체 구성원과의 정보 공유 ② 시스템의 투표기능을 활용하여 투표결과 최다 득표자를 대표자로 선정

- 기준에 부합하여 선출된 대표자는 “승계” 버튼이 나타나며, 과반수가 넘지 않는 찬반투표나 동수의 투표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무효처리” 버튼이 활성화 되며 재 투표 가능함

### 대표자 선정을 위한 구성원 투표

- > 대표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협의체 별로 대표자를 추가로 희망하는 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선정 절차를 진행
- > 대표자 선정을 위한 투표가 개시되면, 해당 협의체 구성원들은 시스템 내에서 투표에 참여하여야 함
- > 대표자 선정 투표에 관한 안내를 받았음에도 참여하지 않은 구성원은 대표자 선정 결과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 오프라인 회의에서 협의체 구성원들의 합의 하에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협의체 시스템을 통하여 대표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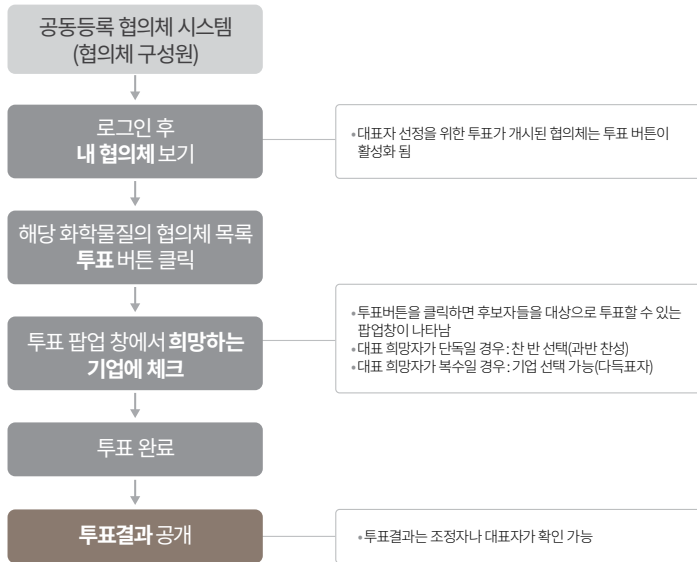


그림 8\_ 공동등록협의회 대표자 투표 절차

### 참고내용

#### 공동등록협의회시스템을 통한 대표자 투표 참여

- 대표자 투표가 개시된 해당 화학물질의 협의회에 대표자 선정에 투표 버튼이 활성화 되면 해당 협의체의 대표자 투표에 참여 할 수 있음
- 대표 희망 기업의 정보를 확인하고 찬/반 여부를 선택 할 수 있음




그림 9\_ 공동등록협의회시스템 상 대표자 투표 절차

### 대표자 선정 및 공식화 절차

- > 투표를 통한 대표자 선정이 완료된 이후 협의회 구성원에게 대표자가 선정되었음을 공지 함
- 대표자 선정에 참여하지 않은 구성원들이 이견 없이 선정결과를 수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공지 시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함
- 선정된 협의회 대표자는 공동등록협의회 IT시스템의 공지사항을 통해 선정된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회 구성원에게 이메일 안내를 통하여 공식화 함

### 대표자 변경

- > 대표자 변경이 불가피한 사유 발생
  - 대표자가 제조·수입 중단, 폐업 등 법 이행의무가 상실되었거나, 대표자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대표자 재선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 > 대표자 변경이 필요한 협의회에서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대표자 재선정 절차를 진행하도록 함
- > 대표자 변경과 관련한 일련의 절차 및 증빙자료 등은 협의회 구성원 모두에게 공유되어야 하며, 대표자 재선정에 관하여서도 협의회 구성원 모두의 합의를 이루어야 함

공동등록 협의체  
실무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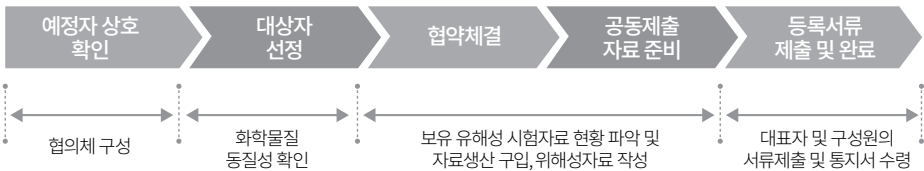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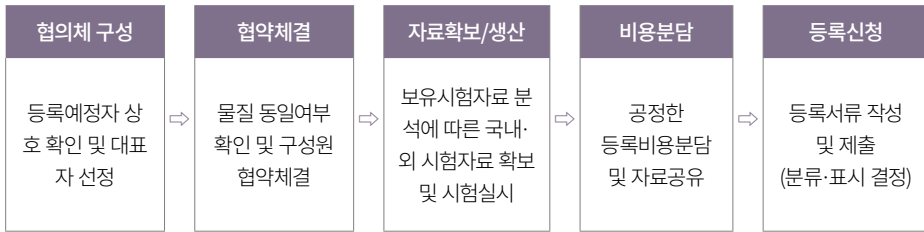
# 제3장 협의회 구성원의 역할 및 업무가이드

- 3.1. 공동등록을 위한 단계별 주요 내용
- 3.2. 협의회 구성원의 역할 및 업무가이드

### 3.1. 공동등록 제출 준비를 위한 단계별 주요 내용

#### 공동등록 일정

- > 공동등록을 위한 협의체 운영절차는 아래와 같음
- > 협의체 운영은 아래와 같은 업무 순서대로 진행 될 수는 있지만, 각 협의체의 성격에 따라 순서가 조정되거나 업무가 가감 될 수 있음
- > 각 장에서 기술한 업무와 전체 공동등록 일정에 따른 자료의 준비가 완료되면 공동등록 제출 준비가 완료 됨
- > 대표자는 등록신청자료 제출을 위한 단계별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협의체 구성원 역시 대표자의 업무 일정에 맞추어 필요한 업무를 이행하여야 함





### 공동등록 단계별 업무

- > 공동등록 이행을 위한 협의체 운영의 단계별 절차는 크게 5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각 단계 및 그에 따른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음
- > 공동등록 전 과정의 통상적인 단계로 기술하였으며, 협의체 구성원의 각 운영 주체에 따른 업무 및 역할은 '3.2. 협의체 구성원의 역할 및 업무 가이드'에서 기술함

절차	세부내용
협의체 구성	1-① 협의체의 구성 1-② 협의체 내 구성원 관리 1-③ 공동등록 범위에 대한 결정 1-④ 공동등록 일정 관리 1-⑤ 협의체 내·외 커뮤니케이션
↓	
협약 체결	2-① 화학물질 확인 및 동질성(Identification)에 대한 합의 도출 2-② 협의체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에 대한 합의 도출
↓	
자료 확보/생산	3-① 데이터갭 분석, 자료 선택 및 공유에 대한 합의 도출 3-② 분류 및 표시에 대한 합의 도출
↓	
비용 부담	4-① 협의체 운영, 자료 공유 또는 구매/생산 비용 등에 관한 처리
↓	
등록 신청	5-① 등록신청자료 작성 및 제출 5-② 등록 완료

### 3.1.1 협의체 구성

- >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협의체 구성은 법상에서 규정한 의무사항
- > 등록유예기간 내에 동일물질을 등록신청하려는 자는 협의체의 참여여부와 상관없이 공동제출의 의무가 있음
- > 즉, 협의체에 구성원으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자료 공유와 비용 분담의 의무는 협의체 참여한 자와 참여하지 않은 자 모두에게 있음
- > 협의체 가입 후 활동 여부와 활동 정도는 구성원들의 선택 사항임
- > 협의체 구성원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적극적 구성원'과 단순 협의체 가입 등 비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소극적 구성원'이 있으며 각 협의체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운영

표 3\_  
협의체 구성

구분	내용
1-① 협의체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체”는 동일한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자 또는 ‘국외제조자가 위임한 자’가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조직</li> <li>■ “협의체 가입”은 ‘공동등록협의체시스템(IT시스템)’을 통하여 사전신고 완료한 물질에 대하여 가입할 수 있음</li> <li>■ “협의체 활동”은 협의체 가입으로 공동등록 이행을 위한 구비서류 확보 및 기타 행정적 활동 수행을 의미</li> <li>■ 협의체 구성 방법</li> </ul>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pre> graph LR     A[IT 시스템 사전신고] --&gt; B[IT 시스템 협의체 가입]     B --&gt; C[IT 시스템 협의체 구성]     C --&gt; D[IT 시스템 대표자 선정]     D --&gt; E[참여도 결정 협의체 활동개시]             </pre>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질별 사전신고 후 가입</li> <li>- 연간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로서 사전신고를 마친 자</li> <li>-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도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함</li> </ul>

구분	내용																																				
1-② 협의체 내 구성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명성, 공정성, 비차별적 및 비영리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명성: 공동등록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내용을 구성원에게 공유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체가 적용하는 화학물질 범위(식별정보, 용도 등)</li> <li>- 협의체 구성원들의 정보 및 후발등록자 정보 공유</li> <li>- 참조권 제공 대상</li> <li>- 비용발생 부분: 등록 톤수에 따라 고정적 또는 가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안내, 등록에 필요한 수수료 및 필요예산에 따른 내용 공유</li> </ul> </li> <li>• 공정성: 등록톤수에 따라 동일한 자료가 요구되는 협의체 구성원 수에 따른 공정한 비용분배, 공정한 자료 공유</li> <li>• 비차별: 물질을 등록하고자 하는 모든 회사는 해당 협의체의 회원이 될수 있음</li> <li>• 비영리: 해당 협의체 운영 또는 참조권 판매 등을 통한 수입은 협의체 활동 비용으로 사용되거나 특정 시점에 회원들에게 상환 가능하도록 함</li> </ul> </li> <li>■ 협의체 운영·관리에 대한 규정된 법적 형식은 없으며 협의체 참여 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독립적으로 관리</li> <li>■ 환경부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각 협의체의 운영·관리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원활한 운영 절차 지원을 위한 플랫폼 마련</li> </ul>																																				
1-③ 공동등록 범위에 대한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제출 가능한 자료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4a4a6a; color: white;"> <th>제출정보</th> <th>세부사항</th> <th>공동제출</th> <th>합의한 경우, 공동제출 가능</th> </tr> </thead> <tbody> <tr> <td>제조·수입자 정보</td> <td>명칭, 소재지, 대표자 등</td> <td>개별</td> <td></td> </tr> <tr> <td>화학물질의 정보</td> <td>명칭, 식별정보</td> <td>개별</td> <td></td> </tr> <tr> <td>화학물질의 용도</td> <td>용도분류체계</td> <td>개별</td> <td></td> </tr> <tr> <td>분류 및 표시</td> <td>GHS분류 및 표시</td> <td>●</td> <td></td> </tr> <tr> <td>물리적·화학적 특성</td> <td>톤수 범위별 차등</td> <td>●</td> <td></td> </tr> <tr> <td>유해성 자료</td> <td>시험자료 (최대 47개 항목)</td> <td>●</td> <td></td> </tr> <tr> <td>안전사용 지침</td> <td>개인보호구, 응급조치사항 등</td> <td></td> <td>●</td> </tr> <tr> <td>위해성 자료</td> <td>노출 시나리오</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style="font-size: small; margin-top: 10px;">* CSR이 공동등록에 포함되는 경우, 각 기업체는 해당자료에 포함될 물질의 사용처에 대해 파악하고 각 사용처에서 사용된 톤수를 표기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제출 범위에 대한 결정은 공동등록의 모든 잠재적인 구성원들과 함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명확하게 합의</li> <li>■ 협의체 내에서 위해성자료(CSR)의 공동개발 및 공동제출 여부는 해당 물질의 특성 및 공동제출 구성원의 상황(수)에 따라 결정됨</li> </ul>	제출정보	세부사항	공동제출	합의한 경우, 공동제출 가능	제조·수입자 정보	명칭, 소재지, 대표자 등	개별		화학물질의 정보	명칭, 식별정보	개별		화학물질의 용도	용도분류체계	개별		분류 및 표시	GHS분류 및 표시	●		물리적·화학적 특성	톤수 범위별 차등	●		유해성 자료	시험자료 (최대 47개 항목)	●		안전사용 지침	개인보호구, 응급조치사항 등		●	위해성 자료	노출 시나리오		●*
제출정보	세부사항	공동제출	합의한 경우, 공동제출 가능																																		
제조·수입자 정보	명칭, 소재지, 대표자 등	개별																																			
화학물질의 정보	명칭, 식별정보	개별																																			
화학물질의 용도	용도분류체계	개별																																			
분류 및 표시	GHS분류 및 표시	●																																			
물리적·화학적 특성	톤수 범위별 차등	●																																			
유해성 자료	시험자료 (최대 47개 항목)	●																																			
안전사용 지침	개인보호구, 응급조치사항 등		●																																		
위해성 자료	노출 시나리오		●*																																		

구분	내용
1-③ 공동등록 범위에 대한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제출에 대한 합의가 완료된 이후 등록의무자들은 등록에 필요한 이용 가능한 모든 자료를 수집해야 함</li> <li>■ 공동제출 범위를 결정할 때 모든 등록자는 서류 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있어야 하며, 협의체 내 등록자들 사이에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이 요구됨</li> </ul>
1-④ 공동등록 일정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체 구성원 각각의 등록톤수에 따른 유예기간 종료 시점까지 업무 수행을 위한 일정을 조율해야 함</li> <li>■ 인체·환경 유해성 자료의 생산이 필요한 경우, 시험 종류에 따라 1개월~2년까지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필요한 시험 기간을 확인하여 등록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li> </ul>
1-⑤ 협의체 내· 외 커뮤니케 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체는 구성원 간 정보를 공유하고, 해당 물질 정보 및 등록 전 과정에 대한 상호 합의를 찾아야 하므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 함</li> <li>■ 커뮤니케이션의 창구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체의 커뮤니케이션은 공동등록협의체시스템을 통하거나, 자체적으로 웹사이트(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체 내 공지사항 게시판(댓글) 기능 사용가능</li> <li>- 협의체 운영일정 공유(대표자가 일정을 입력하여 구성원과 공유 가능)기능 사용가능</li> </ul> </li> <li>• 협의체의 담당자/연락처는 모든 협의체 회원들과 공유되어야 하며, 신규회원, 데이터소유자, 구성원의 회원 정보 등에 대해서 담당자에게 문의할 수 있으며 동의에 의해 제공 가능함</li> <li>• 대표자는 협의체 구성원의 변동사항(예, 새롭게 가입한 구성원)을 파악하여 최신의 구성원들 목록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구성원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함</li> <li>• 협의체 내 의사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체 구성원 간 합의를 거쳐 자발적으로 추진함이 원칙이나 운영과정 상 발생하는 이슈사항은 관련기관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음</li> </ul> </li> <li>■ 주기적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등록 전 과정 업무 진행 사항은 협의체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 통보하는 것이 협의체의 중요 과제</li> <li>• 주기적 정보제공은 협약 당사자를 중심으로 안내 할 수 있으나, 그 외의 회원의 활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항상 고려해야 함</li> </ul> </li> </ul>

**— 참고내용 I**

**협의체는 아래의 의무를 공유 해야 함**

- 연구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물질 고유 속성에 대한 자료 공유
- 가능하다면 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동의
- 척추동물에 대한 모든 시험 데이터를 공유
- 정보요청에 대응
- 추가 연구를 수행하거나 시험 제안서를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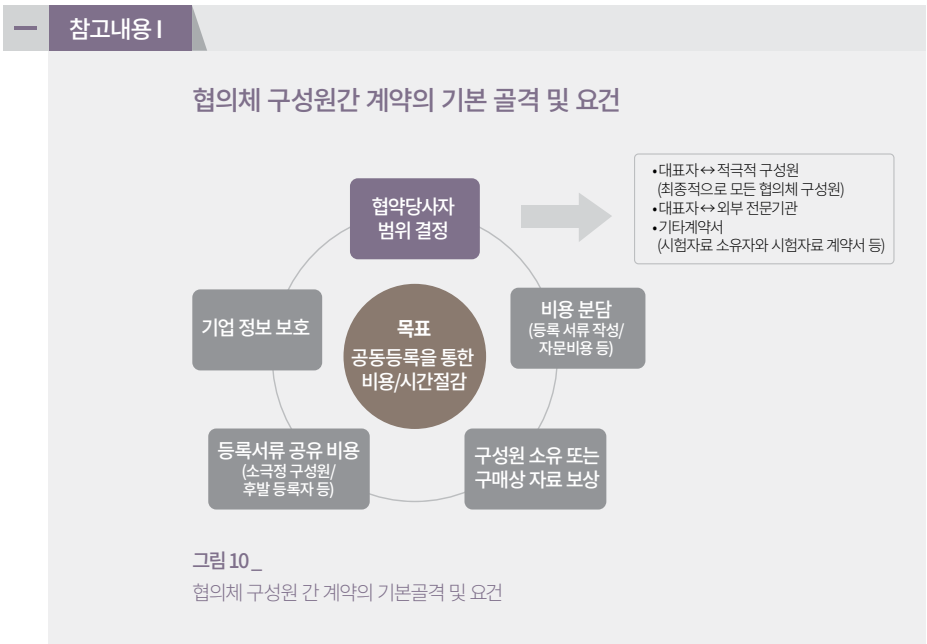
### 3.1.2 협약 체결

- > 협의체의 대표자가 정해지면, 협약이 체결되어야 함
- > 협약은 통상 협약 당사자가 서로 다른 복수의 계약이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서로 다른 당사자간 협약이 체결될 수 있음
  - 대표자 ⇔ 외부 전문기관
  - 대표자 ⇔ 적극적 구성원
  - 대표자/적극적 구성원 ⇔ 자료 소유자
  - 대표자 ⇔ 모든 구성원
- > 기존화학물질의 공동 등록에 있어서, 협의체 구성원이 등록서류를 공동으로 준비하여 제출함으로써, 시험자료 및 등록서류 공유로 인한 비용절감 및 척추동물 시험의 중복을 피할 수 있음
- > 협의체의 협약은 이 대전제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구성원의 영업비밀이 보장되는 범위로 작성되어야 함

표4\_ 협약 체결

구분	내용
2-① 화학물질 확인 및 동질성 (Identification)에 대한 합의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신고 이후 동일한 물질에 대한 공동등록 협의체가 구성되면 물질의 동질성 확인을 위해 해당 물질정보를 공유</li> <li>▪ 대표자는 협의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확인</li> <li>▪ 등록하고자 하는 화학물질 정보는 협의체 내 최대 구성원수가 동의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정하도록 함</li> <li>▪ 등록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명칭 및 특성은 모든 협의체 회원들이 동의한 것이어야 하며, 공동제출 협의체 구성원들은 화학물질을 등록할 때 반드시 대표자의 화학물질과 동일한지 확인</li> </ul>

구분	내용
<p>2-② 협의체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에 대한 합의 도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체가 구성되면 협의체 내의 자료공유 및 비밀유지 등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공동등록과 관련된 협약을 작성 및 체결</li> <li>■ 협의체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자 선정 및 대표자 직무</li> <li>• 공동등록 신청자료의 준비 및 제출</li> <li>• 공동등록 신청자료의 수집</li> <li>• 공동등록 신청자료의 제출</li> <li>• 자료 소유권/참조권</li> <li>• 비용 부담 및 수익 배분</li> <li>• 협약의 운영</li> <li>• 비용의 관리</li> <li>• 비밀보호</li> <li>• 협약기간 및 종료</li> <li>• 분쟁 해결 등</li> </ul> </li> <li>■ 자료공유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은 공정하고 명확한 근거에 의해 제공</li> <li>■ 대표자는 구성원들에게 협약서에 대한 동의 서약을 받고, 협약서에 서명한 구성원들과 협약 내용을 공유</li> <li>■ 대표자는 직권으로 또는 협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협약서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협약 당사자에게 탈퇴를 통지할 수 있음</li> <li>■ 대표자는 협약당사자 간 의견 조정 및 의사결정 주체가 되어야 함</li> </ul>



## 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 건본협약서

본 협약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자(이하 “공동제출의무자”라고 한다) 중 아래 서명 당사자들 간의 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에 관한 합의이다.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본 협약에 서명한 당사자들이 화평법 제1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물질명 및 CASNo. 등]의 등록을 위한 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항과 같다. 본 조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화평법 제2조에 따른다.

1. “물질”이란 기존화학물질로서 본 협약에 따라 등록하고자 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2. “협약체”란 화평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사전신고한 자 중, 동일한 기존화학물질을 공동등록 협약체 시스템 가입을 통해 구성된 조직을 의미한다.
3. “협약당사자”란 협약체에 가입한 자 중,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기 위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본 협약에 서명한 당사자를 말한다.
4. “대표자”란 화평법 제15조 제1항 본문의 ‘대표자’를 말한다.
5. “공동제출협약체”란 동일한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 선임자가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기 위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구성·운영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6. “협약당사자가 아닌 공동제출의무자”란 화평법에 따라 물질의 등록에 관한 자료를 등록유예기간에 관계없이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자로서 협약당사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7. “외부 서비스 제공자”란 별도의 계약에 따라, 공동제출협약체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란 협약당사자들이 물질의 등록을 위하여 화평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를 말한다.
9. “소유권”이란 시험자료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자료소유자”란 물질 정보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제3자에게 그 물질 정보에 대한 사용권 및 참조권을 적법하게 제공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11. “사용권”이란 화평법 제15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은 물론 다른 목적을 위해 아무런 제한 없이 물질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12. “참조권”이란 화평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 및 제44조 제2호에 따른 서류의 기록·보존의 한정된 목적으로 물질 정보를 사용·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 제3조 대표자 선정 및 대표자의 직무

1. 대표자는 협의체에서 투표를 통해 선정된 자 또는 환경부장관의 조정에 의해 선정된 자로 한다.
2. 대표자는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과 관련하여 협약당사자를 대표하여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 가. 제출할 시험자료의 선택·생산에 관한 업무 총괄
  - 나. 등록신청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의 집행 및 분담에 관한 업무
  - 다. 등록신청자료 및 진행 상황에 관한 협약당사자에 대한 정기 보고 업무
  - 라. 기타 등록신청자료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업무
  - 마. 협약당사자 사이의 의견조정 및 의사결정 절차의 주재
3. 대표자는 제2항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협약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다른 협약당사자에게 위임 또는 외부 서비스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및 책임사항, 계약 여부 등을 협약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4. 협약당사자는 [대표자가 제2항의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협약당사자의 3분의2의 동의를 얻어 대표자를 해임할 수 있고, 대표자는 후임 대표자가 선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사임할 수 있다.
5. 협약당사자는 대표자가 수행하는 제2항의 업무에 대한 보상을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다.

### 제4조 협약당사자의 협력의무

1. 협약당사자는 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의 준비 및 제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표자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2. 협약당사자는 자신이 소유권을 보유한 시험자료의 공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에 따른 비용부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4. 비용을 지불한 협약당사자에게는 공동제출협의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해당 정보 중, 등록신청자료 및 비용 지불과 관련된 정보는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장 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의 준비 및 제출

### 제5조 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의 범위 결정

1. 협약당사자는 화평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각호의 자료를 공동으로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협약당사자는 화평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각호의 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합의를 하여야 한다. 만약 협약당사자 사이에 화평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각호의 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기로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자료는 협약당사자가 각자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 제6조 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의 수집 및 선택

1. 협약당사자는 화평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2. 대표자는 제1항에 따른 기존 시험자료가 화평법상 등록신청자료로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평가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협약당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대표자가 고지한 기존 시험자료를 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로 채택할 것인지는 협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협약당사자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재에 따라 [협약당사자의 과반수의 결정] 또는 [협약당사자 1/2 이상의 출석 및 출석 협약당사자의 과반수 찬성] 중 하나를 택하여 결정한다.
4. 제3항에 따라 기존 시험자료를 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기존 시험자료의 소유자는 제9조 제1항에 따른 비용분담 조항에 따른 비용을 지급받을 것을 조건으로 해당 기존 시험자료에 대한 사용권 및/또는 참조권을 [협약당사자]에게 부여한다. 다만 기존 시험자료의 소유자가 보유하는 자료에 기업의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고, 위 자료가 공개될 경우 자료소유자의 영업을 손실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자료소유자는 그러한 취지를 협약당사자에게 소명하여야 한다.
5. 제4항에 따라 기존 시험자료에 대한 사용권 및/또는 참조권을 부여한 자료소유자는 해당 시험자료와 관련하여, (1) 자신이 그 시험자료의 정당한 소유자로서 다른 협약당사자에게 시험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문제가 없고, (2) 해당 시험자료들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3) 정보를 제공한 협약당사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청구 통지를 받지 않았음을 보증한다.

6. 협약당사자가 제공한 정보 중, 대표등록자의 등록서류 제출예정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의 제공 정보는 공동제출협체의 등록 일정을 고려하여 공동제출 등록신청 자료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 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의 생산 및 구매

1. 대표자는 협약당사자를 대표하여 화평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아래 각목의 등록신청자료 중 생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직접 또는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생산할 수 있다. 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약당사자 전원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표자가 체결한다.
  - 가. 화평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분류 및 표시
  - 나. 화평법 제1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 다. 화평법 제14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
  - 라. 화평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시험계획서
  - 마. 그 밖에 공동제출이 필요한 신청자료
2. 제1항에 등록을 위해 공동으로 생산된 정보에 대한 시험 결과자료의 사본은 이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부담한 협약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한다.
3. 제1항에 따라 생산된 시험자료는 국립환경과학원에 등록된 날로부터 1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자료의 소유권을 보유한 협약당사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도록 할 수 없다.
4. 물질의 등록 기타 화평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에 대한 사용권 및/또는 참조권을 부여받아야 하는 경우, 이를 위한 제3자와의 계약은 협약당사자 전원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표자가 체결한다.

### 제8조 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의 제출

1. 대표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수집되거나 생산된 자료를 제출에 적합하도록 최종 점검하여야 하고 제출하기 전에 협약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협약당사자는 대표자가 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를 제출하기 전 이에 관하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대표자는 협약당사자들을 대표하여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준비한 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를 화평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늦어도 등록 마감일[··개월] 전에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 마감일은 [대표자 또는 가장 높은 톤수를 갖는 협약당사자]의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3. 대표자는 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를 제출한 경우 협약당사자 및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에 대한 사용권 또는 참조권을 부여한 협약당사자가 아닌 공동제출의무자에게 서면으로 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 제출사실을 알려야 한다.
4. 협약당사자는 반드시 [별표1]에서 규정한 톤수 범위로 화평법 상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등록시점에서 [별표1]에서 규정한 톤수 범위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협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비용을 재산정하여 부담한다.
5. 협약체결시점으로부터 협약당사자의 톤수 범위의 변경이 상위 톤수 범위가 아닌 하위 톤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 이전의 톤수 범위에 해당하는 분담비용을 지불한다. 다만, 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의 분담비용 확정 전까지 하위 톤수 범위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공동제출협의체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 제9조 시험자료 소유권 등

1. 협약당사자가 기존의 시험자료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은 본 협약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2. 본 협약에 따라 생산된 시험자료는 그 생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협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3. [별표1]에서 규정한 등록 톤수 범위의 증가 또는 유해성심사 자료 제출명령 등에 의한 추가 시험자료가 요구되는 경우, 협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한 비용을 지불하면 등록 이후라도 추가 시험자료에 대한 제10조1항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4. 본 협약은 시험자료와 관련하여 협약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현재 또는 미래의 소유권,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5. 자료소유자는 시험자료의 사용권 또는 참조권의 기간을 제한할 수 있으나,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협약당사자에게 사용권 또는 참조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10조 협약당사자가 아닌 공동제출의무자의 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 공동활용 권한

1. 대표자는 화평법 제15조에 따라 협약당사자가 아닌 공동제출의무자에게 대가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에 대한 사용권 또는 참조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2. 협약당사자가 아닌 공동제출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화평법에 따른 물질 등록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자료소유자는 협약당사자가 아닌 공동제출의무자와 자료의 활용 범위에 관하여 별도의 합의를 할 수 있다.
3. 협약당사자가 아닌 공동제출의무자가 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에 대한 사용권 또는 참조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경우, 대표자는 해당 자료에 대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 비용 부담 등

1. 제6조 제3항에 따라 특정 협약당사자가 제공한 기존 시험자료를 공동제출 등록 신청자료로 채택하는 경우, 기존 시험자료의 가치는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협약당사자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협약당사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독립적인 전문기관의 감정결과에 따를 수 있다.
  - 가. 화평법상 제출이 요구되는 자료와의 관련성
  - 나. 과학적 타당성
  - 다. 시험자료의 신뢰성
  - 라. 자료소유자가 자료 생산을 위해 지출한 비용
  - 마. 해당 기존 시험자료를 대체할 시험자료를 새롭게 생산하는 비용
  - 바. 해당 기존 시험자료를 대체할 시험자료의 사용권 또는 참조권을 제3자로부터 부여받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 사. 기타 기존 시험자료의 가치 산정에 필요한 사항
2. 협약당사자는 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에 필요한 비용을 [별표 2]에 따라 협약당사자 간 투명하고 공정하며 비차별적 방법으로 부담한다.
3. 협약당사자가 제7조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생산한 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에 대한 사용권 또는 참조권을 본 협약 제9조에 따라 협약당사자가 아닌 공동제출의 무자에게 부여하는 경우, 해당 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의 사용권 또는 참조권 부여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해당 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의 소유자 사이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협약 당사자 사이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 가. 공동제출협의체의 일반행정비용 및 자료소유자가 해당 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 생산을 위해 지출한 비용
  - 나. 해당 공동등록신청자료에 대한 사용권 또는 참조권 부여에 대한 예상 수요
  - 다. 자료소유자가 해당 공동등록신청자료에 대한 사용권 또는 참조권을 부여하고 이미 지급받은 비용
4. 대표자 및 협약당사자의 등록신청이 완료된 이후라도, 다음과 같이 물질등록협의체에서 공통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 자료의 공유 및 비용 부담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 가. 국립환경과학원의 보완요청 이행을 위해 추가자료 생산이 필요한 경우
  - 나. 국립환경과학원의 추가자료 제출 명령 이행을 위해 추가자료 생산이 필요한 경우
  - 다. 변경등록등의 사유로 인한 추가자료 생산이 필요한 경우
5. 대표자는 제3항에 따라 협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특정 협약당사자가 소유하여 제공한 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의 사용권 또는 참조권을 협약당사자가 아닌 공동제출의무자에게 부여하고 지급받은 대가를 협약당사자들 또는 해당

자료를 제공한 특정 협약당사자와 협의하여 생산비용 분담비율에 따라 배분할 수 있다.

6. 본 협약에 따라 지급되는 모든 금액은 은행 송금 수수료 또는 이와 유사한 요금, 세금 및 기타 부대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

### 제3장 협약의 운영

#### 제12조 운영

1. 협약당사자간의 의사 결정은 본 협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상호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어려운 경우 대표자의 주재에 따라 협약당사자 [협약당사자 전원 과반수의 찬성] 또는 [협약당사자 1/2 이상의 출석 및 출석 협약당사자의 과반수 찬성] 중 하나를 택하여 결정한다.
2.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계약의 체결업무는 협약당사자의 동의 아래 대표자 또는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담당하며, 계약은 대표자 및 모든 협약당사자의 명의로 한다.

#### 제13조 비용의 관리

1.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비용의 지급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대표자/외부 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전 납부한다.
2. 협약당사자는 국외자료구매등 해외비용 송금이 필요한 경우 환율을 고려하여 산정된 비용을 [대표자/외부 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전 납부하도록 하며, [대표자/외부 서비스 제공자]는 비용 산정시점과 송금 시점의 환율 차이를 고려한 차액을 송금이후 협약당사자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3. [대표자/외부 서비스 제공자]는 예산을 준비하고, 비용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록 및 관리하고, 지출보고서를 협약당사자에게 [반기별 또는 분기별] 보고한다.
4. [대표자/외부 서비스 제공자]는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협약당사자에게 지급 또는 청구한 비용을 관리한다. [대표자/외부 서비스 제공자]는 생성 또는 획득한 정보의 총 가치에 대한 기록을 보관한다.
5. [대표자/외부 서비스 제공자]는 공동제출협의체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지급 요청 시 비용 산정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등을 협약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6. [대표자/외부 서비스 제공자]는 제11조 제4항에 따라 협약당사자가 아닌 공동제출의무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가에 대해 협약당사자와 적절한 배분 시점과 방법을 별도 협의하여 정하며,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도록 한다.

가. [매 등록유예기간 종료시점 이후 한달] 및 [등록유예기간 종료이후 반년 또는 매년단위]

나. [협약당사자에게만 소유권 또는 참조권 판매 비용의 배분] 또는 [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를 구매하여 등록유예기간별 추가된 협약당사자가 아닌 공동제출 의무자를 포함한 비용의 배분]

## 제4장 기밀보호

### 제14조 기밀보호

1. 협약당사자는 화평법 또는 규제 목적을 위해 공개되는 정보를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정보를 제공한 협약당사자를 제외한 다른 협약당사자는 기밀보호를 위해 아래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물질의 등록에 관한 모든 정보를 기밀로 취급하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정보 공개가 요구되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대표자가 고용한 외부 서비스 제공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협약당사자 또는 제3자에 의하여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발견하거나 환경부 및 관련 정부기관에 의하여 정보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이를 즉시 다른 협약당사자에게 즉시 알린다.

나. 물질의 등록에 관한 모든 정보는 본 협약에 의하여 허가된 범위로만 사용한다.

다. 물질의 등록과 관련하여 직원, 외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경우,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에서 허가된 범위 내에서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대표자는 기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만들고 외부 서비스 제공자에게 기밀보호를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만들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3. 정보를 받는 협약당사자가 물질에 관한 정보가 아래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때에는 제3항의 기밀보호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가. 본 협약 전에 등록과 무관한 다른 목적으로 받은 정보

나. 정보 공개 전 이미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

다. 정보를 공개하여도 되는 권한을 가진 다른 정보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라. 정보를 받는 협약당사자가 자체 개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이 있는 정보

마. 정부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공개를 요청한 정보

바. 화평법 제4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한 정보

4. 협약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에 화평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에 대한 자료보호 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의해 자료보호가 허용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 가. 본 협약에 따라 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를 생산한 경우: 자료보호신청에 대하여 [공동제출협의체 전원의 찬성], [공동제출협의체 전원 과반수의 찬성], [공동제출협의체 회원 1/2 이상의 출석 및 출석 회원의 과반수가 찬성]이 있는 경우
  - 나. 제3자로부터 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의 사용권 또는 참조권을 부여 받은 경우: 자료소유자의 자료보호요청이 있는 경우

## 제5장 기타조항

### 제15조 자유경쟁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수한다.

### 제16조 법적 성격

본 협약은 협약당사자가 법인 또는 조합 기타 법적 단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제17조 성실의무와 면책

1.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을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현재까지 알려진 최고 수준의 증거, 방법 및 기술을 바탕으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특정 협약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표자를 포함하여 그 어떤 협약당사자도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한 행위로 다른 협약당사자에게 발생한 직접 또는 간접적 손해 및 손실에 대한 책임이 없다. 특히 대표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의 준비 및 제출 지연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생성 또는 제공된 정보를 평가하는 것은 각 개별 협약당사자의 책임으로, 각 개별 협약당사자가 정보 사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정보를 제공한 협약당사자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자신이 제공한 정보를 수용할 것이라고 보장하지 않는다.

### 제18조 협약 기간 및 종료

1. 본 협약은 [계약날짜]부터 효력을 가지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또는 등록 마감일 등...]까지 구속력을 갖는다. 본 협약은 그 목적 달성 후 모든 협약당사자의 합의로 종료할 수 있다.



2. 조항과 자료 소유권 등(제8조), 기밀보호(제13조), 성실의무와 면책(제17조), 분쟁 해결과 준거법(제18조) 조항은 본 협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효력이 유지된다. 특히, 본 협약 제13조의 기밀보호 의무는 본 협약 기간 만료와 무관하게 물질 등록 후 15년 동안 유지된다.
3. 협약당사자는 언제든지 서면 통보로 본 협약을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의 효력은 서면 통보일로부터 [6개월 후]에 발생한다. 본 협약을 탈퇴하는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을 탈퇴하기 전까지 발생한 모든 금전적 부담을 이행하여야 한다. 본 협약을 탈퇴하는 협약당사자는 자신의 지급 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본 협약 해지 이후에 발생한 모든 권리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본 협약을 탈퇴하는 협약당사자 외의 다른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을 탈퇴하는 협약당사자가 제공한 정보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4. 대표자는 직권으로 또는 본 협약상 의무를 이행한 협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본 협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협약당사자에 대하여 그 이행의 촉구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서면 통지를 받은 협약당사자의 의무 이행 없이 45일이 경과하면 대표자는 해당 협약당사자에게 협약 탈퇴를 통지할 수 있고, 대표자의 탈퇴 통지가 도달하면 해당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에서 탈퇴된다. 위와 같이 탈퇴된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의 탈퇴시까지 지급하지 않은 모든 비용을 완납할 때까지 본 협약으로 인한 정보 및 시험자료들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 제19조 권리·의무의 양도

1. 협약당사자는 다른 협약당사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본 협약에 따른 권리 및/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당사자의 합병·분할·분할합병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협약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에는 다른 협약당사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협약당사자의 본 협약에 따른 권리 및 의무가 포괄 승계인에게 이전된다.]

#### 제20조 분쟁 해결과 준거법

1.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 및 대한민국 법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며, 본 분쟁에 대하여 내려지는 중재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모든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합의한다.

- 본 협약의 조항 중 법에 위반되는 것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이상의 합의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당사자들은 본 협약을 [○]통을 작성하여 각자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협약당사자 1] (대표자)

[협약당사자 2]

[협약당사자 3]

**[별표 1] 협약당사자의 등록 톤수 범위**

협약당사자	등록 톤수 범위
협약당사자 1 (대표자)	1000톤 이상
협약당사자 2	100톤 이상 - 1000톤 미만
협약당사자 3	100톤 이상 - 1000톤 미만

**[별표 2] 협약당사자의 비용 부담 방법**

- 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 생산비용
 

협약 제7조 제1항에 따라 협약당사자들이 직접 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를 생산하기로 한 경우, 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와 그에 포함된 시험자료가 필요한 협약당사자들 사이에서 생산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각 협약당사자의 등록 톤수 범위에 따른 비용 부담이 고려되어야 한다.
- 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 사용권 또는 참조권 비용
 

가. 협약 제6조 제4항에 따라 협약당사자가 보유한 기존 시험자료를 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 해당 시험자료의 사용권 또는 참조권 부여비용은 등록을 위하여 해당 시험자료가 필요한 협약당사자들 사이에서 부담한다.

나. 협약 제7조 제4항에 따라 협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보유한 기존 시험자료를 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 해당 공동등록신청자료의 사용권 또는 참조권 부여비용은 등록을 위하여 해당 시험자료가 필요한 협약당사자들 사이에서 부담한다.

### 3. 일반행정비용

가. 다음 각 항목의 비용은 일반행정비용으로 한다

- 1) 비서업무, 외부 서비스 제공자를 통한 법률자문·기술자문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합리적인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비용
- 2) 대표자 또는 협약당사자가 공동제출 등록신청서류를 준비·작성 및 제출하는데 소요된 비용
- 3) 기타 공동제출 등록제출자료를 준비·작성 및 제출하는데 합리적으로 소요된 비용으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을 제외한 모든 비용

나. 일반행정비용은 모든 협약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 <비용 산정>

협약당사자수	공동제출협의체 운영비용(만원, VAT 별도)		비고
	운영비		
	단가	합계	
1			
2			
3			
4			
5			
6~10			
11~			

※ 국내·외 출장, 분기별 업무회의 외 추가 회의, 법률 및 회계 자문, 대관료, 통역·번역 등은 실비청구

다. 협약당사자는 공동제출협의체 운영비용을 아래의 납부시기에 따라 지불한다.

#### <납부시기>

구분	비율(%)	납부시기
선금	40	모든 협약당사자가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중도금	30	공동제출협의체 필수 유해성 자료 확보를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잔금	30	대표자가 등록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4. 위해성에 관한 자료 작성 비용

가. 위해성에 관한 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기로 한 경우, 위해성에 관한 자료 제출대상인 협약당사자는 작성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나. 위해성에 관한 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한 경우, 위해성에 관한 자료 작성을 위해 수집된 용도는 공동등록 협의회 구성원간 공유한다.

### 3.1.3 자료 확보/생산

- > 법은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제출하여야 하는 자에게 제출할 시험자료의 선택·생산, 등록신청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분담 등 의무이행자의 합의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 공동등록 의무자는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공동등록신청자료에 해당하는 자료를 확보/생산해야 함

표 5\_  
자료 확보/생산

구분	내용
<p>3-① 데이터갭 분석, 자료 선택 및 공유에 대한 합의 도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물질의 톤수, 용도, 노출 등의 해당 조건에 요구되는 자료 확인</li> <li>• 국내·외 시험자료 보유 현황 파악</li> <li>• 등록하고자 하는 화학물질의 특성에 따라 해당 시험항목이 생략될 수 있음</li> </ul> </li> <li>■ 데이터갭(Data gap) 분석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신청자료를 준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절차</li> <li>• 데이터갭 분석은 등록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 이용가능한 자료(보유자료), 시험 생산해야 할 자료 등을 파악하는 과정을 말함</li> <li>• 대표자는 데이터갭 분석 절차에 따라 필요한 시험자료를 구매/생산/공유 해야 함</li> </ul> </li> </ul>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pre> graph TD     A[① 물질 톤수에 따른 시험 항목 확인] --&gt; B[② 시험자료 제출 면제 여부 확인]     B --&gt; C[③ 기존시험자료 활용 가능성 여부 확인]     C --&gt; D[④ 시험자료 공유 가능 여부 확인]     D --&gt; E[⑤ 필요 시험자료 확보]           </pre> </div>

구분	내용
<p>3-② 분류 및 표시에 대한 합의 도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류 및 표시에 대한 합의는 협의체의 중요 목표 중 하나</li> <li>■ 협의체 운영 초기에 각 협의체 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분류 및 표시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권장 함</li> <li>■ 협의체 구성원 간의 분류 및 표시에 대한 차이가 없다면 등록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됨</li> <li>■ GHS에 따른 분류가 있는 화학물질의 경우, 대표자는 이러한 분류 및 표시가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li> <li>■ 대표자는 협의체 구성원 모두가 화학물질 분류에 동의를 얻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합의된 분류는 협의체 모든 구성원과 공유하여야 함</li> <li>■ 협의체 내의 분류가 하나 이상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자 등록신청자료에 모든 분류 및 표시를 포함</li> <li>• 분류 및 표시가 다른 구성원은 개별 제출을 신청(협의체 탈퇴)</li> </ul> </li> </ul>

### 3.1.4 비용분담

- > 협의체 구성을 통한 공동등록은 궁극적으로 유해성 시험자료의 공동확보를 통해 등록비용의 분담·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 협의체의 비용분담은 사실상 협의체 운영에 있어 가장 민감한 사항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비용 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분쟁을 최소화 함
- > 공동등록 이행 시 발생하는 비용은 협약서에 따라 대표자가 청구하고 회원들은 이를 지불해야 함
- > 협의체를 구성하는 회원사마다 회계처리방식이 상이하므로 효율적인 회계처리 방식을 고려해야 함

표 6\_  
비용 분담

구분	내용
<p>4-① 협의체 운영, 자료 공유 또는 구매/생산 비용 등에 관한 처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용 분담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용 분담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진 후에는 모든 구성원이 자료 접근 권한을 가질 수 있음</li> </ul> </li> <li>• 등록 톤수 범위에 대한 등록신청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용 분담에 대한 동의를 이룬 모든 협의체 구성원은 등록에 관련한 모든 서류를 열람/이용할 수 있는 권한 및 해당 자료(사본)를 받을 수 있음</li> <li>- 연구비용, 시험자료 외 등록에 사용된 모든 정보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험 생산 비용도 균등하게 분담 됨</li> </ul> </li> <li>• 낮은 톤수의 등록자 또는 후발 등록자에 대한 관리 비용 및 자료 판매로 인한 수익도 전체 비용 산정 비율에 반영해야 함</li> </ul> </li> <li>■ 송장 및 지불을 위한 효율적 시스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체의 등록에 필요한 자료 구매와 관련된 비용 처리는 다수의 법인이 포함된 복잡한 시스템일 수 있음</li> <li>•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하여 이러한 모든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li> <li>• 협의체 대표자는 이러한 모든 송장 및 지불을 구성하는 방법을 사전에 고려하는 것이 중요 함</li> </ul> </li> </ul>

구분	내용		
<p>4-② 협의체 운영, 자료 공유 또는 구매/생 산 비용 등에 관한 처리</p>	<p>■ 비용분담 범위 및 내용</p>		
	구분	구성요소	세부항목
	행정 비용	협의체 운영	• 회의, 자료 준비, 장소대여 등
		협의체 인프라 구성	• 협의체 운영 플랫폼 구축, 유지, 관리 비용
		법률/회계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계별 업무 협약 및 계약 등에 대한 법률 자문</li> <li>• 투명한 비용 산정을 위한 회계 자문</li> </ul>
		전문가 자문	• 시험 자료 구매/생산과 관련한 전문가 자문
		등록 수수료	• 등록신청자료 제출
	자료 구매 생산 비용	시험자료 구매	• 기존 자료 구매
		문헌 및 도서 구매	• 시험관련 문헌
		시험 생산	• 물리/화학, 인체, 환경 유해성 자료 생산
		시험자료 관리	• 시험자료 공유관련
	위해성 평가 비용	용도/노출정보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용도, 유통량, 생산/사용 공정 등 조사</li> <li>• 작업장 노출/오염물질 배출 및 관리 현황 조사</li> </ul>
		노출시나리오 작성	• 제조·사용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위해성 평가보고서	• 노출, 유통량, 공정에 따른 위해성 평가

### 3.1.5 등록신청

- > 공동등록 이행에 필요한 자료가 모두 확보되면, 등록신청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 > 대표자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상에서 협의체 구성원들보다 먼저 등록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 대표자는 제출한 공동제출서류에 대한 등록통지서를 과학원으로부터 받은 후에 이를 협의체 구성원들에게 알림
- > 그 이후, 협의체 구성원들은 각각 등록신청서 제출

표 7\_  
등록신청

구분	내용
5-① 등록신청자료 작성 및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신청자료 작성방법에 근거하여 작성</li> <li>■ 대표자 등록신청자료 선제출</li> <li>■ 협의체 구성원 자료 제출</li> <li>■ 개별등록자 자료 제출</li> <li>■ 등록신청서 주요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등록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 이름 등 제조·수입자 정보 기재</li> <li>② 화학물질 기초정보: 화학물질명, 고유번호(CAS No.), 상품명, 분자식·구조식, 순도, 확인된 불순물·부산물, 연간 제조·수입 예정량</li> <li>③ 화학물질 용도: 용도분류체계, 구체적 용도에 대한 설명, 사용하지 말아야 할 용도, 상품의 물리적 형태 및 용도, 상품 내 함량(%)</li> <li>④ 화학물질의 분류·표시</li> <li>⑤ 등록 톤수에 따른 유해성 자료: 물리·화학적 특성, 인체 유해성, 환경 유해성, 고분자 특성 자료</li> </ol> </li> </ul>
5-② 등록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학물질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한 '화학물질 등록 통지서' 수령</li> </ul>



### 화평법 등록 IT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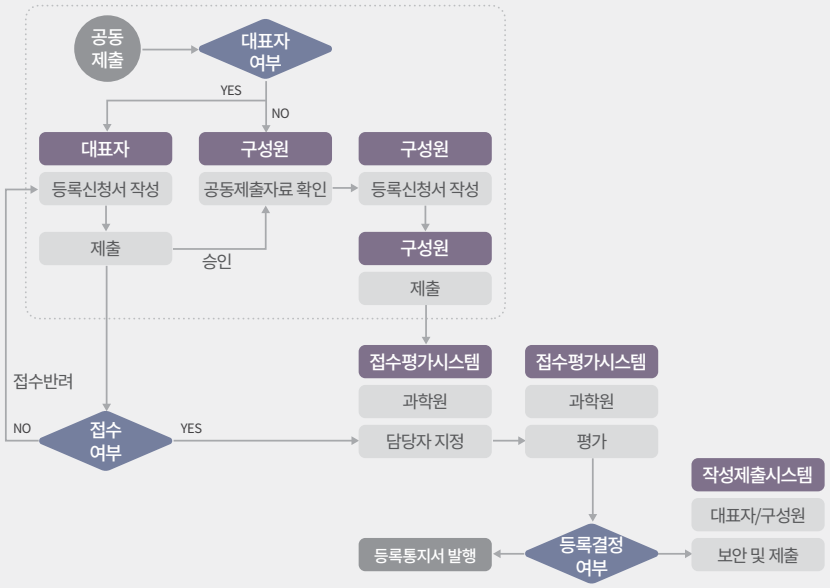


그림 11\_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IT 시스템)의 운영 흐름도

## 3.2. 협의체 구성원의 역할 및 업무가이드

### 협의체 운영을 위한 구성원의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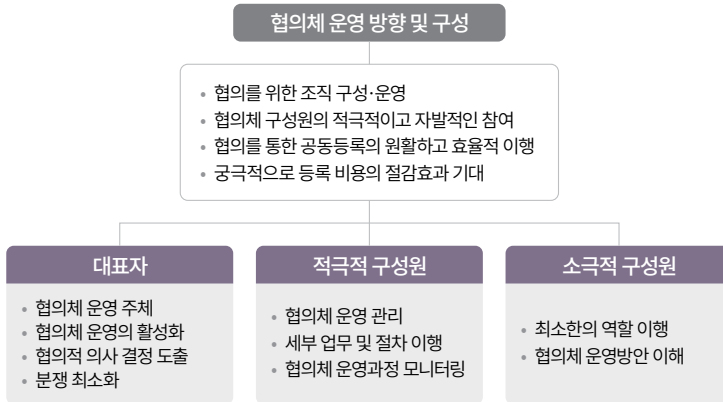


그림 12\_ 협의체 운영 방향 및 구성

- > 협의체는 공급적으로 공동등록 이행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개별적 이익 창출을 위한 이해집단으로 협의체 운영에 있어 분쟁을 최소화 하고 다수의 합의를 도출해야 함
- > 협의체의 기본 방향에 맞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해당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은 각자의 역할에 맞는 업무를 이행하여야 함
- > 협의체 각 구성원은 공동등록 이행에 있어 역할을 파악하고 단계별로 필요한 업무에 이해가 필요 함
- >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대표자+적극적·소극적 구성원의 세부 업무를 참고하여 협의체 운영 규칙 및 절차를 표준화 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 함

### 3.2.1 협의체 대표자 단계별 업무 활용

- > 협의체 대표자는 협의체 운영 업무를 수행하기 이전에 공동등록 이행 일정에 맞춰 업무를 계획하고 각 업무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내용을 작성하여 등록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
- > 이에, 협의체 대표자가 이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통상적인 시간적 순서에 따라 기술하였으며, 업무 세부 항목은 각 협의체의 여건과 진행사항에 따라 순서 또는 가감이 조정될 수 있음
- > 협의체 대표자가 계획한 단계별 업무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명확하고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내·외부 전문가 또는 협의체 구성원에 의해 사전에 확인할 것을 권고 함
- > 각 단계별 업무 수행이 완료되면 이행의 충실성, 업무 달성 여부 정도를 평가하여 향후 업무 수행에 참고 할 것
- > 대표자는 주어진 업무를 난이도, 시급성, 중요도 등의 여러 기준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업무를 배치하는 것이 중요함
- > 대표자는 주기적으로 주요 업무를 리스트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한 후 이에 맞게 실행하여야 함
- > 대표자의 단계별 업무는 해당 협의체 특성에 맞게 보완하여야 하며 업무 이행에 대한 강제성은 없음

### 3.2.2 협의체 구성원 단계별 업무 활용

- > 대표자 외 협의체 구성원의 단계별 업무는 협약당사자인 “적극적구성원”과 공동제출 등록의무자인 “소극적 구성원”으로 구분하여 작성
- > 협의체 구성원의 업무 절차는 대표자의 업무 절차를 기반으로 협의체 업무의 진행사항에 따라 순서 또는 가감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협의체 대표자와의 업무 공유가 필수적임
- > 협의체 구성원 업무는 단독으로 진행될 수 없으므로 대표자의 순차적 업무 진행 정도를 파악하여 융통성 있게 활용 할 것을 권고 함

표 8\_

협약체 구성원의 세부 업무 절차

	업무 절차	업무 대상			페이지
		대표자	적극적 구성원	소극적 구성원	
01	협약체 가입	●	●	●	P.60
02	조정자 선정	●			P.62
03	대표자 선정	●	●	●	P.64
04	비밀유지 계약서 체결	●	●	●	P.67
05	협약체 회의 개시	●	●	●	P.72
06	협약당사자 선정	●	●		P.74
07	기초 정보 조사	●	●		P.76
08	공동제출 범위 결정	●	●		P.79
09	협약체 협약서(안) 제공 및 협약 체결	●	●		P.81
10	데이터갭(Data gap) 분석	●			P.84
11	자료 확보 방안 안내 및 결정	●	●		P.90
12	자료 구매 및 생산	●			P.93
13	용도 및 노출정보 조사	●	●		P.95
14	위해성평가자료 작성을 위한 노출DB 조사	●			P.98
15	확보 자료 공유	●			P.101
16	유해성 분류 및 표시 작성 및 공유	●			P.103
17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작성	●			P.109
18	대표자 등록 서류 작성 및 제출	●			P.111
19	국립환경과학원 안전성 검토	●			P.115
20	보완 대응	●			P.116
21	대표자 등록통지서 발행	●			P.117
22	협약체 구성원 개별 서류 제출	●	●	●	P.119
23	등록 관련 서류의 전달	●	●		P.122
24	사후관리	●	●	●	P.124

## 단계 1 | 협의체 가입

업무 대상 |  대표자  적극적 구성원  소극적 구성원

대상 ▶

대표자

적극적 구성원

소극적 구성원

- > 법 제15조에서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자료는 협의체 대표자를 통하여 공동으로 제출하도록 규정
- > 동일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들은 공동등록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합의에 의해 대표자를 선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표 9\_

단계1. 협의체 가입

구분	내용
공동/개별 제출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체 구성: 물질에 따라 사전신고 후 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li> <li>•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도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함</li> <li>• 환경부가 지정한 방법에 의해 물질별 협의체에 가입</li> </ul> </li> <li>■ 자료 공동제출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제출 의무자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제출하는 것이 기본원칙</li> <li>• 기존화학물질을 등록신청하려는 제조·수입자는 각 해당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협의체 가입 및 운영을 통해 공동/개별 등록을 결정하여야 함</li> </ul> </li> <li>■ 개별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의 영업비밀이 공개되어 상업적 손실 예상되는 경우</li> <li>•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개별 제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li> <li>• 동일한 시험항목에 대하여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가 다른 경우</li> <li>• 동일한 시험항목의 시험자료 선택에 대해, 대표자와 의견이 다른 경우</li> <li>• 자신이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고, 해당 자료를 등록하려는 다른 제조·수입자가 무상으로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li> </ul> </li> </ul>

구분	내용
협의체 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체 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 제출 이행을 위해 물질별로 등록의무가 있는 기업이 공동으로 등록신청자료를 작성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협의체에 참여하는 절차</li> <li>• 화학물질정보시스템&gt;공동등록협의체시스템을 통해 가입</li> </ul> </li> <li>■ 물질에 따른 별도의 협의체 설립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한 CASNo를 갖는 기존화학물질이라도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다르고 유해성이 다르면 별도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권고 함</li> </ul> </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해당 화학물질을 소비자 용도로 제조·수입하려는 자</li> <li>② 고분자 화합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평균분자량의 범위, 수용해도 등이 달라 동일물질로 간주하기 어렵고 제출하여야 하는 시험자료 범위 또는 유해성 분류·표시가 다른 경우</li> </ul> </li> <li>③ 나노 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평법 제2조제6호에 따라 (가)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나노미터에서 100나노미터인 입자의 개수가 50퍼센트 이상 분포하는 물질, (나)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나노미터 이하인 Fullerene, Graphene flake 또는 단일벽 탄소나노튜브</li> </ul> </li> </ol>

## 단계 2 | 조정자 선정

업무 대상 |  대표자  적극적 구성원  소극적 구성원

### 조정자 선정

- > 공동등록협업체 시스템을 통하여 협업체 가입 시 최초 대표 희망을 하는 사업자가 조정자 역할을 함
- > 투표를 통해 대표자가 선정되면 조정자 역할은 종료

표 10\_ 단계2. 조정자 선정

구분	내용
조정자 선정 및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정자 선정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입하고자 하는 협업체 및 대표자 희망여부 선택</li> <li>• 가입하고자 하는 협업체의 대표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경우 가입 시점에 대표자 희망 여부를 선택해서 가입</li> <li>• 협업체 가입 시 대표자 희망 여부를 체크하고 최초로 가입한 사업자가 조정자 역할을 맡게 됨</li> </ul> </li> <li>■ 조정자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업체 대표자가 선정되기 전까지 회의 주관 및 협업체의 운영을 주도하고 시스템 내 구축된 투표기능을 활용하여 대표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수행</li> <li>• 조정자는 조정자로서 활동하는 기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협업체 구성원 회의에서 협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음</li> <li>• 대표자 선정이 완료되면 조정자 역할은 자동으로 종료하게 됨</li> </ul> </li> </ul>
조정자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정자 세부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업체 구성원 정보 취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업체 참여 업체 정보 요청(연락처, 담당자, 이메일)</li> <li>- 해당 화학물질 협업체의 업체수/톤수 범위 등 확인</li> <li>- 추가 대표 희망자 확인</li> </ul> </li> <li>• 협업체 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정자 업체 정보(연락처, 담당자, 이메일)</li> <li>- 대표자 선정관련 안내 공지 및 투표 일정 개별 안내</li> </ul> </li> </ul> </li> </ul>



대상 ▶	대표자	적극적 구성원	소극적 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t; 대표자 선정 이전에 최초 대표 희망자는 대표자가 선정되기 전까지 임시로 대표자 업무를 수행 할 수 있음</li> <li>&gt; 조정자(대표자)는 협의체 운영을 위한 사전 회의를 개최하거나 협의체 구성원에게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하여 안내 할 수 있음</li> </ul>		

표 11\_ 단계2. (대표자) 조정자 선정

구분	내용
대표 희망자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가 대표 희망자 조사</li> <li>■ 대표 희망자는 기업 정보(규모, 연혁, 업무 등), 협의체 향후 일정, 등록 전략 등을 협의체 구성원에게 안내하여 업무 역량 평가를 받음</li> </ul>
대표자 투표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등록협의체시스템을 통한 투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표가 개시되면 구성원에게 자동으로 투표개시 안내가 발송됨</li> <li>•조정자는 기간 내 협의체 구성원 모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독려하도록 권고함</li> </ul> </li> </ul>

대상 ▶	대표자	적극적 구성원	소극적 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t; 협의체 구성원은 대표 희망자로서 조정자의 공지 및 안내 등을 확인 하고 향후 협의체 활동을 고려 할 수 있음</li> <li>&gt; 현 단계에서는 협의체 구성원의 구분은 없음</li> </ul>	

표 12\_ 단계2. (구성원) 조정자 선정

구분	내용
대표 희망자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등록협의체시스템 내의 대표 희망자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스템 내에서 협의체가 구성되면 대표 희망자 확인 가능</li> <li>•협의체 대표 희망자의 등록톤수, 업체 정보 등을 확인</li> <li>•조정자 공지 및 안내 등 확인</li> </ul> </li> </ul>

## 단계 3 | 대표자 선정

업무 대상 |  대표자  적극적 구성원  소극적 구성원

### 대표자 투표 및 선정

- > 협의회 구성원들의 투표 참여를 통하여 대표자가 선출 됨
- > 투표는 공동등록협의회 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상으로 진행되며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구성원은 투표에 참여 가능

표 13\_  
단계3. 대표자 선정

구분	내용
대표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투표 결과 과반수 이상 찬성(단독) 또는 최다 득표자(복수)가 대표자로 선출 됨<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과반수가 넘지 않는 찬반투표나 동수의 투표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시스템 상 재투표 가능함</li></ul></li><li>■ 대표자 선정되면 자동으로 공동등록협의회 시스템에 반영 됨</li></ul>

- > 투표를 통한 대표자 선정이 완료된 이후 협의체 구성원에게 투표 결과를 안내하고, 대표자가 선정되었음을 공지함
- > 대표자 선정과 관련한 공식화 절차 이후 대표자는 협의체 운영을 위한 업무 및 활동을 공식적으로 진행 할 수 있음

표 14\_

단계3.(대표자) 대표자 선정

구분	내용														
대표자 선정 공식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자 선정 알림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background-color: #4a4a6a; color: white; text-align: center; padding: 5px;">조정자</td> <td style="background-color: #4a4a6a; color: white; text-align: center; padding: 5px;">조정자</td> <td style="background-color: #4a4a6a; color: white; text-align: center; padding: 5px;">구성원</td> <td style="background-color: #4a4a6a; color: white; text-align: center; padding: 5px;">대표자</td> <td style="background-color: #4a4a6a; color: white; text-align: center; padding: 5px;">대표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대표자 선정 결과 알림</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대표자 승계, 시스템 반영</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대표자 선정동의서 작성</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대표자 소개 및 향후 일정 안내</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대표자 협의체 등록 업무 수행</td> </tr> </table> </div> </li> <li>■ 대표자 선정 결과는 협의체 구성원에게 각각 공지 할 것</li> <li>■ 대표자 선정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필요시 협의체 구성원들이 대표자 선정에 동의함을 명시하는 내용을 문서화하는 것이 필요함</li> <li>•대표자 및 투표기간 내 투표권을 가진 모든 협의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서명 요청</li> </ul> </li> </ul>	조정자	조정자	구성원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선정 결과 알림	↔	대표자 승계, 시스템 반영	↔	대표자 선정동의서 작성	↔	대표자 소개 및 향후 일정 안내	↔	대표자 협의체 등록 업무 수행
조정자	조정자	구성원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선정 결과 알림	↔	대표자 승계, 시스템 반영	↔	대표자 선정동의서 작성	↔	대표자 소개 및 향후 일정 안내	↔	대표자 협의체 등록 업무 수행							
대표자 업무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자 선정이 완료되면 협의체 운영을 위한 업무 및 활동을 공식적으로 진행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표자는 협의체 구성원에게 공동등록을 위한 운영과 관련한 개별 정보를 요청</li> <li>•대표자는 공식적인 업무 이행에 앞서 협의체 구성원에게 대표자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담당자 연락처, 운영 일정, 구성원의 톤수 범위 등</li> </ul> </li> </ul> </li> </ul>														

- > 투표권을 가진 협의체 구성원은 대표자 선정을 위한 투표에 참여 하고 대표자 선정에 동의
- > 현 단계에서는 협의체 구성원의 구분은 없음

표 15\_

단계3.(구성원) 대표자 선정

구분	내용																		
대표자 선정 투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자 투표 절차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background-color: #4b4b8b; color: white; padding: 5px;">조정자</td> <td style="padding: 5px;"></td> <td style="background-color: #4b4b8b; color: white; padding: 5px;">지원단</td> <td style="padding: 5px;"></td> <td style="background-color: #4b4b8b; color: white; padding: 5px;">구성원</td> <td style="padding: 5px;"></td> <td style="background-color: #4b4b8b; color: white; padding: 5px;">조정자</td> <td style="padding: 5px;"></td> <td style="background-color: #4b4b8b; color: white; padding: 5px;">구성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대표자 선정 투표 개시</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대표자 선정 투표 개시 알림</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대표 희망자 정보 확인 및 투표</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대표자 선정 결과 알림</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대표자 확인 및 선정 동의</td> </tr> </table> </div> </li> <li>■ 대표자 투표가 개시되면 환경부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에서 자동으로 투표 개시 및 참여 안내 메일 발송</li> <li>■ 협의체 구성원은 조정자가 공지한 사항에 대해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체 공지” 또는 유선(개별 이메일)등을 활용할 것</li> <li>■ 공동등록협의체시스템에서 희망 대표자를 확인하고 대표자 투표에 참여</li> </ul>	조정자		지원단		구성원		조정자		구성원	대표자 선정 투표 개시	⇨	대표자 선정 투표 개시 알림	⇨	대표 희망자 정보 확인 및 투표	⇨	대표자 선정 결과 알림	⇨	대표자 확인 및 선정 동의
조정자		지원단		구성원		조정자		구성원											
대표자 선정 투표 개시	⇨	대표자 선정 투표 개시 알림	⇨	대표 희망자 정보 확인 및 투표	⇨	대표자 선정 결과 알림	⇨	대표자 확인 및 선정 동의											
대표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자 선정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요시 협의체 구성원들에게 대표자 선정동의서를 요청할 수 있음</li> <li>• 협의체 구성원은 대표자 선정에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동의서를 작성하여 대표자에게 제출</li> </ul> </li> <li>■ 과반수가 넘지 않는 찬반투표나 동수의 투표결과가 나올 경우 재투표를 해야 하므로, 협의체 구성원은 투표에 적극 참여 할 것을 권고</li> </ul>																		

## 단계 4 | 비밀유지계약 체결

업무 대상 |  대표자  적극적 구성원  소극적 구성원

### 협업체 구성원 간 비밀유지계약 체결

- > 공동등록에 필요한 정보 교환을 위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다른 회사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협업체 구성원 간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필요

표 16\_ 단계4.비밀유지계약 체결

구분	내용
비밀유지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밀유지계약서(Non-Disclosure Agreement, NDA)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 비밀정보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하는 정보 중 어떤 것을 비밀정보로 할 것인지 규정하는 내용</li> </ul> </li> <li>ii) 비밀정보의 사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한 정보를 상대방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지 규정하는 내용</li> </ul> </li> <li>iii) 비밀유지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를 제공받은 회사가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과 함께 어떠한 방법으로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내용 명시</li> </ul> </li> <li>iv) 비밀정보 관련 권리의 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한 비밀정보에 대한 권리, 그에 파생되는 권리에 대한 소유권이 정보제공자에게 있음을 명시</li> </ul> </li> <li>v)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책임에 대해 명시</li> </ul> </li> <li>vi) 계약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조항이 필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비밀유지 의무는 영속적으로 계속 됨</li> <li>②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비밀유지 의무는 일정기간 계속 됨 등</li> </ol> </li> </ul> </li> </ul> </li> </ul>
비밀유지계약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등록 이행을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협업체 구성원 간 자료의 공유가 요구됨</li> <li>■ 특히,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영업비밀의 경우 엄격한 관리가 필요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업비밀의 요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비밀로 관리되고 있을 것(비밀관리성)</li> <li>②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일 것(유용성)</li> <li>③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을 것(비공지성)</li> </ol> </li> </ul> </li> </ul>

- > 대표자는 구성원 간 공유한 개별 정보보호를 위하여 비밀유지계약을 작성하고 협의체 구성원간의 계약 체결을 통한 상호 신뢰를 확보해야 함
- > 대표자는 협의체 내 구성원 간의 투명한 정보공유와 운영을 위하여 본격적인 협의체 운영 전에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 함

표 17\_

단계4. (대표자) 비밀유지계약 체결

구분	내용
비밀유지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자는 상대방에게 정보를 요구하기 이전(상대방이 정보를 제공하기 이전)에 비밀유지계약 체결</li> <li>■ 대표자는 정보를 공유(제공)한 모든 당사자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 당사자는 비밀정보를 유출하거나 누설할 수 없음을 확실히 명시해야 함</li> <li>■ 비밀정보가 공개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선관주의 의무 부과 혹은 제3자(계약 당사자 외)를 통하여 유출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면책조항을 검토</li> <li>■ 대표자는 비밀 정보가 공개되어 협의체 운영에 있어 금전적 손해를 입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이에 따른 책임 조항에 대하여 협의체 구성원들에게 사전 고지</li> <li>■ 법령 이행에 있어 부득이하게 공개해야 할 정보 등을 확인하여 예외조항을 검토해야 하며 대표자는 이러한 내용을 협의체 구성원과 공유해야 함</li> </ul>

- > 협의체 구성원은 대표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제공한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계약서를 작성 할 것을 권고 함
- > 협의체 구성원은 비밀유지계약서의 세부항목을 확인하고 회사의 영업비밀이 경쟁업체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 할 것
- > 현 단계에서는 협의체 구성원의 구분은 없음

표 18\_

단계4.(구성원)비밀유지계약 체결

구분	내용																								
비밀유지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대방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이전에 비밀유지계약을 체결 할 것</li> <li>■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임을 표시하여 제공하고 상대방에서 관련하여 확인을 받는 것이 필요함</li> <li>■ 기업의 핵심정보는 비밀유지계약을 하더라도 공개하지 않음</li> <li>■ 비밀정보가 공개 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조항을 명확하게 할 것</li> <li>■ 법령 이행 등에 있어 부득이하게 공개할 경우에 대한 예외조항을 확인 할 것</li> </ul>																								
비밀유지계약서 검토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자가 제시한 비밀유지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협의체 구성원은 계약서 내용을 검토하여 추후 사업 운영에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4b4b8b; color: white;">주요사항</th> <th style="background-color: #4b4b8b; color: white;">주요내용</th> </tr> </thead> <tbody> <tr> <td>당사자 확인</td> <td>비밀공개자와 비밀공개대상자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가?</td> </tr> <tr> <td>계약의 목적</td> <td>양당사자간의 계약체결의 의도와 기대를 확인할 수 있는가?</td> </tr> <tr> <td>용어의 정의</td> <td>모든 용어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가?</td> </tr> <tr> <td>정보수령자의 의무</td> <td>비밀을 제공받는 자의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가?</td> </tr> <tr> <td>비밀정보의 범위</td> <td>비밀정보의 대상 및 예외사유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가?</td> </tr> <tr> <td>비밀정보의 사용범위</td> <td>비밀정보의 사용범위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가?</td> </tr> <tr> <td>비밀정보의 보호</td> <td>비밀정보 개시에 대한 대가, 보호조치 등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는가?</td> </tr> <tr> <td>면책조항</td> <td>비밀정보의 사용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면책조항이 있는가?</td> </tr> <tr> <td>지적재산권</td> <td>지적재산권 및 실사용권에 대한 제한이 명시되어 있는가?</td> </tr> <tr> <td>계약기간</td> <td>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가?</td> </tr> <tr> <td>분쟁</td> <td>분쟁해결수단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는가?</td> </tr> </tbody> </table>	주요사항	주요내용	당사자 확인	비밀공개자와 비밀공개대상자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가?	계약의 목적	양당사자간의 계약체결의 의도와 기대를 확인할 수 있는가?	용어의 정의	모든 용어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가?	정보수령자의 의무	비밀을 제공받는 자의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가?	비밀정보의 범위	비밀정보의 대상 및 예외사유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가?	비밀정보의 사용범위	비밀정보의 사용범위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가?	비밀정보의 보호	비밀정보 개시에 대한 대가, 보호조치 등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는가?	면책조항	비밀정보의 사용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면책조항이 있는가?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및 실사용권에 대한 제한이 명시되어 있는가?	계약기간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가?	분쟁	분쟁해결수단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주요사항	주요내용																								
당사자 확인	비밀공개자와 비밀공개대상자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가?																								
계약의 목적	양당사자간의 계약체결의 의도와 기대를 확인할 수 있는가?																								
용어의 정의	모든 용어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가?																								
정보수령자의 의무	비밀을 제공받는 자의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가?																								
비밀정보의 범위	비밀정보의 대상 및 예외사유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가?																								
비밀정보의 사용범위	비밀정보의 사용범위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가?																								
비밀정보의 보호	비밀정보 개시에 대한 대가, 보호조치 등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는가?																								
면책조항	비밀정보의 사용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면책조항이 있는가?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및 실사용권에 대한 제한이 명시되어 있는가?																								
계약기간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가?																								
분쟁	분쟁해결수단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비밀유지계약서(예시)

- 다음 비밀유지계약서는 모든 정보제공자와 정보취급자 상호 간에 사용될 수 있음

#### 비밀유지의무 이행계약서(이하 “본 계약”)

1. 본 계약은 정보제공자와 정보취급자 간의 계약이며, 정보취급자가 수행하는 한국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법”)에 따른 “\_\_\_\_\_” (이하 “본 물질”)의 [서비스명 또는 업무명](이하 “서비스”)을 위해서 정보취급자에게 제공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행조건을 설정한다.
2. “비밀정보”라 함은, 서비스의 수행을 위해 정보제공자가 정보취급자에게 제공하는 본 물질에 관한 일체의 정보로서, 인쇄물이나 컴퓨터파일 등의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구두 또는 열람 허용 등 무형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제공되는 경우 및 정보제공자가 직접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정보취급자가 정보제공자로부터 지득하게 된 일체의 정보를 의미하며, 본 계약의 체결 사실, 본 계약 체결의 배경이 된 서비스 이행에 관한 사항 및 본 계약에 따라 비밀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포함한다.
3. 정보취급자는 아래에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본 계약에서 언급한 서비스를 수행하는 동안 정보제공자로부터 제공받아 취급하는 모든 정보에 대해서 제공받은 날로부터 10년 동안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정보취급자는 정보제공자로부터 비밀정보의 비밀유지의무 이행 정도의 확인을 요구 받을 경우 제공자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만일 정보제공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본 약정에 따른 비밀정보가 담긴 모든 자료를 정보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거나 이를 파기하고 그 파기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a. 정보취급자가 2. 내지 3.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정보취급자는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은 물론 민·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정보취급자는 정보의 공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b. 정보취급자가 비밀정보를 제공받기 전에 이미 알고 있던 정보로서, 정보제공자와 무관하게 획득되었다는 점이 정보제공자로부터의 정보 취득 시점보다 먼저 작성된 서면기록에 의하여 증명되고, 해당 정보에 관하여 제3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정보



- c. 정보취급자의 과실 또는 태만에 의하지 않고 공공에 공개된 정보
- d. 정보취급자가, 정보제공자에 대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제3자로부터 당해 제3자에 대하여도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형태로 취득한 정보
- e. 서비스 수행에 따른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해당 당국에 제출되어 해당 당국이 취급하는 정보
- f. 법적으로 비밀유지 유효기간이 지나 당국이 공개한 정보

본 계약서는 아래에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고 2부를 작성하여 “정보제공자”와 “정보취급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정보제공자

△△△△

주소:

대표이사:

정보취급자

○○○○

주소:

대표이사:

## 단계 5 | 협의체 회의 개시

업무 대상 |  대표자  적극적 구성원  소극적 구성원

대상 ▶

대표자

적극적 구성원

소극적 구성원

- > 대표자는 협의체 운영 방안, 향후 일정 및 공동등록 관련 자료 확보 등과 관련하여 협의체 운영 회의를 주관

표 19\_

단계5.(대표자) 협의체 회의 개시

구분	내용
회의 시 논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자의 협의체 운영 계획(방법론 등)</li> <li>■ 대표자가 외부 전문기관을 선임하여 기술적 분야와 협의체 운영을 의뢰할 계획이 있다면, 해당 정보(외부 전문기관 정보, 비용 정보 등) 공유</li> <li>■ 각 구성원의 활동 정도(적극적, 비적극적 활동) 의사 표명 방법론</li> <li>■ 각 구성원의 협의체 내에서의 활동 정도 표명하도록 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도적으로 활발한 활동(적극적 구성원)</li> <li>• 비활동(소극적 구성원) 등 협의체별로 구분하여 운영</li> </ul> </li> <li>■ 협의체 운영비용에 관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 구성원의 톤수범위별 운영비용 분담/또는 동일 비용 일괄 분담 여부 등</li> </ul> </li> <li>■ 데이터 갭 분석, 시험자료 수집 및 제출 자료 선정 계획</li> <li>■ 협의체 구성원에서 수집할 정보(구성원별 물질의 용도 분류체계 및 구체적 용도, 제조·수입량 등)</li> </ul>

- > 협의회 구성원은 협의회 운영 및 등록 일정 등의 확인을 위하여 협의회 회의에 참여하고 각자의 의사를 반영
- > 현 단계에서는 협의회 구성원의 구분은 없음

표 20\_

단계5. (구성원) 협의회 회의 개시

구분	내용
회의 시 논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자의 협의회 운영 계획 확인</li> <li>▪ 대표자가 외부 전문기관을 선임하여 기술적 분야와 협의회 운영을 의뢰할 계획이 있다면, 해당 정보(외부 전문기관 정보, 비용 정보 등) 확인</li> <li>▪ 협의회 내에서의 참여정도에 따른 역할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도적으로 활발한 활동(적극적 구성원)</li> <li>• 비활동(소극적 구성원)</li> <li>• 협의회 참여정도에 따른 역할 확인(추후 참여정도 결정)</li> </ul> </li> <li>▪ 협의회 구성원 등록 톨수범위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톨수 범위에 따른 등록 일정 확인 및 공유</li> </ul> </li> <li>▪ 협의회 구성원의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성원별 물질의 용도 분류체계 및 구체적 용도, 제조·수입량 등</li> </ul> </li> </ul>

## 단계 6 | 협약당사자 선정

업무 대상 |  대표자  적극적 구성원  소극적 구성원

### 협의회 구성원의 협의회 내 역할 확인

- > 협의회 구성원은 협의회 참여형태에 따라 협약당사자(대표자+적극적 구성원) 또는 협약당사자가 아닌 공동제출 의무자(소극적 구성원)로 구분할 수 있음

대상 ▶

대표자

적극적 구성원

소극적 구성원

- > 대표자는 협의회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협약당사자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필요 함
- > 이를 위해, 대표자는 협의회 구성원에게 협의회 참여 형태를 조사를 위한 정보를 요청하여 협약당사자를 선정

표 21\_

단계6. (대표자) 협약당사자 선정

구분	내용
협의회 구성원 참여 형태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회 구성원의 참여 형태 조사를 위한 정보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급형태 및 등록 예정 수량</li> <li>• 협약당사자(적극적 구성원), 협약당사자 아닌 공동제출 의무자(소극적 구성원) 여부</li> <li>• 참여기업의 담당자 정보</li> <li>• 활용 가능한 자료 보유 여부 확인</li> </ul> </li> <li>■ 협의회 구성원의 참여 형태 조사는 협약당사자를 선정하고 협약 체결을 위한 필수 항목임</li> </ul>
협약 당사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약당사자가 확정되면, 본격적인 협의회 향후 일정 및 등록 전략 수립</li> <li>■ 협약당사자 대상 Kick off 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회 운영 일정 및 운영 방안, 등록 접근 방법 등에 대한 논의</li> </ul> </li> <li>■ (선택)협의회 구성원 참여 협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약 당사자로서 해당 협의회 내의 참여 비율, 주요 업무(역할), 참여기간이 기재된 협약서 작성</li> </ul> </li> </ul>

- > 협의체 구성원은 협의체 내에서의 활동 정도에 따른 참여 형태를 결정하고 대표자에게 알려야 함
- > 협의체 내의 역할이 확정되면 추후 변경이 불가 하므로, 협의체 내에서 각 역할에 따른 의무 사항 등을 확인 하여 의사를 표명 할 것

표 22\_

단계6. (구성원) 협약당사자 선정

구분	적극적 구성원	소극적 구성원
협의체 구성원 의견 및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체 구성원의 참여 형태 조사를 위한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급형태 및 등록 예정 수량</li> <li>• 협약당사자(적극적 구성원), 협약당사자 아닌 공동제출 의무자(소극적 구성원) 여부</li> <li>• 참여기업의 담당자 정보</li> <li>• 활용 가능한 자료 보유 여부 확인</li> </ul> </li> <li>■ 협의체 구성원의 참여 형태 조사는 협약 당사자를 선정하고 협약 체결을 위한 필수 항목임</li> <li>■ 협의체 구성원은 개별 취급 형태, 취급량, 자료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협의체 활동 여부를 결정하고 대표자에게 의사를 표명</li> </ul>	
협약 당사자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약 당사자가 확정되면, 대표자와 함께 협의체 향후 일정 및 등록 전략 수립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체 일정을 확인</li> <li>■ 개별 등록톤수에 따른 등록일정 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택)협의체 구성원 참여 협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약 당사자로서 해당 협의체 내의 참여 비율, 주요 업무(역할), 참여기간이 기재된 협약서 작성·서명 후 제출</li> </ul> </li> </ul>	

## 단계 7 | 기초 정보 조사

업무 대상 |  대표자  적극적 구성원  소극적 구성원

### 협약당사자의 기초정보 조사

- > 협약당사자는 원활한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공동등록 이행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쌍방 간 제공

대상 ▶

대표자

적극적 구성원

소극적 구성원

- > 대표자는 공동등록 이행을 위한 협약당사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및 자료를 확인하여야 함

표 23\_

단계7.(대표자) 기초정보 조사

구분	내용
협약당사자 기초 정보 조사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학물질의 동질성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질의 순도</li> <li>• 물질에 포함된 주요 불순물 및 그 함량</li> <li>• 염류, 수화물, 이성질체의 확인 등</li> </ul> </li> <li>■ 화학물질의 용도 및 노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사용의 전 과정에서 해당 화학물질의 사용용도와 공정</li> <li>• 취급, 운송 방법</li> <li>• 공정에서 예상되는 환경·인체에 대한 노출 가능성</li> </ul> </li> <li>■ 기업 내 보유/소유 자료의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약 당사자가 직접 보유/소유(생산)한 시험 또는 문헌 자료 활용 가능 여부</li> <li>• 해당 자료의 구매처/시험기관/신뢰도 정보 확인</li> </ul> </li> <li>■ 분류 및 표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약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정보</li> <li>• 해당 분류·표시 정보의 출처 또는 증빙 자료</li> </ul> </li> </ul>







## 단계 8 | 공동 제출 범위 결정

업무 대상 |  대표자  적극적 구성원  소극적 구성원

### 공동 제출 범위

- > 협의체 구성원은 취급하는 물질의 정보를 사전에 교환 검토하여 공동제출 범위를 결정하여야 함

표 25\_ 단계8. 공동 제출 범위 결정

구분	내용																																				
공동제출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li> <li>•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li> <li>•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li> <li>•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시험계획서</li> </ul> </li> <li>■ 합의 시 공동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위해성</li> <li>• 법 제1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관련 자료</li> </ul> </li> <li>■ 공동제출 가능한 자료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제출정보</th> <th>세부사항</th> <th>공동제출</th> <th>합의한 경우, 공동제출 가능</th> </tr> </thead> <tbody> <tr> <td>제조·수입자 정보</td> <td>명칭, 소재지, 대표자 등</td> <td>개별</td> <td></td> </tr> <tr> <td>화학물질의 정보</td> <td>명칭, 식별정보</td> <td>개별</td> <td></td> </tr> <tr> <td>화학물질의 용도</td> <td>용도분류체계</td> <td>개별</td> <td></td> </tr> <tr> <td>분류 및 표시</td> <td>GHS 분류 및 표시</td> <td>●</td> <td></td> </tr> <tr> <td>물리적·화학적 특성</td> <td>톤수 범위별 차등</td> <td>●</td> <td></td> </tr> <tr> <td>유해성 자료</td> <td>시험자료 (최대 47개 항목)</td> <td>●</td> <td></td> </tr> <tr> <td>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지침</td> <td>개인보호구, 응급조치사항 등</td> <td></td> <td>●</td> </tr> <tr> <td>위해성 자료</td> <td>노출 시나리오</td> <td></td> <td>●*</td> </tr> </tbody> </table>	제출정보	세부사항	공동제출	합의한 경우, 공동제출 가능	제조·수입자 정보	명칭, 소재지, 대표자 등	개별		화학물질의 정보	명칭, 식별정보	개별		화학물질의 용도	용도분류체계	개별		분류 및 표시	GHS 분류 및 표시	●		물리적·화학적 특성	톤수 범위별 차등	●		유해성 자료	시험자료 (최대 47개 항목)	●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지침	개인보호구, 응급조치사항 등		●	위해성 자료	노출 시나리오		●*
	제출정보	세부사항	공동제출	합의한 경우, 공동제출 가능																																	
	제조·수입자 정보	명칭, 소재지, 대표자 등	개별																																		
	화학물질의 정보	명칭, 식별정보	개별																																		
	화학물질의 용도	용도분류체계	개별																																		
	분류 및 표시	GHS 분류 및 표시	●																																		
	물리적·화학적 특성	톤수 범위별 차등	●																																		
	유해성 자료	시험자료 (최대 47개 항목)	●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지침	개인보호구, 응급조치사항 등		●																																	
위해성 자료	노출 시나리오		●*																																		
<p>*위해성평가자료(CSR)이 공동등록에 포함되는 경우, 각 기업체는 해당자료에 포함될 물질의 사용처에 대해 파악하고 각 사용처에서 사용된 톤수를 표기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15조에 해당하여 개별 제출 확인을 받은 자료</li> <li>• 공동으로 제출하는 자료 이외에 등록에 필요한 자료</li> </ul> </li> </ul>																																					

대상 ▶

대표자

적극적 구성원

소극적 구성원

- > 대표자는 단계7의 기초정보 조사를 통하여 취합한 정보를 검토하여 공동으로 제출하는 범위를 결정하고, 협약 당사자와 해당 내용을 공유 함
- > 대표자는 협약 당사자와의 의견을 교환하여 공동제출 범위를 결정

표 26\_

단계8.(대표자) 공동 제출 범위 결정

구분	내용
공동 제출 범위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협약당사자에게 공동 제출 범위를 확인</li> <li>▪ 공동 제출 범위가 확인되면 협약당사자간 내용을 확인하는 '공동 제출 범위 협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음</li> </ul>

대상 ▶

대표자

적극적 구성원

소극적 구성원

- > 적극적 구성원은 등록하고자 하는 물질의 정보를 교환·검토 하여 대표자와 논의하여 공동제출 범위를 결정
- > 소극적 구성원들은 결정된 공동제출 항목을 확인하고, 공동·개별 제출 여부를 결정하여 협의체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표 27\_

단계8.(구성원) 공동 제출 범위 결정

구분	적극적 구성원	소극적 구성원
공동 제출 여부 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자와의 논의를 통해 공동제출 범위 확인</li> <li>▪ '공동 제출 범위 협약서' 작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 제출 범위가 결정되면 해당 내용을 확인·동의</li> <li>▪ '공동 제출 범위 협약서' 작성</li> </ul>

## 단계 9 | 협의체 협약서(안) 제공 및 협약 체결

업무 대상 |  대표자  적극적 구성원  소극적 구성원

### 협의체 협약서 작성

- > 협의체 운영에 협약 체결은 필수 항목
- > 공동제출 협약서는 협의체 운영 규칙, 정보 공개 및 자료 소유권 및 비용 분담 등에 관한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협약 당사자의 협력 의무에 관하여 명시함

표 28\_

단계9. 협의체 협약서(안) 내용

구분	내용												
협의체 협약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약서 일반적 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체의 업무 협약서는 협약 당사자 간의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계약</li> <li>• 협의체 구성원간의 이해나 기본적인 합의사항을 확인하는 문서</li> </ul> </li> <li>■ 협약서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의내용의 구체성 및 표현의 구속력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li> <li>• 협약서는 협의체 구성원 간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률적 강제성은 없음</li> <li>• 업무협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덕적인 비난이나 협약 파기, 협의체 퇴출 정도의 의사를 표현 할 수 있음</li> </ul> </li> <li>■ 협약서는 아래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약 당사자가 공동등록을 이행하는 궁극적 목적</li> <li>• 협약 당사자의 협력과 역할</li> <li>• 계약기간, 비밀유지 의무(비밀유지 계약은 별도로 체결 가능), 향후 업무 추진방향, 일정 계획 등</li> </ul> </li> <li>■ 공동등록 협약서 포함 내용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padding: 2px;">• 대표자 선정 및 대표자 직무</td> <td style="padding: 2px;">• 협약의 운영</td> </tr> <tr> <td style="padding: 2px;">• 공동등록 신청자료의 준비 및 제출</td> <td style="padding: 2px;">• 비용의 관리</td> </tr> <tr> <td style="padding: 2px;">• 공동등록 신청자료의 수집</td> <td style="padding: 2px;">• 비밀보호</td> </tr> <tr> <td style="padding: 2px;">• 공동등록 신청자료의 제출</td> <td style="padding: 2px;">• 협약기간 및 종료</td> </tr> <tr> <td style="padding: 2px;">• 자료 소유권/참조권</td> <td style="padding: 2px;">• 분쟁 해결 등</td> </tr> <tr> <td style="padding: 2px;">• 비용 분담 및 수익 배분</td> <td></td> </tr> </table> </li> </ul>	• 대표자 선정 및 대표자 직무	• 협약의 운영	• 공동등록 신청자료의 준비 및 제출	• 비용의 관리	• 공동등록 신청자료의 수집	• 비밀보호	• 공동등록 신청자료의 제출	• 협약기간 및 종료	• 자료 소유권/참조권	• 분쟁 해결 등	• 비용 분담 및 수익 배분	
• 대표자 선정 및 대표자 직무	• 협약의 운영												
• 공동등록 신청자료의 준비 및 제출	• 비용의 관리												
• 공동등록 신청자료의 수집	• 비밀보호												
• 공동등록 신청자료의 제출	• 협약기간 및 종료												
• 자료 소유권/참조권	• 분쟁 해결 등												
• 비용 분담 및 수익 배분													

- > 대표자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협의체 행정운영, 역할 분담 및 협력을 위하여 협의체의 업무 협약 체결을 하는 것이 필요 함
- > 협약서는 협약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쌍방의 의견을 조율하여 상호간의 협력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대표자는 협약서 작성 시 사전 공유 할 것
- > 협약서 내용이 확정되면 협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직인을 요청하고 최종 협약 체결을 완료
- > 협약 체결이 완료 되면 협약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 협약의 효력이 유지 됨

표 29\_

단계9.(대표자) 협의체 협약서(안) 제공 및 협약 체결

구분	내용
협약서(안)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약 당사자에게 협약서(안) 제공 후 의견 수렴</li> <li>▪ 최종 협약서 도출</li> </ul>
협약 체결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약 체결 절차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pre> graph LR     A[협약당사자 간 의사 교환] --&gt; B[전문가 자문]     B --&gt; C[내용 상호 검토]     C --&gt; D[협약 체결 시기 및 방식 협의]     D --&gt; E[협약 체결]                     </pre>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약당사자 간 의사 교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 협약에 대한 필요성을 알고, 협약 당사자로서 상대 기업에 대한 의사타진을 통하여 합의가 도출되어야 함</li> <li>- 협약을 체결하게 되는 목적, 그에 따른 기대효과 등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하고 업무 방법, 방향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선행 되어야 함</li> </ul> </li> <li>• 전문가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약서는 법률 자문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 함</li> </ul> </li> <li>• 내용 상호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약서의 내용이 정해지면 협약 당사자들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수정된 협약서를 최종 검토 함</li> </ul> </li> <li>• 협약 체결 시기 및 방식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종 협약서가 완성되면 협약 당사자는 협약 체결 시기 및 방식 등에 대한 내용을 협의를 통해 결정</li> </ul> </li> <li>• 협약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약서가 성립함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 당사자는 기명날인</li> <li>- 이외, 협의된 방식에 따라 협약 체결 가능</li> </ul> </li> </ul> </li> </ul>

- > 적극적 구성원은 대표자가 작성한 협약서(안)을 검토 및 보완하여 모든 구성원의 동의를 통한 최종 협약서를 도출
- > 모든 적극적 구성원은 협약서 최종안을 확인하고 협약 당사자로서 협약체결에 동의하면 서면으로 직인을 날인하여 최종 협약 체결을 완료
- > 협약 체결이 완료 되면 협약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 협약의 효력이 유지 됨
- > 소극적 구성원의 경우 협약 체결 대상 아님

표 30\_

단계9. (구성원) 협의체 협약서(안) 검토 및 협약 체결

구분	내용
협약서(안) 검토·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자가 작성한 협약서(안) 검토 및 보완</li> <li>■ 필요에 따라 외부 법률 자문을 통하여 협약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율</li> <li>■ 최종 협약서 도출</li> </ul>
협약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자가 제시한 협약서(안)대로 협약을 체결</li> <li>■ 적극적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모든 기업에 동일한 내용의 협약 체결</li> <li>■ 최종협약을 체결하면 협약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참여 기업에 동일한 의무와 권리가 부여 됨</li> </ul>

## 단계 10 | 데이터갭(Data gap) 분석

업무 대상 |  대표자  적극적 구성원  소극적 구성원

### 데이터갭(Data gap) 분석을 통한 등록신청자료 준비

- > 법 제1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 이에, 등록 의무자들은 물질의 형태 및 톤수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데이터갭 분석이 필요 함

대상 ▶

대표자

적극적 구성원

소극적 구성원

- > 대표자는 데이터갭 분석에 기반해 등록전략을 수립한 이후 급성독성, 발암성 등의 유해성 자료를 구매하거나 생산해야 함
- > 대표자는 등록하고자 하는 화학물질의 특성에 따라 제출 면제 항목을 선별하고 비시험 접근법(Read-across, QSAR 등)을 통하여 최종 시험 생산 항목을 결정해야 함
- > 등록에 필요한 유해성 자료 구매/생산에는 비용 발생이 발생하므로 초기 데이터 갭 분석 시 제출해야 하는 시험자료를 파악하고 이용 가능한 자료를 수집, 신규 시험 항목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 함

표 31\_

단계10. (대표자) 데이터갭(Data gap) 분석 절차

구분	내용
<p>물질·톤수별 제출 요구 시험자료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질의 형태별 제출 요구 시험자료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화학물질</li> <li>• 고분자</li> <li>• 분리중간체(기술적인 방법으로 유출 또는 노출이 차단되어 있는 분리중간체 제외)</li> </ul> </li> <li>■ 물질의 유해성 분류에 따른 제출 요구 시험자료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 유해성 및 환경 유해성 분류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기준 근거</li> </ul> </li> </ul> </li> <li>■ 물질의 톤수별 제출 요구 시험자료 확인</li> </ul>
<p>시험자료 제출 면제여부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상 면제 사유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령 제13조 / 시행규칙 제5조제2항</li> <li>•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9-2호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별표2]</li> </ul> </li> <li>■ 과학적 지견에 의한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 및 물리적 특성에 근거한 면제 요건 확인</li> <li>• 생물 이용성</li> </ul> </li> </ul>
<p>기존자료 확인 및 활용 가능성 여부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자료 존재 여부 및 기 생산자료 구매가능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자료별 활용 가능한 문헌자료, 연구논문, 평가보고서 등의 출처 및 신뢰도 확인</li> <li>• 시험자료별 국내 및 해외 기 생산자료의 구매비용과 시험기관별 시험비용(견적) 확인</li> </ul> </li> <li>■ 시험자료 확보에 소요되는 전체비용 및 시간 예측</li> </ul>
<p>시험자료 생산 여부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자료 생산이 필요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시험자료 생산이 필요한 시험항목을 취합, 해당 시험이 가능한 국내·외 시험기관에 의뢰</li> <li>• 시험 항목에 따른 시험기간 등을 조정하여 시험 진행 가능여부를 먼저 확인 하여야 함</li> </ul> </li> </ul>
<p>데이터갭 분석의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질의 고유 특성 및 해당 톤수를 고려하여 필요한 유해성 자료, 면제가능 항목 및 시험 계획서 제출가능 항목 선별</li> <li>■ 기존자료 활용 가능 할 경우, 해당 자료의 소유자 및 자료 활용 가능 여부 조사</li> <li>■ 데이터갭 분석을 통해 시험자료 제출면제 조건에 해당함을 확인했더라도, 필요 시 평가기관으로부터 추가 자료(시험 생산) 제출 통보를 받을 가능성이 있음</li> </ul>

데이터베이스 예시

시험항목	시험자료생산	기생산자료/면제조건 확인		세부내용	접근방법	자료 취득 비용 (원)		
		기생산자료	면제조건			단독	협의체 (5개 업체)	협의체 (10개 업체)
물질의 상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자료</li> </ul>	자체자료	0	0	0
물용해도	2,750,000	CRC Handbook of Chemistry and Physics 89th Edi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헌자료(CRC Handbook of Chemistry and Physics 89th Edition)</li> </ul>	공개자료	0	0	0
녹는점/어는점	575,000	CRC Handbook of Chemistry and Physics 89th Edi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헌자료(CRC Handbook of Chemistry and Physics 89th Edition)</li> </ul>	공개자료	0	0	0
끓는점	675,000	CRC Handbook of Chemistry and Physics 89th Edi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헌자료(CRC Handbook of Chemistry and Physics 89th Edition)</li> </ul>	공개자료	0	0	0
증기압	2,667,000	CRC Handbook of Chemistry and Physics 89th Edi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헌자료(CRC Handbook of Chemistry and Physics 89th Edition)</li> </ul>	공개자료	0	0	0
옥탄올/물 분배계수	4,600,000	CRC Handbook of Chemistry and Physics 89th Edi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헌자료(CRC Handbook of Chemistry and Physics 89th Edition)</li> </ul>	공개자료	0	0	0
밀도	515,000	CRC Handbook of Chemistry and Physics, 75th ed. Boca Raton, FL: CRC Press Inc., 1994-1995, p. 3-221; As cited in Toxnet Databa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헌자료(CRC Handbook of Chemistry and Physics 75th Edition)</li> </ul>	공개자료	0	0	0
입도분석	453,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자료</li> </ul>	자체자료	0	0	0
인화성	1,25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자료 생산(국내 시험기관을 통해 생산)</li> </ul>	시험생산	1,250,000	250,000	125,000
폭발성	1,5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원고서에 따른 시험항목별 시험면제조건(본 자내 특별상 관련 있는 화합그림이 없는 물질)</li> </ul>	법적면제	0	0	0
산화성	7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원고서에 따른 시험항목별 시험면제조건(본 자내 산화성 관련 있는 화합그림이 없는 물질)</li> </ul>	법적면제	0	0	0
점도	6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원고서에 따른 시험항목별 시험면제조건(물질의 상태가 고체)</li> </ul>	법적면제	0	0	0
해리상수	7,000,000	Bhattacharyya Detal; Haz Waste Haz Mater 3: 405-29 (1986); As cited in Toxnet Databa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헌자료 (Toxnet Database)</li> </ul>	공개자료	0	0	0

물리화학자료베이스



인체유해성

급성경구독성	2,750,000	Hoechst AG (1986): Unpublished study. D. Prüfung der akuten oralen Toxizität an der männlichen und weiblichen Wistar-Ratte (in German). Report number 86.1059, 15 Sep 1986	공개자료	208,350	208,350	125,010
복귀돌연변이	4,167,000	한국환경공단 소유자료	자료구매	0	0	0
피부 자극성/부식성	3,010,000	Hoechst AG (1986): Unpublished study. D. Prüfung auf Hautreizung am Kaninchen (in German). Report no. 86.0876, 15 Aug 1986.	공개자료	0	0	0
피부 과민성	10,540,000	Hoechst AG (1992): Unpublished study. Testing for sensitising properties in the Pirbright-White guinea pig in the maximisation test. Report no. 92.0345, 19 May 1992	공개자료	0	0	0
급성경피독성 또는 급성흡입독성	3,150,000		시험생산	3,150,000	630,000	315,000
눈 자극성/부식성	3,010,000	Hoechst AG (1986): Unpublished study. D. Prüfung auf Augenreizung am Kaninchen (in German). Report number 86.0917, 20 Aug 1986	공개자료	0	0	0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 이상	9,817,000	한국환경공단 소유자료	자료구매	490,850	490,850	294,510
시험동물을 이용한 유전독성(소핵시험)	10,140,000	한국환경공단 소유자료	자료구매	507,000	507,000	304,200
반복투여독성 (28일 기준)	64,667,000	한국환경공단 소유자료	자료구매	3,233,350	3,233,350	1,940,010
생식 및 발달독성 스크리닝	85,000,000	일본정부 소유자료. 렐트를 이용한 경구투여 1세대 생식독성시험. 제단 법인식품약품안전센터 쿠와노연구소	공개자료	0	0	0

시험항목	시험자료생산	기생산자료/면제조건 확인		세부내용	접근방법	자료 취득 비용 (원)		합의세 (5개 업체)	협의세 (10개 업체)
		기생산자료	기생산자료			단독	합의세		
추가 유전독성 (생식세포 유전독성 등)	45,0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학원고시에 따른 시험항목별 시험면제조건(복귀돌연변이시험, in vitro 염색체이상시험 및 in vivo 유전독성시험 결과 유전독성물질 분류를 위한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물질)</li> </ul>	법적면제	0	0	0	0
어류급성독성	7,440,000	한국환경공단 소유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 생산 시험 자료(한국환경공단)</li> </ul>	자료구매	372,000	372,000		223,200
이분해성	4,980,000	한국환경공단 소유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 생산 시험 자료(한국환경공단)</li> </ul>	자료구매	249,000	249,000		149,400
물벼룩 급성독성	6,680,000	한국환경공단 소유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 생산 시험 자료(한국환경공단)</li> </ul>	자료구매	334,000	334,000		200,400
담수조류 성장저해	7,610,000	한국환경공단 소유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 생산 시험 자료(한국환경공단)</li> </ul>	자료구매	380,500	380,500		228,300
pH에 따른 가수분해	10,5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학원고시에 따른 시험항목별 시험면제조건(이분해성 물질)</li> </ul>	법적면제	0	0	0	0
본질적분해성 (Inherent)	4,85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학원고시에 따른 시험항목별 시험면제조건(이분해성 물질)</li> </ul>	법적면제	0	0	0	0
본해신물의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학원고시에 따른 시험항목별 시험면제조건(이분해성 물질)</li> </ul>	법적면제	0	0	0	0
어류만성독성	49,5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학원고시에 따른 시험항목별 시험면제조건(위해성에 관한 자료작성결과, 추가조사기 불필요한 물질)</li> </ul>	추가면제 (용도)	0	0	0	0
물벼룩만성독성	38,0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학원고시에 따른 시험항목별 시험면제조건(위해성에 관한 자료작성결과, 추가조사기 불필요한 물질)</li> </ul>	추가면제 (용도)	0	0	0	0
육상식물 급성독성	40,0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학원고시에 따른 시험항목별 시험면제조건(평형 분배방법에 의한 유해성 평가가 가능한 물질)</li> </ul>	추가면제 (용도)	0	0	0	0
육상 무척추동물 급성독성	8,767,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학원고시에 따른 시험항목별 시험면제조건(평형 분배방법에 의한 유해성 평가가 가능한 물질)</li> </ul>	추가면제 (용도)	0	0	0	0
활상슬러지 호흡저해	8,65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학원고시에 따른 시험항목별 시험면제조건(하수 처리 시설로 배출되지 않는 물질)</li> </ul>	추가면제 (용도)	0	0	0	0
흡착 및 탈착	48,333,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학원고시에 따른 시험항목별 시험면제조건(물리 화학적 성질에 근거를 추가 가능한 물질)</li> </ul>	추가면제 (용도)	0	0	0	0
자료취득 비용	499,846,000					10,175,050	6,655,050		3,905,030

환경유해성

###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검색 DB목록

- DB목록을 활용하여 물질 정보 검색 및 자료 확보
- 우선순위가 높은 DB목록그룹에서 자료 활용권고

DB참고 목록		확인가능정보
1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	물리·화학적 특성 인체/환경 유해성
2	유독물질 정상과 독성 및 관리정보 요약서	
3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지원시스템(과학원)	
4	EU CLP	
5	EU RAR	물리·화학적 특성 인체/환경 유해성
6	ECHA Biocidal Assessment Report	
7	IARC Monograph(발암등급 포함)	
8	NTP(발암등급포함)	
9	미국 RED(농약재등록평가보고서)	
10	일본 NITE 유해성평가보고서	
11	ASTDR	
12	NICNAS(호주 국가산업용 화학물질 등록·평가)	
13	OECD SIDS	
14	IRIS(발암등급 포함)	
15	HSDB	인체/환경 유해성
16	IPCS EHC	
17	ACGIH	발암등급 확인
18	J-CHECK	이분해성, 본질적분해성
19	ChemID Plus	
20	CCRIS	생식세포 변이원성
21	GENETOX	생식세포 변이원성
22	USECOTOX	수생환경 독성
23	Merck Index	(핸드북)물리·화학적 특성
24	CRC Handbook	(핸드북)물리·화학적 특성
25	ECHA 등록자료	참고자료

## 단계 11 | 자료 확보 방안 안내 및 결정

업무 대상 |  대표자  적극적 구성원  소극적 구성원

대상 ▶

대표자

적극적 구성원

소극적 구성원

- > 기존/신규 시험자료의 확보 방안 안내
  - 대표자는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기존의 시험자료 가용성을 확인하고, 해당 시험자료 확보 전략을 마련할 것을 권고 함
  - 또한, 시험자료 확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및 일정 등에 대하여 협약 당사자들과 공유하여야 함
- > 기존/신규 시험자료의 확보 방안 결정
  - 대표자는 협약당사자와의 논의를 통해 등록에 필요한 각 시험 항목 별 자료 확보 방법에 대하여 최종 결정을 하여야 함
  - 협의체 내 논의를 통해 결정된 최종 자료는 외부 전문가 활용을 통해 시험자료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선택
  - 자료 확보 방안이 결정되면 시험자료 구매/생산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확인하여 등록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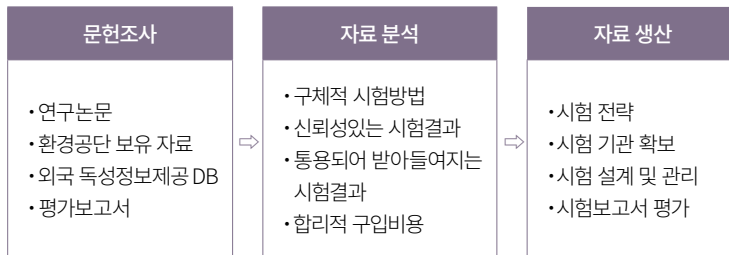


그림 14\_  
자료 확보 전략

구분	내용
<p>기존/신규 시험자료의 확보 방안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시험자료 확보 비용/일정의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시험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업체 등과 연락하여 시험자료 구매시 발생하는 비용 및 일정 등을 확보</li> <li>• 해당 내용을 협의체 내에 안내</li> </ul> </li> <li>■ 신규 시험자료 생산 비용/일정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항목에 따른 국내·외 시험기관 시험 견적 및 일정 확인</li> <li>• 시험기간에 진행 기간 등을 조정하여 시험 의뢰 가능여부 확인</li> <li>• 해당 내용을 협의체 내에 안내</li> </ul> </li> <li>■ 시험자료 확보 방안에 대한 협의체 내 구성원의 동의 확보</li> </ul>
<p>자료 선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용 가능한 기존자료의 신뢰성 평가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체 내부 또는 외부의 이용 가능한 전문가 검토를 통하여 보유자료의 신뢰성 평가를 통해 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함</li> </ul> </li> <li>■ 협의체 내에서 합의에 따른 자료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약당사자(대표자+적극적구성원)와 합의 하에 취사·선택하여야 함</li> <li>• 대표자는 선택된 자료를 검토·평가</li> <li>• 최종적으로 시험자료 공유/구매/생산 결정</li> </ul> </li> </ul>
<p>자료 확보 방안 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용 가능한 기존자료 구매 의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헌자료, 학술문헌 등 구매 가능 여부 확인</li> <li>• 국내·외 자료 소유자와의 계약 진행 여부 확인</li> </ul> </li> <li>■ 국내·외 시험기관을 통한 시험자료 생산 가능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자료별 국내 및 해외시험기관 시험비용(견적) 확인</li> <li>• 각 시험기관에 시험의뢰 가능 여부 확인</li> </ul> </li> <li>■ 대표자는 협의체 구성원들에게 자료 가능 여부, 비용 및 소요시간 등을 안내 후 해당 자료를 함께 결정 함</li> </ul>

- > 적극적 구성원은 대표자에 의해 확인된 데이터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등록전략을 수립한 이후 유해성 자료의 구매·생산 여부를 결정해야 함
- > 협의체 외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연구자료(문헌 검색, 공공 데이터베이스 분석 등) 또는 비시험방법, 동물 시험 등의 가용 여부를 확인해야 함

표 33\_

단계11. (구성원)자료 확보 방안 확인 및 결정

구분	내용
데이터갭 분석에 따른 자료의 적정성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극적 구성원은 대표자의 데이터갭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자료의 적정성을 평가 함</li> <li>■ 평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학물질 정보</li> <li>• 자료 출처의 신뢰성 확인</li> <li>• 시험항목의 Endpoint 확인</li> <li>• 이용 가능한 정보의 평가</li> <li>• 자료 확보 가능성 확인</li> <li>• 시험 생산 최소화를 위한 방안 확인 (예, 화학물질 그룹핑, 유사물질 시험 자료 활용 가능성 여부)</li> </ul> </li> <li>■ 후추 데이터갭 분석 결과에서 오류가 발견될 경우 비용, 시간 등의 소모가 발생하므로 초기 데이터갭 분석의 견고성 확보가 중요함</li> <li>■ 기존자료의 가용여부, 시험면제 가능성, 자료 생산 비용, 대체 자료의 활용 가능성 여부에 대한 확인 필요</li> </ul>
시험자료의 확보 방안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자료 확보 비용/일정 확인</li> <li>• 시험항목별 구매/생산에 발생하는 구체적 비용 및 일정 확인</li> </ul>
자료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체 내에서 합의에 따른 자료 선택</li> <li>• 적극적 구성원은 대표자와의 합의 하에 자료를 취사·선택하여야 함</li> <li>• 최종적으로 시험자료 공유/구매/생산 결정</li> </ul>
자료 확보 방안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용 가능한 기존자료 구매 의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헌자료, 학술문헌 등 구매가능여부 확인</li> <li>• 국내·외 자료 소유자와의 계약 진행 여부 확인</li> </ul> </li> <li>■ 국내·외 시험기관을 통한 시험자료 생산 가능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자료별 국내 및 해외시험기관 시험비용(견적) 확인</li> <li>• 각 시험기관에 시험의뢰 가능여부 확인</li> </ul> </li> </ul>

## 단계 12 | 자료 구매 및 생산

업무 대상 |  대표자  적극적 구성원  소극적 구성원

대상 ▶ **대표자**      적극적 구성원      소극적 구성원

- > 시험자료의 구매·생산 결정을 위한 사전검토와 필요자료의 구매·생산 결정, 최종적으로 소요비용에 대한 추정 및 부담 등의 결정하여야 함
- > 구매자료에 대한 지적 소유권 확인·동의, 부재정보에 대한 GLP기관의 정보 생산과 구매·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의 예측과 부담에 대한 의사결정
- > 대표자는 공정성과 명확성에 기반 하여 협의체 내 소요비용에 대한 부담금도 출·협의

표 34\_ 단계12.(대표자)자료 구매 및 생산 결정

구분	내용
자료 구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자는 활용 가능한 기존자료 구매를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헌 자료, 학술문헌 등을 직접 구매</li> <li>• 국내·외 자료 소유자와의 계약 진행</li> </ul> </li> </ul>
	<pre> graph LR     A[시험자료 구매 가능 여부 확인 신청인] --&gt; B[구매비용 견적서 요청 신청인]     B --&gt; C[구매 계약서 작성 자료소유자]     C --&gt; D[계약 및 시험 자료 수령 시험기관]                     </p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환경공단 유해성 시험자료 구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유해성 시험자료 정보공개” 참조</li> </ul> </li> </ul>
	<pre> graph LR     A[사전 열람 신청 신청인] --&gt; B[사용 승인 신청서 제출 신청인]     B --&gt; C[접수 검토 공단]     C --&gt; D[사용료 납부 등 안내 공단]     D --&gt; E[사용료 납부 신청인]     E --&gt; F[사용 승인서 교부 공단]                     </pre>

구분	내용
자료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시험기관을 통한 자료의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항목에 따른 국내 및 해외시험기관과 계약 진행</li> <li>• 시험기관에 시험진행 기간등을 고려하여 등록일정에 무리가 가지 않게 기간을 조정하여야 함</li> <li>• 시험 기간 동안 시험 진행에 관한 관련 업무 체크</li> </ul> </li> <li>■ 자료 생산 비용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성원들에게 시험자료 생산 비용을 안내하고 추가 시험 비용 발생 시 즉시 공지하여야 함</li> </ul> </li> <li>■ 시험자료 생산 절차</li> </ul>
	<pre> graph TD     subgraph TopRow         direction LR         T1[시험진행 가능 여부 의뢰] --&gt; T2[시험 견적서 의뢰]         T2 --&gt; T3[시험 의뢰서 작성]         T3 --&gt; T4[시험 계약서 작성]     end     T4 --&gt; B4[계약 완료 및 물질송부]     subgraph BottomRow         direction LR         B4 --&gt; B3[시험진행]         B3 --&gt; B2[시험완료 및 결과보고서 작성]         B2 --&gt; B1[시험결과 보고서 수령 및 확인]     end     T1 --&gt; B1   </pre>



## 단계 13 | 용도 및 노출정보 조사

업무 대상 |  대표자  적극적 구성원  소극적 구성원

### 용도 및 노출 정보 조사

- > 기존화학물질 등록을 위해서는 용도 및 이와 관련한 노출 정보를 제출하여야 함
- > 또한, 용도 조사를 거쳐 근로자, 소비자, 환경 등의 노출시나리오를 작성해야 하며 인체나 환경에 대한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 보고서 작성을 준비해야 함

대상 ▶

대표자

적극적 구성원

소극적 구성원

- > 용도 및 노출정보와 관련한 자료는 등록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개별 자료에 해당 하므로 모든 구성원이 작성 준비해야 함
- > 등록 의무자는 하위사용자 및 이를 판매하는 자로부터 용도 및 노출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고 '화학물질의 용도와 관련한 노출정보를 기록한 서류'에 작성하여 제출

표 35\_

단계13. 용도 및 노출정보 조사

구분	내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신청서' 입력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도분류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시행령 제10조의2제3호 및 별표 2)에 따른 화학물질의 모든 '용도분류'를 작성</li> </ul> </li> <li>• 구체적 용도에 대한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하고자 하는 화학물질의 각각의 용도분류에 대한 구체적 용도 중 주된 내용을 작성</li> </ul> </li> <li>• 사용하지 말아야 할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하지 말아야 할 용도는 확인된 경우에 작성</li> <li>- 확인되지 않은 경우, '확인된 사용불가 용도는 없음'으로 작성</li> </ul> </li> <li>• 상품의 물리적 형태 및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하고자 하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대표적인 상품의 물리적 형태와 그 상품의 용도 작성</li> </ul> </li> <li>• 상품 내 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적인 상품 내에서 등록하고자 하는 화학물질이 차지하는 중량비율을 백분율(%)로 작성</li> </ul> </li> </ul> </li> </ul>

구분	내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학물질의 용도와 관련한 노출정보를 기록한 서류' 작성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도의 범주: 주요 용도의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적/전문적 용도' 또는 '소비자 용도' 또는 모두에 해당하는지 작성</li> </ul> </li> <li>• 용도에 관한 구체적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 산업적/전문적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밀폐된 시스템에서의 사용, 매트릭스 내부 또는 표면의 함유물로서의 사용, 비분산적 사용, 광범위한 분산적 사용, 그 밖의 사용으로 구분하여 작성</li> <li>- 시설의 형태는 저장보관시설, 이송운반시설, 사용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작성</li> </ul> </li> <li>ii. 소비자 용도: 소비자의 구체적인 사용 예시를 작성</li> </ul> </li> </ul> </li> </ul>
노출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학물질의 용도와 관련한 노출정보를 기록한 서류' 작성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노출경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학물질이 배출원으로부터 인체 또는 환경에 노출될 때까지의 이동 매개체와 그 경로</li> <li>- 인체(경구, 경피, 흡입, 그 밖) 및 환경(수계, 대기, 폐기물, 토양, 그 밖)으로 구분하여 작성</li> </ul> </li> <li>• 노출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발적·간헐적, 가끔씩, 지속적·빈번한, 그 밖으로 구분하여 작성</li> </ul> </li> <li>• 사용량 및 사용일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일평균 제조·사용량과 연간 예상 제조·사용일수를 작성</li> </ul> </li> <li>• 제조로부터 폐기까지의 흐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하고자 하는 화학물질이 제조 및 사용되어 폐기되기까지의 흐름을 도식화하여 작성</li> </ul> </li> </ul> </li> </ul>

■ 기초 정보 조사(예시)

화학물질의 용도와 관련한 노출정보를 기록한 서류

(1) 용도의 범주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산업적/전문적 용도 <input type="checkbox"/> 소비자 용도	
(2) 사용용도에 관한 구체적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물질은 전문적인 용도, 교량과 같은 대규모 시설에 사용되는 도로 제품의 한 성분으로서 사용됨.</li> <li>- 도로를 목적물에 도포(에어리스 스프레이(airless spray), 브러시(brush) 또는 롤러(roller)) 시 액체가 튀어 피부에 노출될 수 있음.</li> <li>-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는 보호복, 장갑, 신발(boots) 및 눈/안면 보호구를 포함하는 최소한의 개인보호구 사용을 권고함. 호흡보호구는 분사 도포 시 권고됨.</li> <li>- 본 신규 물질은 도포 후에 경화된 도로 매트릭스에 결합됨.</li> </ul>	
<b>■ 산업적/전문적 용도</b>		
사용 형태		
	<input type="checkbox"/>	<b>밀폐된 시스템에서의 사용</b> - 해당 없음. 본 화학물질은 한국에서 밀폐된 시스템에서 사용되지 않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b>매트릭스 내부 또는 표면의 함유물로서의 사용</b> - 도로의 한 성분인 본 화학물질은 경화 후에 도로 매트릭스를 형성함. 본 도로의 대부분은 도포되고, 이후 경화됨.
	<input type="checkbox"/>	<b>비분산적 사용</b> 해당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b>광범위한 분산적 사용</b> - 도로의 한 성분인 본 화학물질은 전문적/또는 산업적 용도로 에어리스 스프레이(airless spray), 브러시(brush) 또는 롤러(roller)에 의해 목적물에 도포됨.
	<input type="checkbox"/>	<b>기타</b> 해당 없음.
시설의 형태		
	<input checked="" type="checkbox"/>	<b>저장보관시설</b> -판매될 때까지 훈련된 직원 외에는 접근이 통제되는 보세창고에서 저장됨. (용기 정보: 5L 캔. 재질은 UN certified 1A2 steel (removable head).)
	<input checked="" type="checkbox"/>	<b>이송운반시설</b> 수입된 도로 캔은 육로 운송에 의해 사용자의 저장 시설로 이송됨. 저장소에 있는 도로 캔을 해당 사용 장소로 지게차 또는 수동 운반
	<input checked="" type="checkbox"/>	<b>사용시설</b> 본 물질은 공장, 조선소 또는 건물 현장, 해양 구조물, 선박 상부구조물, 부두 및 수문(slucice gate)과 같은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됨. 본 화학물질을 함유하는 도료는 주로 에어리스 스프레이(airless spray)로 전문가에 의해서만 다양한 구조물의 강철 재질에 도포됨.
	<input type="checkbox"/>	<b>환경오염방지시설</b>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b>기타</b> 해당 없음.
<b>■ 소비자 용도</b>		
해당 없음. (본 화학물질은 DIY/소비자 환경에서 사용되지 않음.)		

## 단계 14 | 위해성 평가 자료 작성을 위한 노출 DB 조사

업무 대상 |  대표자  적극적 구성원  소극적 구성원

### 위해성 평가 자료의 제출

- >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라 연간 10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위해성 평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대상 ▶

대표자

적극적 구성원

소극적 구성원

- >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해성 평가 자료의 공동제출 여부가 합의되면 대표자는 자료 작성을 위하여 협의체 구성원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해야 함
- > 위해성 평가 자료 작성을 위해 대표자는 협약당사자에게 노출 DB 양식 배포
- > 위해성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확인된 용도를 포함한 모든 용도에 따른 전 생애 단계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수집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정보를 수집해야 함
- > 즉, 대표자는 모든 협약 당사자의 용도 조사를 통하여 사람 및 환경에 대한 노출 수준을 비교

표 36\_

단계14. (대표자) 위해성 평가자료 작성을 위한 노출 DB조사

구분	내용
기본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장명</li> <li>■ 물질명</li> <li>■ 용도 및 구체적 용도</li> <li>■ 물질의 전생애 단계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질제조, 혼합물조제, 산업적사용, 전문적사용, 소비자사용 단계 중 선택</li> </ul> </li> <li>■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li> <li>■ 자료 구매/생산단계(단계 19)에서 확보된 유해성 자료 등</li> </ul>

구분	내용
환경노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배출범주(ERC, 위해성에 관한 자료 작성지침 참조)</li> <li>■ 주요 분류체계(MC, EU 분류체계 참조)</li> <li>■ 산업 분류체계(IC, EU 분류체계 참조)</li> <li>■ 연간 사용/취급량</li> <li>■ 1년 중 배출일수 및 조업일수</li> <li>■ 하수처리설비(Sewage Treatment Plant, STP) 사용여부</li> <li>■ 배출저감시설 사용 여부</li> <li>■ 대기/수계/토양 배출량(해당하는 경우)</li> </ul>
소비자 노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CETOCTR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범주(PC, 위해성에 관한 자료 작성지침 참조)</li> <li>• 제품에 대한 상세 설명</li> <li>• 1회 권장 사용량</li> </ul> </li> <li>■ ConsExp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onsExpo에 적용 가능한 제품군 및 하위 제품</li> <li>• 등록하고자 하는 화학물질의 제품 내 함량(%)</li> </ul> </li> <li>■ 그 외 ECETOXTRA 및 ConsExpo 평가 가능 제품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알고리즘 적용을 위한 노출계수 기입</li> </ul>
작업자 노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범주(PROC, 위해성에 관한 자료 작성지침 참조)</li> <li>■ 공정범주 별 상세 공정단계 기술</li> <li>■ 공정범주 별 노출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진발생정도, 작업시간, 배기장치 사용 여부, 혼합물 여부, 호흡용 보호구 사용 여부 및 정보(효율, 성능, 재질 및 특성), 피부보호 장비 사용 여부 및 정보(효율, 성능, 재질 및 특성)</li> </ul> </li> <li>■ 위해성관리대책(RMM) 및 세부정보</li> </ul>

### 위해성 평가 자료 작성을 위한 노출시나리오 표준DB 예시

기본물질 정보		시나리오 입력범주											
물질명	CASNo.	용도	구체적용도	한국표준 산업분류코드 (K SIC)	노출시나리오 제목 및 구분	해당기업명	공정범주	공정범주 해당여부	환경배출범주	환경배출범주 해당여부	제품범주	제품범주 해당여부	기여 시나리오
AAA	00-00-0	53.가형(加興)계 가형촉진제	고무 배합시 혼합	22111-제조업	산업적 사용	XXX	PROC_1	비해당	ERC_5	해당	PC_32	해당	
		53.가형(加興)계 가형촉진제	고무 배합시 혼합	22111-제조업	산업적 사용	YYY	PROC_2	해당	ERC_6b	해당			
		53.가형(加興)계 가형촉진제	고무 배합시 혼합	22111-제조업	산업적 사용	ZZZ	PROC_3	해당	ERC_6d	비해당			

공정범주	플라자성태	작업자노출평가에 필요한 노출변수						환경노출평가에 필요한 노출변수					
		사용구분 (전문/산업 사용)	작업시간	배기장치 (환기시설/사용)	혼합물의 조성	호흡보호구 사용여부	피부보호장비 사용여부	환경배출범주	주요분류체계 (MIC)	산업분류체계 (IC)	사용량 (tonnes/yr)	1년중배출일 수(작업일수) (day/yr)	STP사용여부
PROC_1	고체	산업적사용	>4시간	쿠소배기장치가 설치된 실나	혼합물 아님	사용	사용안함	ERC_5	II				
PROC_2	고체	산업적사용	>4시간	쿠소배기장치가 설치된 실나	혼합물 아님	사용	사용안함	ERC_6b	II				
PROC_3	고체	산업적사용	>4시간	쿠소배기장치가 설치된 실나	혼합물 아님	사용	사용안함	ERC_6d					

소비자노출평가에 필요한 노출변수(TRA)		소비자노출평가에 필요한 노출변수(ConseXpo)	
TRA적용 가능여부	제품내용질의함량 (%)	제품군선택	제품내용질의함량 (%)
PC_32	X	0-10	0-1000

## 단계 15 | 확보 자료 공유

업무 대상 |  대표자  적극적 구성원  소극적 구성원

### 공동등록 자료 제출을 위하여 확보한 자료 공유

- > 공동등록 협의체 참여 당사자는 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을 위한 자료공유 및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의 의무가 있음
- > 자료공유의 합의에 따라 공동 제출 여부 결정 비용 산정·분담 방안이 결정되므로 확보된 자료의 공유는 협의체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단계임

대상 ▶	대표자	적극적 구성원	소극적 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t; 대표자는 협의체 구성원에게 공동제출을 위하여 확보한 자료에 대한 공유의 의무가 있으며, 자료의 공유 범위 및 공유 대상은 대표자 및 협약당사자간 체결한 협약서를 기반으로 함</li> <li>&gt; 대표자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자료 제출과 분류 및 표시 합의를 위하여 협약 당사자에게 확보한 시험자료를 공유해야 함</li> <li>&gt; 자료의 공유는 비용분담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대표자는 협의체 특성에 따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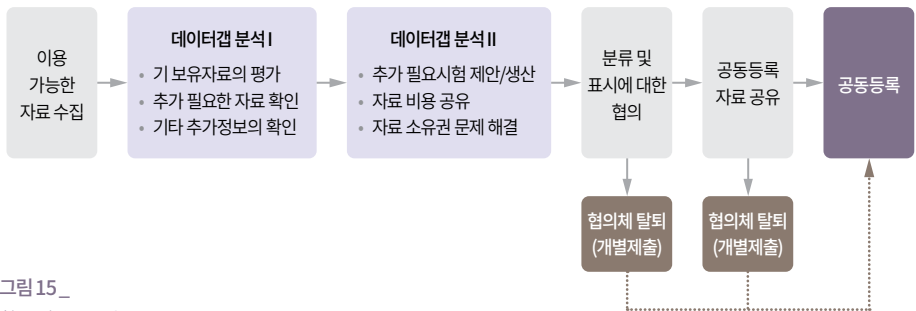


그림 15\_ 확보 자료 공유 flow chart

표 37\_

단계15. (대표자) 확보 자료 공유

구분	내용
시험자료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유자료</li> <li>■ QSAR 등의 예측 자료</li> <li>■ 문헌자료</li> <li>■ 국제기구의 평가보고서</li> <li>■ 국내/외 구매자료</li> <li>■ 국내/외 생산자료</li> </ul>
시험자료의 공유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회 구성원에게 기존/신규 연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 협의회 구성원의 정보 요청에 응해야 함</li> <li>■ 시험자료의 공유는 공동제출 의무들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협의회 내의 유연성을 제공</li> <li>■ 공유된 자료에 대한 권리를 구별하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연구보고서의 소유권</li> <li>• 전체 연구보고서를 참조할 권리</li> <li>• 기타 권리</li> </ul> </li> </ul>
협약 당사자 간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보한 시험자료의 사용 여부</li> <li>■ 시험자료를 활용한 분류 및 표시 결정</li> </ul>



## 단계 16 | 유해성 분류 및 표시 작성 및 공유

업무 대상 |  대표자  적극적 구성원  소극적 구성원

### 유해성 분류 및 표시의 작성 및 공유

- > 기존의 분류 및 표시를 확인하고 유해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분류 및 표시를 도출하는 단계

표 38\_

단계16. 유해성 분류 및 표시 작성

구분	내용																																	
유해성 분류 및 표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유해성 분류 및 표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시험자료 내의 인체·환경 유해성 자료의 결과값</li> <li>• 시험 생산한 자료 내의 인체·환경 유해성 자료의 결과값</li> </ul> </li> </ul>																																	
유해성 분류 및 표시 작성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류 및 표시 정보 작성</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유해성 정보</th> <th colspan="3">표시 사항</th> </tr> <tr> <th>항목</th> <th>구분</th> <th>그림문자</th> <th>신호어</th> <th>유해·위험문구</th> </tr> </thead> <tbody> <tr> <td>물리적 위험성</td> <td colspan="5">※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이를 명시</td> </tr> <tr> <td>건강 유해성</td> <td colspan="5">                     ※ 등록시 제출한 시험자료를 바탕으로 분류표시 정보를 작성                      ※ 참고자료                 </td> </tr> <tr> <td>환경 유해성</td> <td colspan="5">                     -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 내용(화평법 시행규칙 [별표 7])                      -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 2019-45호)                      - 국립환경과학원 유독물 GHS 지원 시스템(그림문자, 신호어 및 유해·위험 문구)                 </td> </tr> </tbody> </table>					구분	유해성 정보		표시 사항			항목	구분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물리적 위험성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이를 명시					건강 유해성	※ 등록시 제출한 시험자료를 바탕으로 분류표시 정보를 작성 ※ 참고자료					환경 유해성	-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 내용(화평법 시행규칙 [별표 7]) -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 2019-45호) - 국립환경과학원 유독물 GHS 지원 시스템(그림문자, 신호어 및 유해·위험 문구)				
구분	유해성 정보		표시 사항																															
	항목	구분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물리적 위험성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이를 명시																																	
건강 유해성	※ 등록시 제출한 시험자료를 바탕으로 분류표시 정보를 작성 ※ 참고자료																																	
환경 유해성	-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 내용(화평법 시행규칙 [별표 7]) -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 2019-45호) - 국립환경과학원 유독물 GHS 지원 시스템(그림문자, 신호어 및 유해·위험 문구)																																	

구분	내용																			
유해성 분류 및 표시 작성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류 및 표시 분류 항목</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349 261 525 301">구분</th> <th data-bbox="525 261 1021 301">분류 항목</th> </tr> </thead> <tbody> <tr><td rowspan="16">물리적 위험성</td><td>폭발성 물질 또는 화학류</td></tr> <tr><td>인화성 가스</td></tr> <tr><td>인화성 에어로졸</td></tr> <tr><td>산화성 가스</td></tr> <tr><td>고압가스</td></tr> <tr><td>인화성 액체</td></tr> <tr><td>인화성 고체</td></tr> <tr><td>자기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td></tr> <tr><td>자연발화성 액체</td></tr> <tr><td>자연발화성 고체</td></tr> <tr><td>자기발열성 물질 및 혼합물</td></tr> <tr><td>물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td></tr> <tr><td>산화성 액체</td></tr> <tr><td>산화성 고체</td></tr> <tr><td>유기과산화물</td></tr> <tr><td>금속부식성 물질</td></tr> </tbody> </table>	구분	분류 항목	물리적 위험성	폭발성 물질 또는 화학류	인화성 가스	인화성 에어로졸	산화성 가스	고압가스	인화성 액체	인화성 고체	자기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자연발화성 액체	자연발화성 고체	자기발열성 물질 및 혼합물	물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산화성 액체	산화성 고체	유기과산화물	금속부식성 물질
	구분	분류 항목																		
	물리적 위험성	폭발성 물질 또는 화학류																		
		인화성 가스																		
		인화성 에어로졸																		
		산화성 가스																		
		고압가스																		
		인화성 액체																		
		인화성 고체																		
		자기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자연발화성 액체																		
		자연발화성 고체																		
		자기발열성 물질 및 혼합물																		
		물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산화성 액체																		
		산화성 고체																		
		유기과산화물																		
		금속부식성 물질																		
	<table border="1"> <tbody> <tr><td rowspan="13">건강 유해성</td><td>급성 경구 독성</td></tr> <tr><td>급성 경피 독성</td></tr> <tr><td>급성 흡입 독성</td></tr> <tr><td>피부 부식성/자극성</td></tr> <tr><td>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td></tr> <tr><td>호흡기 과민성</td></tr> <tr><td>피부 과민성</td></tr> <tr><td>발암성</td></tr> <tr><td>생식세포 변이원성</td></tr> <tr><td>생식독성</td></tr> <tr><td>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1회 노출)</td></tr> <tr><td>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반복 노출)</td></tr> <tr><td>흡인유해성</td></tr> </tbody> </table>	건강 유해성	급성 경구 독성	급성 경피 독성	급성 흡입 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호흡기 과민성	피부 과민성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1회 노출)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반복 노출)	흡인유해성					
	건강 유해성		급성 경구 독성																	
			급성 경피 독성																	
			급성 흡입 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호흡기 과민성																	
			피부 과민성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1회 노출)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반복 노출)																	
		흡인유해성																		
	<table border="1"> <tbody> <tr><td rowspan="3">환경 유해성</td><td>급성 수생환경 유해성</td></tr> <tr><td>만성 수생환경 유해성</td></tr> <tr><td>오존층 유해성 물질</td></tr> </tbody> </table>	환경 유해성	급성 수생환경 유해성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오존층 유해성 물질															
	환경 유해성		급성 수생환경 유해성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오존층 유해성 물질																				

- > 대표자는 확보한 물리적·화학적 특성, 인체 및 환경 유해성 자료를 바탕으로 유해성 분류 및 표시를 도출하여야 함
- > 대표자는 작성한 유해성 분류 및 표시에 대한 내용을 협의체 구성원과 공유하고 등록하고자 하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를 결정 함

## 표 39\_

단계16.(대표자)분류 및 표시 결정 절차

구분	내용
분류 및 표시 결정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류 및 표시 정보 회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해성 평가 결과 도출한 분류 및 표시 결과를 협의체 회원에 회람</li> <li>•분류 및 표시는 용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협의체 구성원과 협의 필요</li> <li>•협의체 구성원은 도출된 분류 및 표시가 자체적으로 예상한 기준과 일치하는지 확인</li> </ul> </li> <li>■ 기업 별 동의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류 및 표시 확인 후 협의체 구성원의 동의를 확인하는 단계</li> <li>•협의체 구성원은 기존에 예상한 분류 및 표시와 도출된 결과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근거자료 제시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 합의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 개별 제출 가능</li> <li>•화평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시행령 제14조제1호에 따라 개별제출을 결정한 구성원은 규칙 제18조에 따른 개별제출확인을 받아야 함</li> </ul> </li> <li>■ 분류 및 표시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출 정보를 반영하여 협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분류 및 표시를 최종 결정</li> </ul> </li> </ul>

-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 작성 예시

###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내용에 대한 자료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 관한 사항)

#### ● 화학물질명: Chemical A

##### 1. 분류

###### ■ 물리적위험성:


- 폭발성 물질 또는 화약류: 분류대상 외  
(폭발성에 기여하는 화학구조를 포함하지 않음.)
- 인화성 가스: 본 물질은 고체이므로 해당 없음.
- 인화성 에어로졸: 본 물질은 고체이므로 해당 없음.
- 산화성 가스: 본 물질은 고체이므로 해당 없음.
- 고압가스: 본 물질은 고체이므로 해당 없음.
- 인화성 액체: 본 물질은 고체이므로 해당 없음.
- 인화성 고체: 분류대상 외(인화성을 나타내는 화학구조를 포함하지 않음).
- 자기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자료가 없어 분류할 수 없음.
- 자연발화성 액체: 본 물질은 고체이므로 해당 없음.
- 자연발화성 고체: 자료가 없어 분류할 수 없음.
- 자기발열성 물질 및 혼합물: 자료가 없어 분류할 수 없음.
- 물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자료가 없어 분류할 수 없음.
- 산화성 액체: 분류대상 외(본 물질은 고체임)
- 산화성 고체: 분류대상 외(산화성에 기여하는 화학구조를 포함하지 않음).
- 유기과산화물: 분류대상 외(유기과산화물 구조를 포함하지 않음).
- 금속부식성 물질: 자료가 없어 분류할 수 없음.

###### ■ 건강 유해성 정보:

- 급성 독성(노출 가능한 모든 경로에 대해 기재):
  - 급성독성 경구: 구분4  
 $LD_{50}(rat) = 320mg/kg\ bw$
  - 급성독성 경피: 구분 외  
 $LD_{50}(rabbit) > 2,000mg/kg\ bw$
  - 급성독성 흡입: 자료가 없어 분류할 수 없음.
-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구분 외
  - 토끼에 대한 피부자극성/부식성 시험에서, 본 물질은 피부자극성 물질이 아님.

-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구분 2
  - 토끼에 대한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시험에서, 본 물질은 가벼운 자극을 나타냄.
  - Maximum mean total score (MMTS): 24.67(그룹1), 24.17(그룹2)
  - 호흡기 과민성: 자료가 없어 분류할 수 없음.
  - 피부 과민성: 구분 1 (피부과민성 물질)
  - 본 시험물질의 피부과민성 시험(LLNA)결과 EC3=2.7%이었으며, 피부과민성을 나타냄.
  - 발암성: 자료가 없어 분류할 수 없음.
  - 생식세포 변이원성: 자료가 불충분하여 분류할 수 없음.
  - AMES시험: +S9 TA100에서 양성
  - 염색체시험: 불명확한 결과(Ambiguous)
  - 소핵시험: 음성
  - 생식독성: 자료가 없어 분류할 수 없음.
  -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1회 노출): 자료가 없어 분류할 수 없음.
  -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반복 노출): 자료가 없어 분류할 수 없음.
  - 흡인유해성: 자료가 없어 분류할 수 없음.
- 환경 유해성 정보:
- 수생환경 유해성:
  - 급성 수생환경 유해성: 자료가 불충분하여 분류할 수 없음.
    - 어류급성독성:
      - LC<sub>50</sub>(Oryzias latipes) (96h) > 0.0170mg/L
      - NOEC(Oryzias latipes) (96h) = 0.0170mg/L
    - 물벼룩급성독성:
      - EiC50(Daphnia magna)(48h) > 0.0277mg/L  
(기하평균농도에 기초함)
      - EiC50(Daphnia magna)(48h) > 0.038mg/L  
(설정농도에 기초함)
      - NOEC(Daphnia magna)(48h) = 0.038mg/L
    - 담수조류생장저해:
      - ErC50(Pseudokirchnerella subcapitata)(72h) > 0.0048mg/L
      - NOECr(Pseudokirchnerella subcapitata)(72h) 0.0048mg/L
    - 이분해성: 이분해성 물질에 해당하지 않음(28일 후 분해율 0%).
  -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자료가 불충분하여 분류할 수 없음
    - 쉽게 분해되지 않으며 어류, 물벼룩급성독성 및 담수조류생장저해 시험의 결과값이 1mg/L미만임.
  - 오존층 유해성: 자료가 없어 분류할 수 없으나 구조, 물성 등으로 보아 휘발성이 없어 분류되지 않을 것으로 봄.

## 2. 표시

<p>그림문자 및 신호어</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신호어: 경고</p>
<p>유해위험 문구</p>	<p>H302 삼키면 유해함 H317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H319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p>
<p>예방조치 문구</p>	<p><b>예방</b> P261 분진·흙·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십시오. P264 취급 후에는 손을 철저히 씻으십시오. P270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십시오. P272 작업장 밖으로 오염된 의복을 반출하지 마십시오. P280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 착용하십시오.</p> <p><b>대응</b> P321 적절한 처치를 하십시오. P330 입을 씻어내십시오. P391 누출물을 모으십시오. P301+P312 삼켜서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P302+P352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으십시오. P333+P313 피부자극성 또는 홍반이 나타나면 의학적인 조언·주의를 받으십시오 P337+P313 눈에 대한 자극이 지속되면 의학적인 조언·주의를 받으십시오. P362+P364 오염된 의복은 벗고 다시 사용 전 세척하십시오. P305+P351+P338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십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십시오. 계속 씻으십시오.</p> <p><b>저장</b></p> <p><b>폐기</b> P501 관련법규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십시오.</p>

## 단계 17 |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작성

업무 대상 |  대표자  적극적 구성원  소극적 구성원

###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 > 취급방법,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누출시 방제요령, 폐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작성

대상 ▶	대표자	적극적 구성원	소극적 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t;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은 협의체 구성원이 합의한 경우 공동을 제출 가능</li> <li>&gt; 대표자는 등록하고자 하는 화학물질의 정보 및 안전에 대한 정보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학물질 취급자의 건강, 안전, 주위환경에 관련된 내용을 기술</li> <li>- 실제적 위험이나 잠재적인 위험성에 관한 주의사항</li> <li>- 위험물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구되는 보호장비/시설/대처 등</li> </ul> </li> </ul>		

#### 표 40\_

단계17.(대표자)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작성

구분	내용
취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한 저장 및 보관을 위한 방법·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장 공간 및 저장용기에 대한 재질, 특정한 모양·형태, 환기시설 등</li> <li>• 피하여야 할 물질과 조건, 유해한 분해 생성물 등</li> <li>• 온도, 습도, 빛 등 저장·보관 조건</li> <li>• 정전기 방지 조치</li> </ul> </li> <li>■ 취급 시 주의사항: 사고 예방, 사람의 건강 및 환경 보호를 위한 적절한 작업 절차와 조치</li> <li>■ 취급자에 대한 응급조치 방법</li> </ul>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화방법 및 소화 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재 진압 시에 착용할 보호구</li> <li>• 화학물질 자체 또는 화학물질의 연소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성 (유해화학물질 등)</li> </ul> </li> <li>■ 소화제 및 소화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절한 소화제</li> <li>• 안전상의 이유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소화제</li> </ul> </li> </ul>

구분	내용
누출 시 방제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방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흡기, 피부 및 눈 보호, 분진관리 등을 위한 개인 보호구 착용</li> <li>• 배수시설, 지표수, 지하수 및 토양으로부터 이격거리 등 환경적 예방조치</li> </ul> </li> <li>■ 방제약품, 장비, 방법: 흡수제 사용, 물을 이용한 가스 저감, 희석 방법 등</li> </ul>
폐기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절한 폐기방법</li> <li>■ 인체 및 환경에 대한 노출을 적절히 제어하는 폐기물 관리대책</li> </ul>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li> <li>■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li> <li>■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li> <li>■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li> <li>■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li> </ul>



## 단계 18 | 대표자 등록 서류 작성 및 제출

업무 대상 |  대표자  적극적 구성원  소극적 구성원

### 등록신청자료의 작성 및 제출

- > 등록신청자료는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 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작성함

대상 ▶

대표자

적극적 구성원

소극적 구성원

- > 대표자는 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12조, 제16조에 따라 공동 제출하여야 할 정보와 협약당사자가 동의한 추가 공동 제출 정보를 포함한 등록신청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 화학물질 등록 예정량이 연간 10톤 이상인 경우, 화학물질 전과정 취급방법과 노출통제·관리방법을 기술한 노출시나리오를 포함한 유해성 자료 준비하여야 함
- > 화학물질의 유해성 자료는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함
- > 유해성 자료 작성 방법 등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 작성지침” 및 “화평법 이행을 위한 화학물질 환경 중 농도 예측모형 매뉴얼”을 참조함
- > 공동 제출 자료의 준비를 통해 작성된 등록 서류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 > 공동제출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가 먼저 공동제출 하여야 하는 등록신청자료와 개별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등록신청

표 41\_

단계18. (대표자) 대표자 등록 서류 작성 및 제출

구분	내용
신청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수입 여부 체크</li> <li>■ 신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 신청인(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또는 위탁한 자 포함)의 정보를 입력</li> <li>•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의 경우 '선임된 자'란 체크</li> <li>• 입력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 주소, 소재지 주소 및 전화번호</li> </ul> </li> </ul> </li> <li>■ 신청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신청 하고자 하는 화학물질의 식별정보 및 등록 형태를 입력</li> <li>• 입력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학물질명, 고유번호(CAS No. 등), 상품명, 분자식·구조식, 순도(%), 확인된 불순물·부산물</li> <li>- 연간제조(수입)예정량(톤): 등록신청 당시 해당 연도의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연간 제조 또는 수입 예정량</li> <li>- 등록의 형태: 등록 톤수 범위와 고분자·분리중간체 선택 가능</li> <li>- 자료보호신청여부</li> <li>- 기업구분: 기업규모 선택(대·중·소)</li> </ul> </li> </ul> </li> <li>■ 수입자(신청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38조에 따른 '국의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수입자를 같음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선임된 자는 수입자에게 이를 알리고 해당되는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입력</li> <li>• 수입자가 다수일 경우 '행추가'를 클릭하여 모든 수입자 정보 입력</li> <li>• 입력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자의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연락처, 수입국</li> </ul> </li> </ul> </li> <li>■ 수탁자(신청인이 위탁자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자가 제조자 대신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이를 알리고 모든 수탁자의 정보를 입력</li> <li>• 수탁자가 다수일 경우 '행추가'를 클릭하여 모든 수입자 정보 입력</li> <li>• 입력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탁자의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li> </ul> </li> </ul> </li> </ul>
용도 및 분류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계 14에서 조사한 용도 정보를 입력</li> <li>• 입력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도분류체계, 구체적 용도에 대한 설명, 사용하지 말아야 할 용도, 상품의 물리적 형태 및 용도, 상품 내 함량(%)</li> </ul> </li> </ul> </li> </ul>

구분	내용
용도 및 분류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계 17에서 협약당사자와 합의된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및 환경 유해성 분류를 입력</li> <li>• 입력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해성 분류 및 구분</li> <li>- 자료가 없는 경우, 공란에 '시험 자료가 없어 적용불가' 등으로 입력</li> <li>- 분류되지 않는 경우, '분류되지 않음' 및 '해당 없음' 입력</li> </ul> </li> </ul> </li> <li>■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계 17에서 협약당사자와 합의된 유해성 분류에 따른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문구 등의 표시사항 입력</li> <li>• 입력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림문자 및 신호어</li> <li>- 유해위험 문구</li> <li>- 예방조치 문구</li> </ul> </li> </ul> </li> <li>■ 첨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첨부 서류'의 자료들을 첨부</li> </ul> </li> </ul>
물리적·화학적 특성·인체유해성· 환경유해성· 고분자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규칙 별표1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의 제출방법'에 따라 요구되는 시험자료를 제출</li> <li>■ 자료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의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자료의 전문, 시험요약서, 예측자료 또는 문헌자료 등으로 구분</li> <li>- 주요자료 또는 참고자료 구분</li> </ul> </li> <li>• 자료의 기본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출시험자료의 연구년도, 결과 도출 방법, 신뢰도 등을 입력</li> </ul> </li> <li>• 자료의 세부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헌의 종류, 시험기관, 제출시험자료의 소유권 구분 및 공개·비공개 여부</li> </ul> </li> </ul> </li> <li>■ 시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방법의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방법 준수 여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에서 시험 실시 여부, 등록신청 물질과 시험물질 동일 여부</li> </ul> </li> <li>• 시험물질의 식별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물질의 식별정보(CAS No., CAS명 등)를 구분</li> </ul> </li> <li>• 시험물질·시험종의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동물명, 시험종계통, 성별 등을 구분</li> </ul> </li> <li>• 시험조건의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기간, 시험환경조건, 매개물질, 용량, 용량별 성별 개체 수, 추가 정보 등 시험 시 조건에 대한 정보 입력</li> </ul> </li> </ul> </li> <li>■ 시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결과값(결과값 또는 범위, 단위 등), 결론 및 요약 등을 각각 입력</li> <li>• 자료제출생략 또는 면제에 해당할 경우, 생략 또는 면제 사유 입력</li> </ul> </li> </ul>

구분	내용
<p>물리적·화학적 특성·인체유해성· 환경유해성· 고분자 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첨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요약서 제출이 원칙, 전문 보유 시 함께 제출</li> <li>• 자료개요 항목에서 선택한 자료의 종류에 따른 시험자료 전문, 요약서, 문헌자료 등을 첨부</li> <li>• 다수의 자료를 첨부하여야할 경우 추가하여 제출 가능</li> <li>• 자료제출생략 또는 면제에 해당할 경우, 생략사유 및 증명자료 첨부</li> </ul> </li> </ul>
<p>화학물질정보 처리시스템 첨부 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도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계 18에서 시행규칙 별표 3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 자료</li> </ul> </li> <li>• 화학물질의 용도와 관련한 노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계 14에서 조사한 정보를 기초로 하여 시행규칙 별표 8 '화학물질의 용도와 관련한 노출정보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 자료</li> </ul> </li> <li>• 선입사실 신고증: 법 제38조에 따라 선입된 자의 경우</li> <li>• 물질 식별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학물질명, CAS No., 구조식, STN 검색 자료 등 화학물질동질성 확인 자료</li> </ul> </li> <li>• 화학물질 분류표시에 대한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규칙 별표 7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내용'에 따라 단계 17에서 협약당사자와 합의된 분류 및 표시 자료</li> </ul> </li> <li>•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li> <li>• 위해성에 관한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 제조·수입량이 10톤 이상일 경우 제출</li> <li>- 시행규칙 별표 2 '위해성 관련 자료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li> </ul> </li> <li>• 용도 및 노출 추가자료(필요 시)</li> <li>• 생략사유 및 증명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자료 생략 또는 면제 사유, QSAR, Read-across 방법 등과 근거 자료</li> </ul> </li> <li>• 시험계획서</li> <li>• 법 제14조제3항 및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시험계획서로 대체 제출할 경우 시험계획서 첨부</li> <li>• 척추동물 시험자료 사용부동의 확인소견서(필요 시)</li> <li>• 위탁계약서 사본(위탁자가 신청인일 경우)</li> <li>• 사업자등록증</li> <li>• 수입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구분에서 선택한 기업 규모에 따라 표시된 금액의 수입인지 발행 후 첨부</li> </ul> </li> </ul> </li> </ul>
<p>등록신청자료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성한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제출</li> <li>■ 대표자는 단계 8에서 결정된 공동제출 범위에 따라 등록신청자료 및 공동 제출자료를 제출</li> </ul>
<p>제출 확인서 전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수 완료 시 '접수처리 안내' 메일 발송됨(접수 번호 부여)</li> <li>■ 대표자는 접수일 및 접수번호가 포함된 제출 확인서를 협약당사자에게 전달</li> </ul>

## 단계 19 | 국립환경과학원 안전성 검토

업무 대상 |  대표자  적극적 구성원  소극적 구성원

대상 ▶

대표자

적극적 구성원

소극적 구성원

- > 대표자가 동일 기존화학물질을 등록신청하려는 다른 자들에 앞서 등록신청 자료를 먼저 제출 하고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검토
- > 국립환경과학원은 대표자가 제출한 등록신청자료가 해당 화학물질 및 용도를 적절히 평가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제출되었는지 적정성 및 안전성을 검토
- > 또한, 등록신청서에 포함된 용도, 노출(노출경로 및 형태) 등의 사용과 관련된 자료 및 유해성 시험자료 등이 해당 화학물질의 평가에 충분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검토

표 42\_

단계19.(대표자) 국립환경과학원 안전성 검토

구분	내용
과학원 안전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원에서는 대표자가 제출한 등록신청자료에 대하여 다음 사항들에 대한 적정성 및 적합성을 판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14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등 신청 시 제출 자료</li> <li>• 등록신청물질의 형태별·톤수별 제출 요구 시험자료</li> <li>• 기타 등록 및 유해성심사, 위해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li> </ul> </li> <li>■ 검토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자 등록신청자료 접수 후 30일 이내에 수정·보완 또는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li> <li>•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1회 30일 이내 범위에서 2회 까지 통지기간 연장 가능</li> </ul> </li> </ul>

## 단계 20 | 보완 대응

업무 대상 |  대표자  적극적 구성원  소극적 구성원

대상 ▶

대표자

적극적 구성원

소극적 구성원

- >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한 완전성 검토 중 부족한 정보를 확인한 경우 대표자에게 해당 정보 및 해당 정보의 제출기한을 통지함
- > 수정·보완 통지를 받은 대표자는 과학원에서 요청한 자료제출기한 내에 수정·보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표 43\_

단계20. (대표자) 보완 대응

구분	내용
보완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정·보완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까지 통지기간 연장 가능함</li> <li>• 수정·보완통지서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 수정·보완통지서'가 발행됨</li> <li>• 통지서에서 항목별 수정·보완 사항 및 자료제출기한 확인</li> </ul> </li> </ul>
보완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정·보완 사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과학원 담당자에게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당자 연락처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등록신청서에서 확인</li> </ul> </li> <li>■ 수정·보완 사항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정·보완 사항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협약당사자에게 공유하여 추가 제출 자료 수정 또는 생산 여부 및 추가 발생 비용 등에 대한 협의가 필요함</li> </ul> </li> <li>■ 협의가 완료된 자료를 대표자가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제출</li> </ul>

## 단계 21 | 대표자 등록통지서 발행

업무 대상 |  대표자  적극적 구성원  소극적 구성원

대상 ▶	대표자	적극적 구성원	소극적 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t;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등록신청자료 검토가 완료되면 “화학물질등록통지서”를 대표자에게 발급 함</li> <li>&gt; 단, “화학물질등록통지서”가 해당 화학물질평가가 완료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추후 유해성심사를 거쳐야 함</li> </ul>		

표 44\_ 단계21. (대표자) 대표자 등록통지서 발행

구분	내용
등록 완료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 완료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또는 수정·보완자료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화학물질 등록통지서’를 발행함</li> </ul> </li> </ul>
등록통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통지서 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통지서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발행됨</li> </ul> </li> <li>■ 등록통지서 내 등록 내용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통지서 앞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번호</li> <li>- 등록신청인 정보(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li> <li>- 등록 화학물질 정보(화학물질명, 고유번호 등)</li> <li>- 등록의 형태(톤수 범위 및 등록 물질의 형태 등)</li> <li>- 등록 화학물질의 용도(용도분류체계 및 구체적 용도에 대한 설명)</li> </ul> </li> <li>• 등록통지서 뒤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경사항</li> <li>- 처분사항</li> <li>- 참고사항</li> </ul> </li> </ul> </li> </ul>
대표자 등록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 완료한 대표자는 등록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협의체 구성원에게 알려야함</li> </ul>

###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화학물질 등록통지서’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화학물질등록통지서(Annex 4a)의  
 제4장 2518 (2, 28.) (별지) (별첨)

등록번호		화학물질 등록통지서		*별첨사항*		
제 호				일자	내용	확인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사업장)					
구분	<input type="checkbox"/> 제조·수입자 <input type="checkbox"/>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한 자 <input type="checkbox"/> 위임한 자 <input type="checkbox"/> 신규화학물질 <input type="checkbox"/> 기존화학물질					
화학물질의 구분						
화학물질명(총칭명)						
고유번호(CAS No. 등)						
등록회 형태	<input type="checkbox"/> 0.1톤 이상 1톤 미만 <input type="checkbox"/> 1톤 이상 10톤 미만 <input type="checkbox"/> 1톤 이상 100톤 미만 <input type="checkbox"/>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input type="checkbox"/> 1,000톤 이상 <input type="checkbox"/> 고분자화합물 <input type="checkbox"/> 현상관리종감체 <input type="checkbox"/> 수송관리종감체 <input type="checkbox"/>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1호외3에 따 라 제출자료의 일부를 생략하여 등록 <input type="checkbox"/>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 된 화학물질 <input type="checkbox"/> 0.1톤 미만 <input type="checkbox"/> 0.1톤 이상 0.1톤 미만 <input type="checkbox"/> 0.1톤 이상 1톤 미만 분문류체계					
	화학물질의 용도	구체적 용도에 대한 설명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3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제1항에 따라 신청한 화학물질이 취학 아동 등에게 유해한 화학물질임을 통지합니다.						
2018. 12. 28.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span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2px;">직인</span>						
*화학물질등록통지서(별첨) 또는 통지서(별첨)*						

그림 16\_ 화학물질등록통지서



## 단계 22 | 협의체 구성원 개별 서류 제출

업무 대상 |  대표자  적극적 구성원  소극적 구성원

대상 ▶

대표자

적극적 구성원

소극적 구성원

- > 대표자의 등록통지서가 발행되면 협의체 구성원은 공동제출 자료 이외에 제조·수입자의 명칭, 소재지, 화학물질 식별정보 및 용도 등 자료를 개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등록 신청이 완료 됨
- > 각 구성원은 제출한 개별서류와 관련한 보완사항이 없으면 등록통지서 발급 되고 등록이 완료

표 45\_

단계22.(구성원) 협의체 구성원 개별 서류 제출

구분	내용
개별 서류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 서류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자는 구성원에게 공동제출참여를 승인해주어야 함</li> <li>• 승인받은 구성원은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서 공동제출등록신청자료를 확인한 후 개별 서류를 입력하여 제출</li> <li>• 협의체에서 대표자가 공동으로 제출한 자료는 구성원의 화학물질정보처리 시스템 화면에서 블록된 항목(입력불필요)으로 표시됨</li> <li>• 접수 완료 시 '접수처리 안내' 메일 발송됨(접수번호 부여)</li> </ul> </li> </ul>
등록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환경과학원 안전성 검토가 완료되면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화학물질 등록통지서' 발행</li> </ul> </li> </ul>

## 대표자에게 승인을 받은 협의체 구성원의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그림 17\_ 대표자 승인 시 '공동제출로 이동' 버튼 생성

- 대표자가 승인했을 경우 “공동제출로 이동” 버튼이 나타남

그림 18\_ 협의체 구성원의 등록신청서 제출화면

- 제출자료 입력현황을 확인하고 “등록신청”을 클릭하여 등록신청 절차 진행

- ① 해당 협의체의 물질정보
- ② 협의체 대표자 정보
- ③ 대표자의 제출 진행상태와 현재 로그인 한 기업의 진행상태
- ④ 협의체 구성원들 중에 최대톤수와 로그인 한 기업의 사전신고 톤수
- ⑤ 공동제출에 참여한 기업의 수와 후발주자로 참여한 기업의 수



접수처리 안내 메일

**접수처리 안내**

신청사항

신청번호			
신청번호	18C		

처리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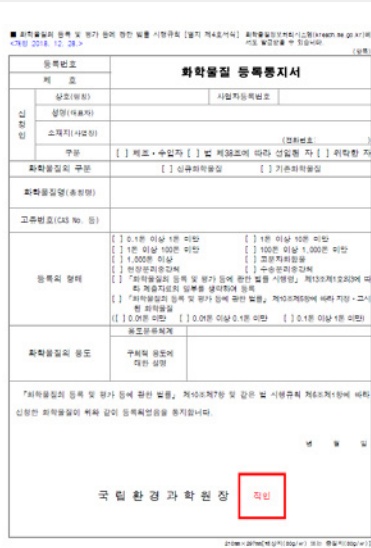
처리기간	국립행정과학원	처리기간	
처리담당자		연락처	031-560-
접수번호	A	접수일	
처리업무	일반행목 접수	발행번호	취급일용
처리내용 및 사유	요청하신 것에 대한 업무가 접수처리 되었습니다.		

접수증

그림 19\_ 접수처리 확인



등록결정 안내 메일



등록통지서

그림 20

기존화학물질 일반 등록 결정 안내

## 단계 23 | 등록 관련 서류의 정리

업무 대상 |  대표자  적극적 구성원  소극적 구성원

대상 ▶

대표자

적극적 구성원

소극적 구성원

### 공동등록과 관련된 서류의 전달

- > 대표자는 협의체 구성원 모두가 등록통지서를 받고, 공동등록이 완료 되면 등록신청과 관련한 및 비용 정산과 관련한 서류를 정리하여 협약 당사자에게 전달
- > 자료의 공유 범위는 협의체 내의 합의 된 부분에 국한 되므로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공유 할 것

표 46\_

단계23.(대표자)등록 관련 서류 전달

구분	내용
관련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신청 관련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를 공동으로 구매/생산한 경우, 해당 구성원에게 시험자료 공유/송부할 수 있음</li> </ul> </li> <li>■ 비용 관련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자는 자료의 구매/생산비용, 추가 자료 구매/생산비용, 행정비용, 기/미 납입비용, 자료의 접근권(참조권) 구매 환급비용 등을 항목별로 기재한 내역을 톤수 및 구성원의 역할에 따라 해당 구성원에게 송부할 수 있음</li> </ul> </li> <li>■ 추후 일정 관련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자는 필요에 따라, 추후 회의 일정 및 대응 방안/계획 등을 제시한 서류 및 사후 관리 계약서 등을 각 구성원에게 송부할 수 있음</li> </ul> </li> </ul>

### 공동등록과 관련된 서류 정리 및 확인

- > 협의체 구성원은 공동등록 완료 이후, 등록신청과 관련한 자료 및 비용 정산과 관련한 서류 등을 공유 받아야 함
- > 자료의 공유 범위는 협의체 내의 합의 된 부분에 국한 됨(협약서 기재된 범위 내)

표 47\_

단계23. (구성원) 등록 관련 서류 확인

구분	적극적 구성원	소극적 구성원
관련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신청 관련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를 공동으로 구매/생산한 시험 자료의 원본 공유</li> </ul> </li> <li>■ 비용 관련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의 구매/생산비용</li> <li>• 추가 자료 구매/생산비용</li> <li>• 행정비용</li> <li>• 자료참조권 공유에 따른 환급비용</li> </ul> </li> <li>■ 기타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후 협의체 운영 계획 관련</li> <li>• 사후 관리 계약서 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신청 관련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에 대한 소유권은 없으므로 등록 자료 공유 의무 없음</li> </ul> </li> <li>■ 비용 관련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비용</li> <li>• 참조권 구매 비용</li> <li>• 소극적 구성원의 비용처리는 협의체 내부 규정에 따름</li> </ul> </li> <li>■ 기타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후 협의체 운영 계획 관련</li> <li>• 사후 관리 계약서 등</li> </ul> </li> </ul>

## 단계 24 | 사후관리

업무 대상

대표자

적극적 구성원

소극적 구성원

대상 ▶

대표자

적극적 구성원

소극적 구성원

### 공동등록과 관련된 서류 정리 및 확인

- > 협의체 구성원은 공동등록 완료 이후, 등록신청과 관련한 자료 및 비용 정산과 관련한 서류 등을 공유 받아야 함
- > 자료의 공유 범위는 협의체 내의 합의 된 부분에 국한 됨(협약서 기재된 범위 내)

### 변경등록·변경신고

- > 등록완료 이후 변경사실이 발생하면 변경등록·변경신고를 진행하여야 함
- > 변경사실이 발생할 경우 협의체에 해당 내용을 알리고, 해당 절차에 대하여 논의

### 정보제공

- > 등록된 물질에 대하여 하위사용자에게 정보전달의 의무를 이행

### 위해성평가에 따른 보완 및 추가자료 제출

- > 등록된 물질에 대하여 유해성 심사결과를 기초로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자료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 > 필요한 경우, 협의체 구성원은 자료의 추가·보완에 대응

구분	내용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경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경등록 사유 및 신청기간(법 제12조,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0조):                                     <table border="1" data-bbox="351 366 1035 719"> <thead> <tr> <th>변경사항</th> <th>기간</th> </tr> </thead> <tbody> <tr> <td>연간 제조량·수입량이 상위의 톤수 범위로 변경</td> <td>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td> </tr> <tr> <td>용도분류체계 변경</td> <td rowspan="2">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td> </tr> <tr> <td>구체적 용도의 변경 또는 새로운 용도 확인</td> </tr> <tr> <td>분류 및 표시에 변경을 주는 화학물질의 특성·유해성과 관련한 새로운 정보 확인</td> <td rowspan="2">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다만, 6개월에 한하여 1차 연장 가능)</td> </tr> <tr> <td>위해성과 관련하여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새로운 정보 확인</td> </tr> </tbody> </table> </li> <li>• 방법: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li> </ul> </li> <li>■ 변경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경신고 사유 및 신청기간(법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1조):                                     <table border="1" data-bbox="351 860 1035 1178"> <thead> <tr> <th>변경사항</th> <th>기간</th> </tr> </thead> <tbody> <tr> <td>등록자의 상호·소재지 변경</td> <td rowspan="4">해당 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td> </tr> <tr> <td>대표자 변경</td> </tr> <tr> <td>수입자 구성 변경 (법 제38조에 따라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된 자가 등록된 경우만 해당)</td> </tr> <tr> <td>수탁자 구성 변경 (제조 위탁자가 등록된 경우만 해당)</td> </tr> </tbody> </table> </li> <li>• 방법: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li> </ul> </li> </ul>	변경사항	기간	연간 제조량·수입량이 상위의 톤수 범위로 변경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용도분류체계 변경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구체적 용도의 변경 또는 새로운 용도 확인	분류 및 표시에 변경을 주는 화학물질의 특성·유해성과 관련한 새로운 정보 확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다만, 6개월에 한하여 1차 연장 가능)	위해성과 관련하여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새로운 정보 확인	변경사항	기간	등록자의 상호·소재지 변경	해당 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대표자 변경	수입자 구성 변경 (법 제38조에 따라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된 자가 등록된 경우만 해당)	수탁자 구성 변경 (제조 위탁자가 등록된 경우만 해당)
	변경사항	기간																
연간 제조량·수입량이 상위의 톤수 범위로 변경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용도분류체계 변경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구체적 용도의 변경 또는 새로운 용도 확인																		
분류 및 표시에 변경을 주는 화학물질의 특성·유해성과 관련한 새로운 정보 확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다만, 6개월에 한하여 1차 연장 가능)																	
위해성과 관련하여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새로운 정보 확인																		
변경사항	기간																	
등록자의 상호·소재지 변경	해당 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대표자 변경																		
수입자 구성 변경 (법 제38조에 따라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된 자가 등록된 경우만 해당)																		
수탁자 구성 변경 (제조 위탁자가 등록된 경우만 해당)																		
화학물질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수입자 → 하위사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을 마친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혼합물을 양도하는 자는 이를 양수하는 자에게 ‘화학물질안전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li> <li>• ‘화학물질안전정보’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학물질안전정보 제공자의 성명 또는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li> <li>- 상품명 및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총칭명)</li> <li>-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 및 고유번호</li> <li>- 해당 화학물질의 분류·표시</li> </ul> </li> </ul> </li> </ul>																	



구분	내용						
화학물질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화학물질의 사용 가능한 용도 또는 사용상의 제한 용도</li> <li>-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과 인체 및 환경 유해성과 관련된 정보</li> <li>- 노출시나리오 요약정보 및 위해성저감대책 등 위해성에 관한 정보</li> <li>-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경우 함유량 등의 정보</li> <li>-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방법, 화재 등 비상시 대처방법, 누출 시 방제요령, 보호구 및 폐기방법 등 안전한 사용에 관한 정보</li> <li>- 해당 화학물질에 관한 규제 정보</li> <li>• 영업 비밀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해당 화학물질이 유해화학 물질이 아닌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정보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음.</li> </ul> </li> <li>• 정보제공의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질 양도하기 전 또는 양도와 동시에 제공</li> <li>- 동일물질을 동일인에게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최초 양도시에만 제공 가능</li> </ul> </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4b4b8b; color: white;">구분</th> <th style="background-color: #4b4b8b; color: white;">제공서식</th> </tr> </thead> <tbody> <tr> <td>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산업안전 보건법」에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에 의해 위험·유해성이 분류 대상인 경우</td> <td>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화학물질안전정보(위해성정보) 자료] 및 물질안전보건자료</td> </tr> <tr> <td>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비치의 의무가 없는 양도자의 경우</td> <td>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화학물질안전정보자료]</td> </tr> </tbody> </table>	구분	제공서식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산업안전 보건법」에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에 의해 위험·유해성이 분류 대상인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화학물질안전정보(위해성정보) 자료]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비치의 의무가 없는 양도자의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화학물질안전정보자료]
	구분	제공서식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산업안전 보건법」에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에 의해 위험·유해성이 분류 대상인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화학물질안전정보(위해성정보) 자료]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비치의 의무가 없는 양도자의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화학물질안전정보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경된 정보제공의 방법</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4b4b8b; color: white;">변경사항</th> <th style="background-color: #4b4b8b; color: white;">기간</th> </tr> </thead> <tbody> <tr> <td>유해성심사 결과 통지를 받은 결과 새로운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정보가 확인된 경우</td> <td rowspan="4" style="vertical-align: middle;">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td> </tr> <tr> <td>위해성평가 결과 통지를 받은 결과 새로운 위해성정보가 확인된 경우</td> </tr> <tr> <td>양도한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의 새로운 용도가 확인된 경우</td> </tr> <tr> <td>화학물질에 관한 새로운 규제정보가 확인된 경우</td> </tr> </tbody> </table>	변경사항	기간	유해성심사 결과 통지를 받은 결과 새로운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정보가 확인된 경우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위해성평가 결과 통지를 받은 결과 새로운 위해성정보가 확인된 경우	양도한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의 새로운 용도가 확인된 경우	화학물질에 관한 새로운 규제정보가 확인된 경우
변경사항	기간						
유해성심사 결과 통지를 받은 결과 새로운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정보가 확인된 경우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위해성평가 결과 통지를 받은 결과 새로운 위해성정보가 확인된 경우							
양도한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의 새로운 용도가 확인된 경우							
화학물질에 관한 새로운 규제정보가 확인된 경우							

구분	내용
화학물질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위사용자 요청에 의한 제조·수입자 ⇒ 하위 사용자 및 판매자 정보제공</li> <li>•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하위사용자 및 이를 판매하는 자가 요청한 경우 화학물질의 특성, 용도, 제조량·수입량, 안전사용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함</li> <li>• 법 제29조가 ‘등록된 화학물질과 이를 함유한 혼합물’에 적용된다면,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은 등록여부에 상관없이 법의 적용을 받는 화학물질과 혼합물에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수입자가 하위사용자 및 판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화학물질안전정보 내용</li> <li>- 제조·수입자의 성명 또는 상호</li> <li>-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또는 총칭명과 상품명</li> <li>-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량·수입량</li> <li>- 해당 화학물질의 사용가능한 용도 또는 사용상의 제한용도</li> <li>-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방법, 화재 등 비상 시 대처방법, 누출시 방제 요령, 보호구 및 폐기방법 등 안전한 사용에 관한 정보</li> <li>-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과 유해성 정보</li> <li>- 해당 화학물질에 관한 규제정보</li> </ul> </li> </ul>
서류 기록·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을 신청한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판매와 관련된 사항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함</li> <li>■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 자료 및 이와 관련된 서류는 전자기록매체에 기록하고 보존할 수 있음</li> </ul>
유해성심사에 따른 추가자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18조(유해성심사)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유해성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록된 자에게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음</li> <li>■ 시행규칙 제25조(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 제2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 제출기한 내에 자료제출을 명한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유해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li> <li>■ 다수 구성원에게 공통으로 해당하는 자료 구매/생산의 추가 비용은 협약서의 내용에 따라 함께 분담할 수 있음</li> </ul>
위해성평가에 따른 보완 및 추가자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24조(위해성평가)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록된 자에게 위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음</li> <li>■ 시행규칙 제34조(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 제1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 제출기한 내에 자료제출을 명한 화학물질의 용도에 관한자료, 위해성에 관한 자료,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자료, 용도와 관련한 노출정보에 관한 자료, 하위사용자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li> <li>■ 구성원이 해당 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한 경우, 대표자가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경우 각각 대응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필요한 경우 협의체에서 도울 수 있음</li> </ul>

### 화학물질안전정보 전달 예시1

■ 화학물질의 종류 및 용기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첨 제1호서식] 시행 2018. 12. 28.

#### 화학물질안전정보(위해성정보) 자료

국가	한국(대한민국)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및 연락처		
화학물질명(중명명)			
화학번호(CAS No. 등)	상품명	용도	기타
분류번호, GHS번호 또는 국제적인 표시 체계(예: GHS) 및 물질의 종류(유기/무기)	적용	내용	중요도
화학물질명 등 (여기서)	[√] 유독물질 [ ] 허가물질 [ ] 위험물질 [ ] 고위험물질 [ ] 인체물질의 중독 및 장기 장애 유발 가능성, 기타의 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 ] 물리적 위험성 [√] 건강 위험성 [√] 환경 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화학물질의 종류 및 용기 등에 관한 법률" 별표 7에 따라 분류되는 화학물질		

※ 해당 화학물질의 규격상, 용량상, 용량상 등 "유해성정보" 및 "인체물질"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에 따른  
 정보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 그 정보가 유해성정보를 제공하는 기체하여야 합니다.

유해성 (공급업체 확인용)	기술내용
제조업체 이름 (제조업자)	사용시간 및 온도 제한된 사용 제한 용도에 대한 기타 정보
위험성 정보	위험에 대한 기술서식 (비중량도 포함)
화학안전정보	위험에 대한 기술서식 (비중량도 포함)
비중량도 및 제사용자 지침	제사용 지침서 입장, 내용

**고용노동부**

**물질안전보건자료**  
(Material Safety Data Sheet)

산업안전보건  
안전보건공단

번호명	CAS No.	KE No.	UN No. 3141	EU No.
1. 화학물질의 용기 및 용량 정보				
2. 분류				
3. 위험성 정보				
4. 위험성 정보				
5. 물리적 특성(예: 끓는점, 녹는점, 증기압, 비중, 용해도, 점화점, 폭발한계 등)				
6. 환경영향				
7. 안전조치				
8. 운송정보				
9. 기타 정보				
10. 기타 정보				
11. 기타 정보				
12. 기타 정보				
13. 기타 정보				
14. 기타 정보				
15. 기타 정보				
16. 기타 정보				
17. 기타 정보				
18. 기타 정보				
19. 기타 정보				
20. 기타 정보				

1. 위험성 정보

2. 분류

3. 위험성 정보

4. 위험성 정보

5. 물리적 특성(예: 끓는점, 녹는점, 증기압, 비중, 용해도, 점화점, 폭발한계 등)

6. 환경영향

7. 안전조치

8. 운송정보

9. 기타 정보

10. 기타 정보

11. 기타 정보

12. 기타 정보

13. 기타 정보

14. 기타 정보

15. 기타 정보

16. 기타 정보

17. 기타 정보

18. 기타 정보

19. 기타 정보

20. 기타 정보

1. 위험성 정보

2. 분류

3. 위험성 정보

4. 위험성 정보

5. 물리적 특성(예: 끓는점, 녹는점, 증기압, 비중, 용해도, 점화점, 폭발한계 등)

6. 환경영향

7. 안전조치

8. 운송정보

9. 기타 정보

10. 기타 정보

11. 기타 정보

12. 기타 정보

13. 기타 정보

14. 기타 정보

15. 기타 정보

16. 기타 정보

17. 기타 정보

18. 기타 정보

19. 기타 정보

20. 기타 정보

그림 21\_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 자료 제출 명령서

**유해성심사 자료제출명령서**

**위해성평가 자료제출명령서**

그림 23\_ 유해성심사·위해성평가 자료제출명령서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된 메일주소로 '자료제출명령 안내'의 알림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IT에서 화면을 출력하여 확인할 수 있음
- 심사 및 평가를 마친 물질은 '심사 등록결과 안내' 등의 알림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서 화면을 출력하여 확인할 수 있음

공동등록 협의체  
실무가이드



# 제4장 협의회 구성원 업무 체크리스트

## 4.1. 공동등록 진행과정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 4.1.

# 공동등록 진행과정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 체크리스트 목적

- > 실무가이드의 협의체 구성원 업무는 공동등록 이행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협의체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자체관리 과정이 필요
- > 협의체 구성원이 개별 참여정도에 따라 등록에 필요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해당 업무의 정기적 진행사항을 확인하여 업무 진행에 누락이 없도록 관리·감독해야 함

### 체크리스트 작성

- > 체크리스트에는 업무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식을 포함하도록 하고 단계별 업무의 시작과 종료(예정)일을 기재하여 업무 일정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필요 함
- > 세부 업무 항목은 가능한 한 세분화 하며, 가능한 시간적 순서로 작성하는 것을 권고하며 각 업무의 우선순위 월별 현황들이 기재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 > 체크리스트가 작성되면 협의체 구성원과 해당 내용을 사전 점검 및 보완을 통하여 적절성을 확보



### 체크리스트 활용

- > 체크리스트는 협의체 업무 개시 이전에 협의체 구성원과 공유 하고, 필요한 업무가 적절하게 완료되었는지 점검 하여야 함
- > 업무수행 결과에 구성원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양자가 서명을 하는 것이 권고되며, 업무 이행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내용에 관하여 해명 및 보상이 필요





## 공동등록 협의체 실무가이드

---

발행일 2020년 1월

펴낸곳 환경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 8층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http://www.chemnavi.or.kr>

TEL. 02-6050-1305 ~ 8